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2013년도 연례학술대회>

동아시아 변환기 기억과 중층적 자기 인식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6시

장소: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실

주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연구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일정

- 사회: 김보광(고려대 한국사연구소)

1:00 ~ 1:10 접 수

1:10 ~ 1:20 개회사 (강제훈,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소장)

1:20 ~ 2:10 **13세기 전반 고려의 외교적 순간과 개인의 생애 기록**
 — 묘지를 중심으로 —

발표 : 이미지(국사편찬위원회) 토론 : 최종석(동덕여대)

2:10 ~ 3:00 **충렬왕의 시대인식과 음악정책**

발표 :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 윤은숙(강원대)

3:00 ~ 3:20 중간 휴식

3:20 ~ 4:10 **몽골복속기 고려의 ‘기억만들기’와 양국관계**
 — ‘복속’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 : 고명수(덕성여대) 토론 : 조 원(한양대)

4:10 ~ 5:00 **고려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세속화’**

발표 : 이정란(고려대) 토론 : 이명미(서울대)

5:00 ~ 5:10 중간 휴식

5:10 ~ 6:00 **고려말 지식인들의 원·명 교체와 자아 인식**

발표 : 김인호(광운대) 토론 : 김난옥(고려대)

목 차

- 13세기 전반 고려의 외교적 순간과 개인의 생애 기록
 - 묘지를 중심으로 —
 - 발표문 : 이미지(국사편찬위원회) 1
 - 토론문 : 최종석(동덕여대) 19

- 충렬왕의 시대인식과 음악정책
 - 발표문 :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21
 - 토론문 : 윤은숙(강원대) 42

- 몽골복속기 고려의 ‘기억만들기’와 양국관계
 - ‘복속’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 발표문 : 고명수(덕성여대) 45
 - 토론문 : 조 원(한양대) 66

- 고려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세속화’
 - 발표문 : 이정란(고려대) 69
 - 토론문 : 이명미(서울대) 별지

- 고려말 지식인들의 원·명 교체와 자아 인식
 - 발표문 : 김인호(광운대) 87
 - 토론문 : 김난옥(고려대) 104

13세기 전반 고려의 외교적 순간과 개인의 생애 기록 — 묘지를 중심으로 —

이미지(국사편찬위원회)

서론

1. 13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2. 外勢와 개인
 - 1) 묘지에 나타난 ‘거란 유종의 난’
 - 2) 묘지에 나타난 ‘형제의 맹’
 3. 대외 환경 변화와 기년호
- 결론

서론

한 왕조의 대외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저에서는 종종 복잡한 알력 관계나 이익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선명한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대외 관계에 참여한 주체들을 상당히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외관계사는 왕조 대 왕조, 혹은 한 왕조와 그 주변의 집단을 주요 등장인물로 하여 정리되곤 한다. 외교사 서술 속의 행위 주체들은 ‘고려’, ‘거란’, ‘요’, ‘여진’, ‘금’, ‘몽고’, ‘송’ 등과 같이 종종 세분되지 않는 온전한 개체처럼 언급되지만, 실상 이들은 매우 많은 집단과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집단들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바로 개인이다. 외교사 논저들은 주로 왕조 간의 외교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외교 행위가 일어나는 어느 시기이건 개인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 개인들은 왕조의 외교적 결정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주요 외교적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살았던 개인들은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현재의 우리들이 바라보는 ‘주요 사건’은 당시를 살았던 그들에게도 유사한 정도의 의미였을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 왕조적 대처와는 다른 시각으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시각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고려의 주요 외교적 사건들이 당시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전하는 고려시대 문헌 기록 중 가장 국가 혹은 왕조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다고 판단되는 墓誌를¹⁾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²⁾ 아울러 대외적으로 변동이 컸고 다양한 외부 정

1) 墓誌는 墓誌銘과 墓誌銘의 序를 모두 포괄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墓誌로 통칭한다.

2) 고려시대 묘지명에 나타나는 연대 및 호칭 표기 방식을 조명한 김창현의 연구에서도 묘지명의

치체와의 교섭이 일어났던 13세기 전반기를 주 분석 시기로 설정해 보았다. 13세기 전반은 백여 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패자였던 금이 쇠퇴하고 새로운 집단들이 고려 주변에 등장했던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거란 유종³⁾과 고려, 몽고와 고려의 조우를 유의하여 보고자 한다. 당시 고려 조정으로서는 정세 변화에 맞추어 이들 범경 세력과 새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익숙한 금과의 외교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였을 것이다. 외교적으로 볼 때 상당한 변혁기였던 13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고려의 개인들은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묘지라는 개인의 생애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묘지는 총 49건이다. 묘지 작성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3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묘지를 검토하였다. 본래 무덤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되던 묘지는 중국 北朝代에 이르러 묘장 습속이자 문체로 자리 잡았다.⁴⁾ 묘지는 고인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 가까운 가족[보통은 그의 후손]의 주도로 작성된다. 13세기 고려에서도 묘지는 가족이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인적 관계를 활용하여 당대의 문장가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에게 고인의 행장 등 관련 자료를 주고 작문을 부탁하는 사례도 있다.⁵⁾ 어떤 경우에서든 고인의 경험은 모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주체가 설정한 기준에 의해 한 개인의 경력과 활동이 취사 선택되는 과정을 거친다. 어떤 경력과 활동을 기록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각의 묘지마다 다를 것이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묘지는 합법적으로 고인을 偉人化·英雄化 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살아남은 가족 및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 즉 같은 고려인들에게 훌륭한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은 모든 묘지 작자가 유념한 기준일 것이다. 결국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려시대 묘지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고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판단된다. 묘지의 내용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취사선택된 기록이라고 해서 그 사료적 가치가 감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묘지를 작성하기 위해 고인의 생애 기록을 취사선택했던 당시인들의 숨은 작업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하게 되면 묘주의 생애에 대한 1차적 사실들과 더불어 묘지에 기록된 고인의 경

개인적 성격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김창현, 2012, 「고려시대 묘지명에 보이는 연대와 호칭 표기방식」 『韓國史學報』 48, 108쪽).

3)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금 말기에 요동지역에서 금에 반란을 일으킨 거란족을 가리킨다. 이들을 지칭하는 적당한 용어를 아직 고민 중인데, 그들의 犯境을 기록한 『고려사』의 용례에 따라 일단 契丹 遺種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8月 乙丑 契丹遺種金山·金始二王子 遣其將鵝兒乞奴二人 引兵數萬 渡鴨綠江 侵寧朔·定戎之境

4) 묘지식 제작의 목적 및 양식,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南宗鎮, 2004, 「中國 墓誌銘 起源考」 『中國語文學論集』 26.

朴漢濟, 2008, 「魏晉南北朝時代 墓葬習俗의 變化와 墓誌銘의 流行」 『東洋史學研究』 104.

5) 검토한 사례 중 작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9건이며(161 정극은 166 전원균 171 이법원 173 백분화 174 이적 : 李奎報, 168 조충 : 尹于一, 176 任益惇 : 權敬中, 188 李奎報 : 李需, 189 김중귀 : 孫拊) 가족이 아닌 사람이 청탁을 받아 가족을 대신하여 묘지를 작성한 사례로 확인되는 것은 10건(앞서 9건과 194 윤승해 : 작자명 미상)이다.

력들의 공통점, 즉 이러한 경력들을 선택한 묘지 작성 주체의 의도를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작성 주체가 고려인이며 고인의 행적을 기린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고려 내부에서 고인의 업적을 인정받고자 했다는 점을 종합할 때 묘지는 동시대 고려인들간에 이루어진 특별한 형태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묘지에 언급된 사건들을 시각을 조금 더 넓혀 당시 고려 사회의 주요 사건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게 되면 묘지 기록을 훨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묘지의 자료적 성격에 유의하며, 본고에서는 국제적 변동기에 고려의 영역으로 들어 온 두 세력에 대한 고려인들의 시각과, 이들의 등장으로 인한 외교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기준 중 하나인 시간 기록에 미친 영향 등을 묘지에서 추적해 보겠다.

1. 13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1206년 12월, 몽골 고원의 여러 세력을 규합한 테무진[Тэмүджин, 鐵木眞]이 대몽고국의 칭기스칸[Чингис Хаан, 成吉思汗]으로 추대되었다.⁶⁾ 불과 몇 년 후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몽고이지만, 칭기스칸의 즉위 당시에는 주변국의 이목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당시 고려는 금과 맺은 책봉 조공 질서 속에서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1170년 이후 武人들이 집권한 이후에는 무신집정에 의한 왕위 교체를 승인받기 위해 피책봉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금 역시 고려에 국왕 생일 하례사 및 횡선사를 보내왔다. 고려는 하정사, 절일사, 사하생신사, 사횡선사 등을 연례적으로 파견하고 있었다. 왕위에 변동이 생기면 고려 조정은 바로 금에 이를 알렸고 금 역시 왕위 교체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새 왕들을 책봉했다.

기록상 고려가 ‘몽고’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1211년이다. 당시 금에 파견되었던 謝賀生辰使 金良器 일행이 귀국길에 몽고병의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⁷⁾ 사행의 유골은 금이 수습하여 보내주었는데 이에 대해 고려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간 진행되어 온 금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사행이 금 조정과 관련된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당시 고려 조정이 몽고의 건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아마도 금의 반란 세력 혹은 변방의 초적 정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1211년 4월 금에 대한 몽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⁸⁾ 『송사』 역시 당시 금에서 일어난 변

6) 『元史』 卷1 本紀1 元年(1206) 丙寅 帝大會諸王群臣 建九旂白旗 卽皇帝位於斡難河之源 諸王群臣共上尊號曰成吉思皇帝 是歲實金泰和之六年也

7) 『高麗史』 卷22 世家22 熙宗 7年(1211) 5月 金遣完顏惟孚來 賀生辰 王遣將軍金良器 回謝 良器至通州 遇蒙古兵 中矢而死 下節九人亦遇害 金收骨以送

8) 『金史』 卷13 本紀13 衛紹王 大安 3年(1211) 四月 我大元太祖法天啓運驛武皇帝來征 遣西北路招討使粘合合打乞和 平章政事獨吉千家奴·參知政事胡沙行省事備邊

란에 대비하기 위해 江淮·京湖·四川에 수비를 강화하였음을 전한다.⁹⁾ 이 해 9월과 11월에 고려가 금에 보낸 사신들은 모두 길이 막혀 돌아왔다.¹⁰⁾ 송-금 국경 지역에서 고려-금 국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몽고와 금 간에 작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1213년 3월 거란인 耶律留哥가 요동지역에 遼를 세웠고 1214년에는 금이 보낸 토벌군에 승리를 거둔 뒤 금의 中京[습주]에 定都하여 세력을 키우다가 1215년에 몽고에 투항하였다.¹¹⁾

1213년 8월에는 고려 강종과 금 衛紹王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강종은 노환으로 작고하였으나 금에서는 정변이 일어나 위소왕이 폐위된 뒤 피살되었다.¹²⁾ 당시 금 측 기록에 따르면, 새롭게 금의 황제가 서자 고려는 사위한 태자가 아직 책봉을 받지 못하여 하포를 올릴 수 없음을 알려왔다.¹³⁾ 고려가 여전히 금과의 책봉 조공 관계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1214년 금은 몽고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수도를 南京[開封]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후 요동의 도로가 막혀 고려와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⁴⁾ 이해 야율유가를 토벌하기 위해 요동에 파견된 금의 장수 蒲鮮萬奴는 야율유가 세력에 패한 뒤 1215년 10월 大晉國大王을 칭하며 금에 반기를 들었다.¹⁵⁾

야율유가는 1215년 몽고에 투항하였지만 이에 동조하지 않은 일부 세력은 몽고에 저항하며 大遼收國이라는 국호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1216).¹⁶⁾ 이들은 몽고의 공격을 받다가 결국 고려의 국경을 넘게 되었고, 이후 1218년 말까지 고려의 서북 지역은 이들 거란인들과 전쟁을 겪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다(契丹遺種의 난).

고려가 이들 거란 세력과 긴 전쟁을 겪고 있을 동안 몽고 역시 투항을 거부하고 고려로

9) 『宋史』 卷39 本紀39 寧宗3 嘉定 4年(1211) 冬十月 甲辰 以金國有難 命江淮·京湖·四川制置司謹邊備

10) 『高麗史』 卷22 世家22 熙宗 7年(1211) 9月 (乙亥) 遣李孝全如金 賀萬春節 道梗而還; (11月) 是月 遣李實椿如金 賀正 道梗而還

11) 『元史』 卷149 列傳36 耶律留哥

12) 『金史』 卷13 本紀13 衛紹王 至甯 元年(1211) 八月

13)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至甯元年八月 王禩薨 嗣子未行起復 九月 宣宗即位 邊吏奏 高麗牒稱 嗣子未起復 不可以凶服迎吉詔 又不可以草土名銜署表 禮官議 人臣不以私恩廢公義 宜權用吉服迎詔 署表用權國事名銜 俟高麗告哀使至闕 然後遣使致祭 慰問及行封冊 制可

14) 『金史』 卷14 本紀14 宣宗上 (貞祐) 2年(1214) 五月 乙亥 輟朝 上決意南遷 詔告國內 … 壬午 車駕發中都 … 秋七月 車駕至南京;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明年(1214) 宣宗遷汴 遼東道路不通

15) 『金史』 卷14 本紀14 宣宗上 貞祐 3年(1215) 冬十月 壬子 遼東賊蒲鮮萬奴僭號 改元天泰; 『元史』 卷1 本紀1 太祖 10年 冬10月; 『元史』 卷149 列傳36 耶律留哥

고려의 기록에 따르면 포선만노는 天王을 칭했고 국호는 大眞이었다(『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閏(7)月).

16) 耶斯布[耶廝不], 奇努[乞奴], 金山[赫舍], 統古與, 喊舍 등이 차례로 大遼收國의 통수자가 되었으며, 고려 江東城을 점거했을 당시에는 喊舍가 거란 세력을 통솔하고 있었다(李丙燾, 1961, 『韓國史』 中世篇, 乙酉文化社, 539~540쪽; 高柄翊, 1969,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49~150쪽).

도망해 온 거란 세력을 끝까지 공격하였다. 1218년 겨울, 몽고군은 거란군을 토벌하러 왔음을 밝히며 고려의 국경을 넘어 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다가 결국 고려에 거란에 대한 합동 공격을 제안하였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몽고 진영을 방문한 고려군의 副元帥는 몽고 장수와 우호 관계를 맺었고 뒤이은 거란 세력에 대한 군사 작전도 성공적으로 완수되면서 고려와 몽고는 국가대 국가로서 새로운 질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형제의 맹17). 이후 몽고는 고려에 몇 차례 사신을 보냈는데, 주로 공물을 징구해 가거나, 혹은 외교 의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불편하게 진행되었다. 1225년에는 고려를 방문한 몽고의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18)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고는 사신 파견을 중단하였다가 1231년에는 고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하였다.19) 고려군은 몽고군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지는 못하였고, 조정은 몽고 사신을 만나거나 혹은 왕족을 파견하여 화의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몽고의 공세가 잠시 중단되자 1232년 고려 조정은 강화로 천도를 단행하였으며,20) 이후 몽고와의 전쟁은 양국이 외교 질서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된 1270년까지21) 지속되었다.

이처럼 13세기 전반기 고려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급변하였다. 그동안 익숙해왔던 금과의 외교 질서가 약화되고 고려의 변경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였으며 그들은 고려가 예기치 못한 사이 고려의 내부를 침범하였다. 금에 반기를 든 거란 세력과 몽고는 당시의 고려 조정이나 고려의 개인 모두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낮은 세력이었을 것이다. 알지 못하던 他者와, 그들과의 낮은 경험이 개인의 생애 속에서는 어떻게 조명되었는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7) 형제의 맹 혹은 兄弟盟約이라 지칭되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高柄翊, 1969,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丁善溶, 2002, 「趙沖의 對蒙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 『震檀學報』 93
 동북아역사재단·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엮음, 2011,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18)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11年(1224) 11月 乙亥 蒙古使著古與等十人 至咸新鎮; 高宗 12年(1225) 正月 癸未 蒙古使離西京 渡鴨綠江 但賫國贖獮皮 其餘紬布等物 皆棄野而去 中途爲盜所殺 蒙古反疑我 遂與之絕

19)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8月 壬午 蒙古元帥撒禮塔圍咸新鎮 屠鐵州; 12月 甲戌 將軍趙叔昌 與撒禮塔所遣蒙使九人 持牒來 牒曰 蒙古大朝國皇帝聖旨 專命撒里打火里赤 統領大軍 前去高麗國 問當如何殺了著古與使臣乎

20)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9年(1232) 6月 乙丑 崔瑀魯王 遷都江華; 7月 乙酉 王發開京 次于昇天府; 丙戌 入御江華客館

21) 고려-몽고 전쟁의 종결 시기 혹은 양국의 講和 시점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다. 본고에서는 양국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외교 질서에 합의하게 된 시점을 고려가 몽고의 還都 요구를 실제로 이행한 1270년으로 본다.

2. 外勢와 개인

1) 묘지에 나타난 거란 유종의 난

1216년 8월,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변방에 등장한 거란 반군들은²²⁾ 약 2년 반 동안 고려의 서북 변경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들 거란인들은 江東城을 점거하고 있다가 1219년 초에 몽고와 고려의 연합 공격을 받아 궤멸되었다. 같은 해 9월에 무신집정이었던 최충헌이 사망하였다. 최충헌 묘지는 거란 유종의 침입을 언급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묘지이다. ‘거란 유종의 난’과 관련한 그의 묘지의 주요 내용은 거란인들의 공격에 최충헌이 얼마만큼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며, 군사를 적절히 운용한 결과 끝내 그들을 물리쳐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데 치중해 있다.²³⁾ 연대기 기록과 달리, 거란인들과의 전투에 실제로 나섰던 장수들의 공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기록이 최충헌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데 주목적을 둔 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최충헌 묘지에서 거란 세력은 국경 지역[邊]을 범하는 도적[丹寇]으로, 혹은 도적질을 일삼는 오랑캐[虜寇]로 표현되었다. 거란인들이 고려의 서북 지역에 입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들에 대한 폄칭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거란인들이 일으킨 피해가 크면 클수록 그들을 소탕하여 평화를 찾아 준 최충헌의 공로 역시 현창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묘지 기록의 객체이지만 내용상 주인공인 최충헌의 업적을 더욱 빛내기 위해 거란인들의 야만성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의도적으로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크며, 이와 같은 논리로 인해 거란 유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실제보다 더 확대·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거란인들과 직접 대적한 경험이 없었던 최충헌 묘지와 비교해 볼 만한 것은 조충과 김취려, 한광연의 묘지일 것이다. 이들은 1219년 강동성 전역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특히 조충과 김취려는 원수와 부원수로 전투에 참여하였다. 조충은 1220년 9월에 사망하였고 그의 묘지는 試起居郎 知制誥 尹于一이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충은 1216년부터 對거란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1219년 강동성의 전역이 있기 전 몽고군의 연합 작전 제의에 대한 최충헌 등 조정의 의심을 푸는 데 기여하여 몽고와 우호를 맺고 거란을 평정하였다.²⁴⁾ 당시 조충 자신

22)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8月 乙丑 契丹遣種金山·金始二王子 遣其將鵝兒·乞奴二人 引兵數萬 渡鴨綠江 侵寧朔·定戎之境

23) 168 崔忠獻 묘지 45~49행 越自丙子秋丹寇犯邊漸侵入于, (46) 西海春州界復蠶食于東北城堡勢轉危急公坐擁兵□□□使發軍遣將或爲三軍或, (47) 爲五軍或爲行營動合事機能使虜寇蕩滅 上大加歎賞擬於休□一體 賜之國姓 命付宗, (48) 正屬籍示以萬世之慶賴憶昔之人有言曰功不可以壺世威不可以震主獨公以□勃安之, (49) 功伊攝霍立之威

24) 169 조충 묘지명 18~28행 丙子冬以副元帥出征契丹賊訓練齊整成軍而出然而時元帥剛愎自專, (19) 公性寬廓不甚力校故以失□□績俱罷職至丁丑秋朝廷以公威重且有遺愛復起公爲西北路兵馬使, (20) □□見公來皆欣然無不盡力爲用由是黃旗黑紺等群賊銷沮明年又大敗丹賊子壻等皆得蔭其功夏, (21) 得替還京師拜金紫光祿大夫守司空左僕射□□秋□復繼 朝廷更謀軍帥上宰晋康崔公奏無以易, (22) 公即受鉞□賊疊戰再捷賊畏□入保垞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珠札刺等率勝兵萬餘人自東鄙入, (23) □拔垞州

이 전장의 책임자였고, 강동성에서 승리한 다음해에 그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묘지에서 거란과의 전쟁은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충헌 묘지와 마찬가지로 거란인들은 契丹賊, 群賊, 丹賊, 契丹遺種, 胡虜 등의 폼칭으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조충과 같은 전투에 참여하여 그를 보좌하였던 김취려와 한광연의 묘지는 조충의 묘지에 묘사된 내용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김취려는 조충보다 14년을 더 살고 1234년에 사망하였다. 조충은 강동성에서의 개선 직후 사망하였으나 김취려는 그 이후에도 官을 더하여 首相에까지 올랐다. 김취려의 묘지에서도 고려의 서북계를 침입한 거란인들과의 전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멸시나 비하, 그들로 인한 고려의 피해상을 강조하는 논조보다는 김취려 개인이 세운 많은 戰功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²⁵⁾ 이러한 차이는 묘지 작성자의 문체나 개성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겠지만, 김취려 묘지 말미의 평가처럼 “出將入相”의 대표적 사례로서 그의 생애를 조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앞서 최충헌과 조충의 묘지에서 거란인 무리는 丹寇, 虜寇, 契丹賊, 群賊, 丹賊, 契丹遺種, 胡虜 등과 같은 폼칭으로 지칭되었다. 1237년에 사망한 한광연의 묘지에서는 이들을 遼兵 혹은 遼師와 같이 다소 중립적으로 지칭하였으며, 그들로 인한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였다. 최충헌 묘지에서는 고려의 변경을 범했다고[犯邊] 기록되었으나 한광연 묘지에서는 같은 사실이 국경을 넘어온[入]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다.²⁶⁾

只請(?)和我國復讎契丹之□辭請於公軍□公即奏聞先是蒙古國遣四十餘人責牒乘船』(24) □□□定州請如今日講和事朝廷議以爲莫是契丹遺種一般人僞作蒙古文字名復讎契丹實欲』(25) □□□耶遂不報及是□□之馳聞方棘而朝臣猶執前議依違未決者久矣唯今樞密使崔公曰以元帥』(26) □□□□□□□皮□□贖而妄奏如是耶力開說□會群公然後□稍解且許講和然乞糧草事』(27) 未□□□公以便□□事故得與蒙古和好攻破契丹及平蒙古以俘獲婦女孩童六百餘口付公揮涕叙』(28) □□□□□公乃□配佛寺官廩以充廝役云

25) 182 김취려 묘지명 7~23행 (7) 丙子秋上聞丹賊入疆即命三軍討之公爲後軍使與兩軍整旅而行逢敵□戰□』(8) □捷之功多矣至若朝陽開平墨匠香山之戰獨我軍先爲之鋒大破之故彼賊避我軍』(9) □於西海□丁丑一月上命行營元帥將五軍授公以金吾衛上將軍仍領後軍公』(10) □□行營□屯至安州境見行營失利奔潰公獨奮力抗戰不知槍矢之貫體僅不殞命』(11) 而還于國上更命五軍禦□南路又以公代他將爲前軍使公乃忍痛應命行與敵戰于』(12) 麥谷克之自朴達□大捷以來彼且失勢□果面南而東還於其國十一月公遭□疾』(13) 將卒咸請歸京理病公曰寧死爲邊鬼豈□安於京乎俄有詔許公還京以肩輿到京累』(14) □而後疾瘳戊寅正月轉神虎衛判禮賓省事九月上命學士趙冲爲中軍元帥次』(15) □公爲之使□與元帥行□洞州成殷州頭頭受敵俱見捷焉及據慈州城欲養兵以觀賊』(16) 變十二月蒙古自東陞入界連拔數城以兩國講和同破丹賊爲□文句我軍請兵諸將』(17) 無勇往之言□獨奮髻作聲曰事不辭難吾即其人也乃領十千人至□幕下蒙之帥問』(18) 公年幾許謂□曰兄使之東坐我元帥聞蒙古敬我公如是舉軍□至賊寇畏而出降蒙』(19) 古喜與我軍□爲兄弟及其還也公乃送□□于朝陽時有□以公□西京齋祭使齋祭畢』(20) 後還□寧州與元帥班師己卯三月復命又□年十月因處置義州□民公以右軍使□中』(21) □□□□□庚辰正月上授公以樞密院副使代他將爲中軍使時北隣亏加下應』(22) □□□□到義□聞我軍□聲反斬逆民□□我軍然後還其國□軍止(?)于(?)□州不使軍』(23) □□□□民□□處置逆民而辛巳五月□□至于王都

26) 184 한광연 묘지 14~17행 聞遼兵之初入也公以知兵馬事補左軍所至無遺策兵不敗北明年敵先鋒泊南』(15) 公爲全羅州道防護使令道內牢閉關往來又設伏多擊殺及佐中軍聞韃靼』(16) 踵至三軍皆沮色元帥趙公冲會僚佐謀曰寇非一計莫如和親君等其死國乎公』(17) 馳虜營論列國事聲淚俱發虜帥感動即并兵盡殺遼師累有功進銀青光祿大夫樞』

또한, 강동성에 응거했던 거란인들을 가리킬 때 遼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12세기에 멸망한 요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1213년에 야율유가가 세운 遼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孫抃이 작성한 金仲龜 묘지(1242)에는 이들이 金人으로 표현되기도 했다.²⁷⁾ 본래의 국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금 조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거란 세력은 金의 반란군이었으므로 金人이라는 지칭이 오히려 더 사리에 맞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거란 유종의 침입 사건은 백분화 묘지(1224)와 李積(『고려사』에는 李勳) 묘지(1225) 등에도 언급되어 있다. 두 묘지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작자, 이규보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다. 각각의 기록에 따르면 백분화는 거란 유종이 침입했던 지역에 파견되어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이적은 조충 및 김취려와 마찬가지로 1216년 거란 세력이 처음 침입했을 때부터 對거란 전투에 참여하였다. 두 묘지 모두 강동성의 전역이 있었던 때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되었으며, 거란 세력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이들에게는 공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백분화의 경우에서 보다는 이적의 사례에서 거란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폄칭이 더 많이 나타난다.²⁸⁾ 이는 이적이 이들로 인한 피해 사례, 즉 전쟁에 직접 투신했으며 그 기간 또한 길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된다.

지금까지 고려인들이 거란 유종을 직면했을 때의 모습을 묘지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거란 유종의 犯境을 직·간접적으로 겪었을 만한 인물들의 생애를 담은 묘지는 총 20편 정도라고 추측된다.²⁹⁾ 그런데 실제로 거란 유종이 언급되어 있는 묘지는 최충헌(1219), 조충

연대기에서는 외교 사절의 입국 등이 ‘入’으로 표현된다.

『高麗史』卷14 世家14 睿宗 10年(1115) 11月 庚寅 北路兵馬使馳報 遼東京牒 昨奉敕旨 高麗所遣生辰·橫宣落起復三謝使 近緣邊境多故 未得入界 已令還國; 卷20 世家20 明宗 16年(1186) 6月 庚申 金橫宣使大理卿李磐來 宴于大觀殿 磐善文章 容止可觀 自入界 所至館舍 錦綺帳褥 必命撤之 又禁屠殺 每有餘食 輒令從者 盛囊而行 道遇窮餓者 悉施之

27) 189 金仲龜 묘지 11행 時金人犯境

28) 백분화 묘지에서는 契丹이라는 표현만 한 차례 사용 되었으나, 이적 묘지에서는 契丹, 虜, 虜兵, 賊 등이 사용되었고 주로 虜라고 지칭되었다.

173 백분화 묘지 8~9행 又西海經契丹寇擾凋弊尤甚上遣君爲蘇復使君以便宜賑貸所活不可數民, (9) 於是幾骨而復肉矣

174 이적 묘지명 5~16행 越貞祐五年丙子契丹犯境上命三軍討之以, (6) 公爲右軍兵馬判官及與虜戰於貫花驛之南壤虜乘勝進擊我軍皆奔北無一人反顧, (7) 者公獨瞋目直前手殺數虜然後遂叱衆俱進賊衆遂却是日微公官軍幾殆矣明年轉, (8) 左軍兵馬副使復與虜戰於廣灘公先登大捷俘獲甚衆上奇其勇除左右衛將軍公固, (9) 辭不受尋改將作監出爲慶尙道按察使會朝廷勅諸道按廉使各率管內軍士赴三軍, (10) 爲羽翼三軍亦欲待以爲援屢督促之時虜兵遮屯要會元帥密傳以勿由其路公曰所, (11) 以赴戰固敵是求避敵非勇也行由徑路似怯也遂直衝虜屯而行虜果出圍之公與戰, (12) 大勝斬馘不可數獻俘于元帥府元帥大加咨賞未幾又命公以所部軍士押轉軍資於, (13) 順州虜自殷州出於不意公唯與麾下百餘人與戰却之元帥自城上望之嗟嘆至垂涕, (14) 己卯三月以尙書左承被召是年賊稍平餘種入江東城自保朝廷鍊銳兵以公爲都統, (15) 公固辭領兵以單騎赴之以其界兵士悉討平其賊仍留爲東北面兵馬使明年以樞密, (16) 院右承宣召之蓋公嘗固辭將軍故以喉舌貴官寵之也

29) 거란 유종의 犯境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1216년(고종 3) 8월이므로(『高麗史』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8月 乙丑 契丹遣種金山·金始二王子 遣其將鵝兒·乞奴二人 引兵數萬 渡鴨綠江 侵寧朔·

(1220), 백분화(1224), 이적(1225), 김취려(1234), 한광연(1237), 김종구(1242) 등 7건 정도인데, 거란 유종의 침입으로 인한 전투가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행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작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그리 많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를 살고 있으며 13세기 한반도 지역 정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거란 유종의 犯境은 한 집단이 다른 나라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해당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이들을 직접 겪었던 인물(조충, 김취려, 한광연, 이적)과 간접적으로 겪었던 인물(최충헌, 백분화)의 묘지 속에 나타난 이들 거란 유종과 그로 인한 사건은 쉽게 단순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묘사되었다. 조충, 이적, 김취려, 한광연의 공통적인 전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애를 기억하는 기록 속에서 거란 세력에 대한 묘사는 일치하지는 않았다. 반면 거란인들을 직면한 적은 없지만 당국자였던 최충헌에 대한 기억 속에서 이들은 부정적인 존재들이었다. 이들과의 전투가 일생의 마지막 공로였던 조충의 생애에서도 거란인들은 고려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반드시 타도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전역에 참여했던 김취려와 한광연 등의 생애 속에서는 거란 유종에 의한 피해가 덜 심각하게 드러나며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상대적으로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거란 유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약화되는 것은 직접적인 대면 경험의 여부보다는 기록의 작성 시기와 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거란 유종을 언급한 가장 이른 시기 묘지인 최충헌 묘지에서는 거란에 대한 편칭이 더 자주,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만 묘주가 더 오래 생존하여 묘지 작성 시기가 늦춰질수록, 그리고 그로 인해 묘주의 생애 속에서 거란에 대한 기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질수록 거란 유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중화되어 나타났다.

2) 묘지에 나타난 ‘형제의 맹’

13세기 전반 고려의 국경을 넘은 또 다른 세력으로는 몽고가 있었다. 몽고는 금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거란 유종을 쫓아 1218년 12월에 고려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³⁰⁾ 이미 1216년 11월에 금으로부터 몽고의 등장에 대한 예고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³¹⁾ 고려로서도 몽고[달단]의 범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거란 유종과는 3년에 가까운 전쟁을 치르고 결국 이들을 제거하였지만 몽고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진행되었다. 거란 유

定戎之境), 거란 유종의 犯境을 직·간접적으로 겪었을 만한 인물들의 묘지가 작성된 상한은 1216년으로 설정해 보았다. 그 하한은 거란 유종의 기억을 보여주는 가장 늦은 시기의 묘지인 金仲龜 묘지(1242년 작성)로 잡았다. 현전하는 묘지명 중 1217년부터 124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묘지명은 총 20편이다(승려 및 여성의 묘지 포함).

30)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5年(1218) 十二月 己亥 朔 蒙古元帥哈眞及札剌 率兵一萬 與東眞萬奴所遣完顏子淵兵二萬 聲言討丹賊 攻和·猛·順·德四城 破之 直指江東城

31)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冬十一月 庚寅 金移牒曰 韃靼兵來攻大夫營 乘間入城, 然已盡殺 尙恐餘黨 逃入貴邦 煩請照會 堤防掩殺

종을 소탕한 뒤 고려는 이 낮선 몽고의 제안으로 ‘형제의 맹’을 통해 이들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高麗史節要』에 전하는 몽고와의 형제의 맹은 『高麗史』 金就礪傳,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 贈諡威烈公 金公 行軍記, 김취려 묘지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요약하자면, 거란을 토벌하려던 몽고군 측에서 연합 군사 작전을 제의하였고 고려가 이에 응하면서 양국 간에 처음으로 외교 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양국 간에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던 단계를 세분해 보면 일단 전장에 참여하고 있던 양국 장수들 간에 맹약이 선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만족한 몽고측에서 사신을 보내 고려왕을 알현함으로써 양국 간의 강화가 공식화된 것으로 정리된다. 즉 향후 고려와 몽고, 각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 형제의 맹약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장에 파견되어 있던 장수들 간에 협력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토대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형제의 맹약이라는 외교적 사건을 당시인들은 어떻게 기억했는지 살펴보자.

형제의 맹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묘지는 당시 中軍 元帥 조충의 묘지이다. 묘지에 따르면 조충은 몽고의 진의를 의심하는 고려 조정에게 급한 사정을 알려 몽고와 우호 관계를 맺고 거란 유종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²⁾ 이렇듯 몽고와의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거론한 뒤, 그들과의 和好 체결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몽고는 蒙古國으로 지칭되었다. 몽고와 和好 체결이 거란 세력을 성공적으로 토벌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었고, 거란 유종 소탕은 묘주인 조충의 가장 큰 공로 중 하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몽고를 외교의 대상인 國으로 지칭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뒤이어 조충의 품행이 얼마나 의연하였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몽고 장수의 ‘완악하기가 짐승같은[頑如禽獸者]³³⁾ 성정을 대조 사례로 삼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조충 묘지 속에 나타나는 최씨 무신정권의 2대 집정인 崔怡의 활약이다. 조충 묘지에 따르면 조충이 對거란 전투에서 몽고 장수의 협력 의사를 전하자 최충헌을 비롯한 조정이 그 진위를 의심하였는데 이 때 樞密院副使였던 최이가 의심을 푸는데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거란인들을 평정했다고 한다.³⁴⁾ 최이가 주인공이 아닌 조충의 묘지에서 굳이 고려 조정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언급해야 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32) 169 조충 묘지 22~28행 賊疊戰再捷賊畏□入保堡州城時會有蒙古國軍帥合珠札刺等率勝兵万餘人自東鄙入」(23) □拔堡州只請(?)和我國復讎契丹之□辭請於公軍□公即奏聞先是蒙古國遣四十餘人責牒乘船」(24) □□定州請如今日講和事朝廷議以爲莫是契丹遺種一般人僞作蒙古文字名復讎契丹實欲」(25) □□□耶遂不報及是□□之馳聞方棘而朝臣猶執前議依違未決者久矣唯今樞密使崔公曰以元帥」(26) □□□□□□□皮□□贗而妄奏如是耶力開說□會群公然後□稍解且許講如然乞糧草事」(27) 未□□□公以便□□事故得與蒙古和好攻破契丹及平蒙古以俘獲婦女孩童六百餘口付公揮涕叙」(28) □□□□□公乃□配佛寺官廡以充廝役云

33) 169 조충 묘지 36~37행 及岱州之戰□蒙古帥本頑如禽獸者又乘勝自負見軍中」(37) □□輩率皆嫖狎無所不至及見公舉止遂嘆服敬憚引坐於上□呼爲大哥此人所以莫見其以何術而」(38) □也

34) 169 조충 묘지명 25~26행 (25) □□□耶遂不報及是□□之馳聞方棘而朝臣猶執前議依違未決者久矣唯今樞密使崔公曰以元帥」(26) □□□□□□□皮□□贗而妄奏如是耶力開說□會群公然後□稍解且許講如然乞糧草事」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충은 강동성의 전투가 있는 그 다음 해인 1220년 9월에 사망하였다. 최충현이 1219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조충 묘지가 작성된 때는 최이가 2대 집정으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다. 당시로서는 고려 조정 최대의 전쟁 성과였을 강동성 전역에서, 이제 갓 집권한 최이가 비록 전쟁에서 직접 공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동성 전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거론함으로써 묘주인 조충과 묘지 작성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이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이를 묘주의 생애를 더욱 기리는 장치로 활용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³⁵⁾ 이 사례는 묘지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묘지 작성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조충의 부장이었던 김취려의 묘지에서는 형제의 맹과 관련된 경험담이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다.³⁶⁾ 그의 묘지에서 김취려는 몽고 장수와 특별한 우호 관계를 맺는 豪傑 혹은 담대한 장수로 그려지고 있으며, 몽고에 대한 별다른 부정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조충 묘지에 묘사된 내용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김취려의 묘지가 작성되던 1234년 무렵은 몽고의 금 정벌이 거의 완수되어 가던 시기이며, 이미 3년전인 1231년부터는 이미 고려와도 전쟁이 시작되었던 때이므로 상황 상 고려를 공격해 온 몽고에 대한 반감에 근거한 폄칭과 비하가 사용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이 자료가 김취려 자신의 묘지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김취려 묘지에는 몽고와 형제의 맹 체결 시 김취려가 누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호걸’ 김취려의 상대역으로서 몽고 장수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김취려를 주인공으로 한 묘지에서는 그의 업적을 현창하기 위해 그와 우호 관계를 맺었던 몽고를 비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조충의 생애와 비교할 때 김취려는 상대적으로 장수했고 따라서 다른 전투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여 공을 세운 뒤 말년에는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쳐 首相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김취려의 많은 경험과 긴 생애에서 몽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상대화되고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묘지에서 몽고에 대한 별다른 부정적인 묘사가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이유라고 짐작된다.

『고려사』 세가 기록이나 『고려사절요』와 같은 연대기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김취려가 양국 간의 화호와 거란 유종 소탕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몽고 진영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중군의 知兵馬使였던 韓光衍이다.

한광연의 묘지에서도 강동성 전역과 몽고와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연대기 기록이나 조충, 김취려 묘지에서와는 찾아볼 수 없는 묘주 한광연의 활약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묘지가 묘주를 기리기 위한 글이라는 기본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35) 다른 한편으로는 조충 묘지의 이와 같은 내용이 2대 집정으로서의 역할을 막 수행하기 시작한 최이가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36) 묘지 뿐 아니라 『고려사』 열전에도 강동성의 전역을 위한 몽고와의 협상 석상에서 김취려의 활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익재난고』에는 그의 行軍記도 전한다. 이들 기록에서 김취려는 형제의 맹에서 가장 돋보이는 영웅으로 그려져 있다.

준다. 조충 묘지에서는 조충이, 김취려 묘지에서는 김취려의 공로만이 강조되었듯이 한광연 묘지 역시 묘지의 기본적인 작성 방식을 따랐다. 이에 의하면 오랑캐 진영, 즉 몽고 진영으로 가서 눈물로 이들을 설득하여 거란 세력에 대한 합동 군사 작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바로 한광연이다.³⁷⁾ 조충, 김취려 묘지에는 몽고 진영으로부터 먼저 화친 제의가 있었음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한광연의 묘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편리하게도 생략되어 있고, 對거란 전투를 성공으로 이끈 몽고와의 연합 작전의 공이 지휘관이었던 조충이나 김취려가 아닌 바로 한광연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군 원수였던 조충의 역할도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말을 달려 몽고 군영으로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도록 한광연을 자극한 것은 거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몽고와의 和親이 필요하다는 조충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한광연 묘지에 따르면 강동성의 전과를 거두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한광연 본인과 그를 격발시킨 조충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한광연이 몽고 진영을 방문했을 때 그는 혼자 가 아니었다. 한광연은 부원수인 김취려를 수행하는 일행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한광연 묘지 작자는 왜 한광연이 수행했던 김취려가 아니라 조충을 선택하였을까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추론하자면, 한광연과 조충의 사적 관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모두 1190년(明宗 20)에 급제하였다. 한광연과 조충, 尹于一, 李奎報, 兪升旦 등이 이 해의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확인된다.³⁸⁾ 조충이 상대적으로 일찍 사망하였으나 한광연과 조충의 관계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더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히 한광연의 묘지에서 함께 거론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광연 묘지는 형제의 맹과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 묘지 작성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나 사실을 적당히 생략하고 사실의 일부를 적극 과장하는 방식으로 묘주의 생애를 더욱 영광스럽게 기억시키고 있다. 작자에 의해 세련되게 왜곡된 기억은 어디까지나 묘주를 애도하는 사람들의 시각, 즉 묘주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실증의 도구로서 본다면 이 묘지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적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묘지라는 기록의 기본적 목적과 그로 인한 특성을 이해하면 이 왜곡된 기록은 13세기 전반기 고려인들이 개인의 생애를 미화했던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는 배가 된다.

한편 거란 유종의 난이 당시 집정자인 최충헌 묘지에 언급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형제

37) 184 한광연 묘지 16~17행

38) 『高麗史』 卷99 列傳12 李知命 再掌禮闈 以得人稱 若趙沖·韓光衍·李奎報·兪升旦·劉沖基 皆其所取 『東國李相國全集』 卷25 記 同年宰相書名記 予於大定三十年之庚戌 登進士第 同年凡三十人而已 後皆跨騰振拔 官至相府及華資顯列者 無若我同年之盛也 以兩府言之 趙相國沖以相門子 早從仕 至守太尉金紫光祿大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修國史上將軍判禮部事 卒年五十 兪相國升旦起自寒門 至金紫光祿大夫參知政事集賢殿大學士修國史判禮部事 卒年六十五 韓樞密光衍亦以宰相子 累官至銀青光祿大夫樞密院使禮部尙書寶文閣大學士致仕 今尙無恙 年八十三 … 時乙未某月記

의 맹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몽고와의 우호 관계 성립이 최충헌 사망 당시에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 형제의 맹은 조충 묘지에서는 講和, 몽고와의 和好 [與蒙古和好]로 표현되었고 김취려 묘지에서는 兩國 講和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두 인물 모두 형제의 맹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를 각각의 업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생각된다. 반면 한광연 묘지에는 같은 사건이 對거란 전투에 초점이 맞추어져 한광연의 설득에 몽고가 군사 작전에 동참하였다는[并兵] 내용으로만 정리되어 있다. 형제의 맹을 국가 대 국가 간의 화의, 즉 일종의 외교 관계가 수립된 것으로 보았는지 혹은 단순히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적 단계로서의 합의로 보았는지는 각 묘지 주인공의 참여도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묘지 작성 시기 몽고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거란 유종의 난과 형제의 맹과 같이 주요 외교적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 당시를 살았던 개인들의 생애 속에서는 어떻게 조명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 두 사건은 고려가 당면했던 국제 정세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후 고려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인의 기록 중에서 이를 언급한 묘지는 각 사건에 개입 혹은 참여할 여지가 있던 인물의 묘지에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사건이 언급된 묘지와 유사한 시기에 작성된 묘지들 중에는 이 두 사건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후대 사가들의 평가로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지만, 조정에 종사하고 있던 고려 관직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외교 사건이 그들 개인의 삶에 유사한 비중의 영향을 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묘지라는 기록의 특성상, 해당 사건에 직접 참여했는지의 여부 보다는 해당 사건에의 참여가 고인의 생애를 기념하는데 기여하는가의 여부가 거란 유종의 난과 형제의 맹과 같은 외교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개인의 묘지에 언급되는 기준이었을 것이다. 또한 묘지에서 나타나는 외부 세력에 대한 폄칭이나 비하, 부정적 표현들은 그들이 야기한 직접적 피해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외세와의 경험이 묘지라는 특별한 맥락 안에서 묘주의 업적을 기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가에 따라서도 적당히 조절되기도 했음을 보았다. 묘주의 공헌을 현창하기 위해 사실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왕조 전체의 대외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다양하게 기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하겠다.

3. 대외 환경 변화와 기년호

고려시대 묘지는 크게 銘과 그에 대한 序로 구분할 수 있다. 序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체로 고인의 혈통 혹은 가문 관계로 시작하여 직계 비속 및 장례 관련 정보로 끝을 맺으며, 서두와 결론 사이에는 고인의 일생 중 기억할 만한 사건이나 경력이 시간 순으로 기록된다. 이 때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지가 사용되었고, 주변

국의 연호와 고려 왕력 등이 사용되었다. 일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록일 것만 같은 묘지이지만 주변국의 연호가 시간을 표현하는 기호, 즉 기년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가 개인의 생애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13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묘지에 사용된 기년 사례를 통해 당시의 외교와 개인의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

고려 초기 몇몇 군주들은 스스로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주변국과의 외교 질서가 책봉-피책봉 관계로 정착된 이후 고려에서는 책봉국의 연호가 주로 사용되었다. 책봉국의 연호를 사용하더라도 연호와 함께 간지, 고려 왕력을 활용하여 해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책봉국의 세력이 쇠퇴하여 책봉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차원에서 책봉국 연호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지하기도 하였다.³⁹⁾ 이 경우에는 간지와 고려 왕력 등을 통해 해를 기록하였다.

13세기 전반기의 묘지에서도 고려 전기의 기년 방식이 대체로 유지되었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13세기 전반기는 고려와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있던 금의 세력이 쇠퇴하며 다양한 세력들이 금의 통제에 저항하였다. 칭기스칸, 야율유가, 포선만노 등 이들 反金 세력의 지도층은 각각 군주호를 사용하며 연호를 제정하는 등 일회적 봉기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치체 건설을 지향하였다. 특히 몽골 고원에서 흥기한 몽고는 요동 지역의 反金 세력을 규합한 뒤 고려와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긴 전쟁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기에 작성된 고려의 묘지를 살펴보면, 우선 1213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금의 연호가 단독 기년호로 사용되거나 혹은 금 연호와 간지가 결합된 기년호가 사용되었으며 간혹 고갑자나 고려 왕력, 고인의 연령 등이 기년호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⁴⁰⁾ 금의 연호를 표시하면서 앞에 大金을 병기한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⁴¹⁾ 금을 책봉국으로 하는 외교 질서에 여전히 고려가 익숙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1213년에는 금과 고려의 군주가 모두 교체되는 변화가 있었다. 9월에 金 宣宗이 즉위하여 貞祐로 改元하였다.⁴²⁾ 당시 금은 요동 지역에서는 야율유가의 반란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몽고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다. 선종의 즉위 역시 前 황제의 폐위로 인한 것이었는데, 선종에 앞서 황제위에 있던 衛紹王은 내정이 불안했던 탓인지 짧은 재위기간 동안 자주 改元하였다. 금 선종의 貞祐 연호가 사용되기 직전의 연호는 崇慶이었다. 공교롭게도 1213년 8월에 강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하였는데 이 시기 이후에 대한 기년 방식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39) 요-금 교체기에 요의 연호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지하는 조치가 있었다.

『高麗史』 卷14 世家14 睿宗 11年(1116) 4月 辛未 中書門下奏 遼爲女眞所侵 有危亡之勢 所稟正朔不可行 自今公私文字 宜除去天慶年號 但用甲子 從之

40) 예를 들어 150 崔婁伯 묘지에서는 고갑자가 사용되었고 154 咸脩 묘지는 묘주의 연령을 기년호로 사용하였으며 156 崔謙 묘지에서는 今上在位八年과 같이 고려 왕력을 통해 기년하였다.

41) 152 金鳳毛 묘지 26~27행 大」(27) 金大安元年己巳六月疾寢劇是月二十九日卒于第

42) 『金史』 卷14 本紀14 宣宗上 至甯 元年(1213) 九月 壬子 改元貞祐 大赦;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卽位年(1213) (9月) 是月 金昇王珣 卽皇帝位 改元貞祐 遣使來告

이 시기 작성된 묘지에서는 1213년(고종 즉위)을 나타낼 때 위소왕의 마지막 연호인 승경과 선종의 정우 연호가 사용되는 사례가 모두 확인된다. 예를 들어 “崇慶二年癸酉”(최보순 묘지) 또는 “貞祐癸酉”(이서림 묘지)와 같은 방식이다.⁴³⁾ 최보순 묘지의 경우 1213년 이후에는 貞祐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호의 변화상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고려 강종은 금 위소왕으로부터 1212년에 책봉을 받았는데 고려왕으로서는 금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책봉이었다. 고종은 왕위를 계승한 뒤 금과 사신을 교환하려 몇 차례 시도하였지만 몽고의 발흥과 다양한 금 叛軍의 흥기로 길이 막혀 불발되었다. 다만 금 선종이 즉위한 직후, 정우로 개원한 사실은 1213년 9월 고려 조정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었다.⁴⁴⁾ 따라서 1213년을 기록하면서 책봉주었던 위소왕의 승경 연호를 사용하는 것과, 새 황제의 정우 연호를 사용하는 것 모두가 고려의 기년 관습 상 허용되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서림 묘지에서는 묘주의 사망을 “大金貞祐癸酉仲冬下旬卒于家”라 기록하였는데⁴⁵⁾ 9월에 개원 사실이 고려 조정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고려 내부에서도 꽤 신속하게 이 사실이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⁶⁾

1213년 금이 貞祐로 改元한 뒤, 고려와 몽고 간에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작성된 묘지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차츰 늘어난다.⁴⁷⁾ 이 경우 고려 왕력, 고갑자, 고인의 연령 등이 해를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되었다. 오천유 묘지에서는 간지(단독), 고갑자, 연호(햇수 없이) 등 다양한 기년 용례가 확인된다. 이전 시기의 기록에서는 연호와 햇수, 그리고 간지가 결합한 형태의 기년호가 종종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貞祐癸酉 혹은 貞祐戊寅과 같이 연호와 간지만으로도 기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아울러 崔甫淳과 金仲龜 묘지에서는 고려 왕력을 주된 기년호로 사용하고 금의 연호를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확인된다.⁴⁸⁾

43) 최보순 묘지 외에도 유자량, 김중구 묘지 등에서 1213년을 가리킬 때 승경 연호가 사용되었다. 1213년을 가리킬 때 정우 연호를 사용한 것은 이서림 묘지가 현재까지는 유일한 듯하다.

고려 高嶺寺 飯子 명문에도 승경 연호가 사용되었다. 다만 이 명문은 “崇慶二年甲戌三月五日”로 표기 되어 있다.

44)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卽位年(1213) (9月) 是月 金昇王珣 卽皇帝位 改元貞祐 遣使來告

45) 159 李瑞林 묘지 6~7행 君遇疾」 (7) 不瘳以大金貞祐癸酉仲冬下旬卒于家越季冬二十四日卜宅

46) 고려 전기 요-금 교체기의 경우에도 요 연호 사용을 중단한 고려 조정의 결정이 실제 묘지 제작에 반영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는 약 6개월의 시간차가 있다(李美智, 2012,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24~225쪽).

47) 『고려사』 年表에 따르면 1224년(고종 11)부터 금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간지를 사용했다고 하며 (以金國衰微 不用年號) 유사한 내용이 宋의 寶慶四明志에도 전한다(『寶慶四明志』 卷6 敘賦 下 市舶 嘉定 17年(1224) 高麗乃棄金正朔 以甲子紀年 麻法與中國等; 장동익, 2009,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 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48)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

구분	기년 사례	비고
崔甫淳 墓誌 (1229 작성)	大正十四年甲午 ○明宗在位泰定二十二年壬寅 ○神宗在位承安(五)年庚申	금 연호 앞에 고려 왕대를 먼저 기록하는 용례가 있음.

이 당시 사용된 기년호 중 가장 특이한 사례는 고려 건국 기원이다. 崔暎 묘지(1229)에서는 고려가 건국한 시점으로부터 해를 헤아리는 방식이 등장한다.⁴⁹⁾ 당시 거란 유종도 거란 족이 세웠던 요의 개국을 시점으로 해를 헤아렸던 것을 보면⁵⁰⁾ 건국 기원은 고려 뿐 아니라 당시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기년 방식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최광, 최보순, 김중구 묘지에 나타는 기년 사례에는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기년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등장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마도 금의 연호가 더 이상 주된 기년호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고려 중심 기년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던 추세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들 묘지에서 금의 연호를 사용한 기년 관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고려를 기준으로 하는 기년 방식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책봉국인 금과의 외교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 중심의 기년 방식을 고안하려 했거나 혹은 중심 기년호로 채택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례가 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1229년에 작성된 최광 묘지를 기점으로 하여 이 시기 이후 작성된 묘지에서는 연호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금 선종의 정우 연호 사용례가 나타나는 하한은 1227년이다.⁵¹⁾ 그런데 실제로 금에서 정우 연호는 1213년 9월부터 1217년 8월까지만 사용되었고, 이후에도 興定 등 많은 연호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정우가 흥정으로 개원된 그 이후에도 정우 연호가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⁵²⁾

	○大上王(=희종)即位大和四年甲子 ○康宗即位大安三年辛未 崇敬二年癸酉 ○今上在位貞祐六年戊寅 貞祐八年庚辰	
金仲龜 墓誌 (1242 작성)	大金明昌五年甲寅 … 神宗奇之 泰和四年甲子貞宗嗣位 大安三年辛未康宗承寶圖 丙子年 崇慶二年癸酉今上踐祚 丁亥 明年 又明年 壬寅三月 日	금 연호를 먼저 사용하였으나 고려 왕명을 같이 병기한 뒤 같은 왕 재위 기간의 기록은 금의 연호가 아닌 간지 등으로 기년함.

49) 180 崔暎 묘지 16행 本朝啓統戊寅三百十二歲己丑(1229)

이 사례는 김창현, 2012, 「고려시대 묘지명에 보이는 연대와 호칭 표기방식」 『韓國史學報』 48에서도 주목된 바 있다.

50)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八月 契丹兵馳書報曰 大遼開國二百餘年 中被女眞侵犯 又將百年 其女眞所陷諸邑 盡行收復 惟婆速路一城不下 累次攻討 方得乞降 官吏依舊任使 百姓亦依舊安業 爾若不降附 卽遣大軍殺戮 的無輕恕

51) 176 任益惇 묘지 23~24행 貞祐十五, (24) 丁亥四月

52) 이와 관련하여, 김창현은 몽고군과 동진군이 고려와 금의 연결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금 연

이 시기의 기록 중 정우 연호가 실제 사용 연한을 지나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우 연호 사용 사례	묘지	비고
貞祐 6년(1218, 고종 5)	165 柳英材 妻 趙氏(1218) 167 崔孝思(1218)	
貞祐 7년(1219, 고종 6)	168 崔忠獻(1219)	
貞祐 8년(1220, 고종 7)	169 趙冲(1220) 178 崔甫淳(1229)	
貞祐 9년(1221, 고종 8)	170 柳光植(1221)	
貞祐 10년(1222, 고종 9)	174 李績(1225)	작자 : 이규보
貞祐 15년(1227, 고종 14)	176 任益惇(1227)	
*貞祐 13년(1225, 고종 12)	大良坪 觀音寺鐘	김용선 편저, 2010, 『일본에 있는 한국금석문 자료』, 한림대학교출판부, 92쪽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종 즉위 직후 통보된 금의 연호가 실제 금 내부의 개원과는 관계없이 고려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주요 기년호로 사용되었다. 금 宣宗 이후 잦은 改元을 고려가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아예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를 추정할 기록도 마땅히 눈에 띄지 않으므로 그 여부를 논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고려 조정은 금과의 외교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그동안 충실해 왔던 외교적 관행 및 기년 방식에 따라 고려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가장 최근의 연호인 貞祐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금에서 정우 연호가 폐지된 이후에도 고려에서 사용된 것은 1126년(仁宗 4) 이래로 대대로 금의 책봉을 받는 외교 질서에 익숙해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 초 거란과의 외교 관계 성립 이래 외교적 上國의 연호를 주 기년호로 사용하던 기년 방식에 익숙해 있었던 고려인들로서는 금의 정우 연호의 사용을 중단할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우 연호가 실제 사용 연한을 지나 계속해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13세기 전반기 외교 환경의 변화가 개인들의 생애와 관련된 기년 방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묘지 기록을 통해 살펴 보았다. 몽고의 흥기 및 그로 인한 금의 통제력 약화, 요동 지역에서 일어난 反金 세력의 흥기 등으로 인해 고려의 외교적 환경에 변화가 생기자 고려의 기년 방식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1213년 이후에 작성된 묘지에서는 연호 사용 빈도가 차츰 낮아졌다. 대신 고려 왕력, 고갑자, 고인의 연령 등 다양한 기년 방

호 사용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김창현, 2012, 「고려시대 묘지명에 보이는 연대와 호칭 표기방식」 『韓國史學報』 48, 121쪽).

식이 활용되었다. 1218년부터 1227년까지 금의 貞祐 연호가 꾸준히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실제 금의 연호와 는 조응하지 않는 기년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우 연호 사용이 여러 기록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단순한 기록 작성자의 오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금의 改元이 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려 조정과 고려인들은 자신들에게 전달된 가장 최근의 연호를 계속 사용한 것이라 설명해 보았다. 1228년 이후 시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를 기록하였다. 고려 개국 기원 혹은 고려 왕력이 주요 기년 방식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결론

〈이미지, 13세기 전반 고려의 외교적 순간과 개인의 생애 기록〉에 대한 토론문

최종석

본 발표문은 주요 외교적 사건들이 그 시대의 개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을까라는 문제 의식에서 13세기 전반의 주요 외교적 사건들에 대한 개인별 인식을 탐구하는 연구이다. 현 전하는 고려시대 문헌 기록 중 가장 국가 혹은 왕조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다고 판단되는 墓誌를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토론자는 13세기 전반의 대외관계사 내지 정치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데다가 이 글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미시사적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어, 발표자에 도움이 되는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다만 토론자의 임무가 있다 보니,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몇몇 질문 내지 의견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흥미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기에,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결실을 맺어 고려시대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문제의식의 구현과 묘지의 자료적 한계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묘지를 통해 당시의 외교적 사건에 대한 개인상의 경험과 인식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의 여지가 없지 않다. 서론에 적시된 문제의식을 읽으면서 예상된 바는, 한 묘지에서 도출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사건 인식을 추적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묘지의 자료적 한계로 인해서인지, 발표문은 묘지에서 확인 가능한 외교적 사건에 대한 인식 편린들을 발표자의 식견으로 검토·해석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묘지를 통해 묘지 작성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또한 묘지를 통해 포착 가능한 경험과 인식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누구냐 하는 점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우선 묘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묘지 작성 시 고인의 행장 등을 활용하기는 하나, 묘지 작성 주체는 묘주가 아니기에, 묘지를 통해 어떤 사건에 대한 묘주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렇다고 묘지 작성자가 그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발표문 상에서는 경험과 인식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묘주이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묘지 작성자를 포함한 작성 당시의 시대 사람

이기도 한 듯 보인다. 묘지에서 파악 가능한, 경험과 인식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보다 명확해지거나 일관적이게 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

2. 묘지와 열전의 비교

본 발표문에서 활용된 자료는 묘지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했던 이유는 묘지가 지난 상대적으로 강한 개인적 성격으로 인해 개인의 인식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열전과의 비교가 누락된 점이다. 묘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것은 열전 기록이다. 입전된 인물의 묘지의 경우 해당 열전과의 비교를 통해, 묘지 기록을 활용하는데 따른 특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해야 묘지만을 활용한 연구 방식이 보다 설득력 있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본 발표문의 검토 결과가 열전을 활용해서 얻은 것과 구분되는 정확한 지점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3. 기타

- 제목이 다소 모호하다. 발표문의 문제의식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한 듯하다.
- 2장인 ‘외세와 개인’에서 여러 개인의 인식들이 분석되고 있는데, 분석의 최종 결론과 합의가 발표문 상에서는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 미쳐 녹여내지 못한 고견이 있다면 이를 듣고자 하는 바이다.
- 3장에서는 ‘기년 사례를 통해 당시의 외교와 개인의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작업 내용은 특정 시기 묘지들에서 보이는 기년 방식의 실태 파악에 가까운 듯하다. 발표문이다 보니 충분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기년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외교와 개인의 관계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 ‘13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1차 사료를 토대로 작성하였기는 하나 서술된 내용이 다소 주지의 사실이어서, 간략히 줄여 여타 장 혹은 서론 내에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다.
- 발표자는 몽고와의 전쟁 종결 시점을 출륙환도한 1270년(원종 11)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렬왕의 시대인식과 음악정책

이강한

1. 머리말
2. 1270년대말의 <쌍화점> - 통합과 안정 추구
3. 1280년대 중반-1290년대 중반의 음악정책과 지향
 - 1) 1280년대 중반의 <태평곡> 수용과 의도
 - 2) 1290년대 중반 '상화' 관행 본격화의 의미
4. 1290년대 후반의 <쌍연곡>과 14세기초의 상황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시대 위정자들의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확인일 것이다. 그를 통해 그들이 펼친 여러 정책이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들의 정책이 새로운 것이었는지 또는 선대의 정책을 참고한 것인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고려후기 충렬왕대의 현재와 과거 인식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그러한 인식의 '맥락'을 충렬왕대 군신들의 '음악'과 관련한 각종 행위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관료들에 의해 창작된 악곡이나 국왕이 보였던 새로운 '악' 관련 관행들이, 충렬왕대 군신들의 시대 인식 및 지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충렬왕의 재위기간에 여러 다양한 악곡과 가무가 창작, 연주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쌍화점>, <태평곡>, <쌍연곡> 등 당시의 여러 노래와 악곡에 대해서는 주로 국문학계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당시의 당악, 아악, 향악(속악)이 선보였던 악조와 악기에 대해서는 음악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충렬왕대의 음악이 전란과 사회분열을 극복하고, 이전 상황의 회복을 기도한 것이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극심한 사회혼란 속에서 음악이 지니는 효용을 예술과 치유의 관점에서 검토한 성과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검토가 이제는 역사학계 쪽에서도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정 목표도 변화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음악의 맥락도 당연히 달라졌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본고에서는 충렬왕대 정부의 음악정책이 보였던 시기별 추이를 검토하여, 시대상황의 변동에 따라 그 문제의식과 지향에도 몇 단계의 변화가 있었음을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그 함의를 살피기 위해 충렬왕대 음악 관련 조치들이 과거 어떤 선례들과 비슷한 측면을 보였고, 동시대 원제국정부의 예약정비 과정과는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1270년대말의 〈쌍화점〉 - 통합과 안정 추구

충렬왕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각별했던 것 같다. 그의 재위 당시 등장하는 독특한 ‘열악(閱樂)’ 행위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¹⁾ 일찍이 1116년(예종11) “예의사가 제향 주관을 겸하고 있어 ‘閱樂’이 불편하므로 새로 열악원(閱樂院)을 세운” 바 있었는데,²⁾ 제향 담당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열악 전담 부서를 세운 것 자체가 ‘악’에 대한 중시를 보여주며, 그러한 ‘열악’ 행위가 고려후기에서는 유일하게 충렬왕대에만 재등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악에 대한 관심이 일종의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1270년대말로 보인다. 마침 충렬왕이 1278년 원에 들어가 쿠빌라이 및 원 관료들과 협상을 벌인 결과 몽골군을 철수시키고 둔전을 혁파하는 등의 몇 가지 외교성과를 거둔 상황이기도 하였다.³⁾ 그를 통해 확보한 모처럼의 여유를 계기로 충렬왕대의 군신들이 ‘내치’에 눈을 돌릴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충렬왕의 측근들이 음악과 관련한 몇 가지 활동을 보이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원상(金元祥)이었다.

‘소인을 가까이 하며 연락(宴樂)을 즐겼다’고 묘사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고려사』에서 충렬왕의 측근들은 하나같이 소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로 석씨나 오씨 등 다수의 측근들은 부패한 폐행들이었다. 그러나 김원상의 경우는 달랐다. 이후 14세기초의 일이긴 하지만 김원상은 1302년 6월 ‘국학박사(國學博士)’를 시험하여 6경(經)에 능통한 자에게 질(秩)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유학적 소양이 상당한 인물이었다.⁴⁾

이 김원상과 다른 측근들이 관현방(管絃坊)과 대악(大樂, 대악서)에 재인(才人)이 부족하다고 판단, 1279년 11월 제도(諸道)의 창기(倡妓)로서 색예(色藝)가 있는 자들을 교방(敎坊)에 충원하고, 서울의 무당 및 관비(官婢)로서 가무(歌舞)에 능한 자들을 궁중에 등록해 배치한 바 있다.⁵⁾ 기존의 ‘교외 방상(坊廂)’에서 악공을 차출하는 것을 넘어 인력수색을 전국으

1)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2年(1276) 2월 乙巳, 閱樂於宮門, 王與公主觀之, 賜銀布. 열악은 보통 ‘觀樂’의 또 다른 표현이라 여기기 쉬우나, ‘관악’은 고려 전기와 중기에는 팔관회·연등회 등과 관련해 등장하다가 무신집권기 이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 ‘열악’ 행위가 “신성을 가르쳤다”로 흔히 해석되는 “敎閱此歌”에도 등장함을 감안한다면, ‘열악’이라는 개념에 ‘관’ 또는 ‘사열’의 의미 외에 “음악을 주지(인지)시키는” 맥락의 행위 역시 포괄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外職 西京留守官, ..禮儀司爲典禮司: 知司事二人常參兼之; 判官二人. 本司兼主祭享, 其閱樂不便, 別立閱樂院: 知院一人常參兼之; 判官二人權務.

3)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4年(1278) 7월 甲申; 壬辰; 戊戌

4) 『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26年(1300) 6월 乙亥

5)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5年(1279) 11월 壬申, 命選州郡倡妓有色藝者, 充敎坊; 卷125 列傳38 姦臣1 吳潛, 管絃坊大樂才人不足, 分遣倖臣 選諸道妓有色藝者, 又選京都巫及官婢善歌舞者 籍置宮

로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된 인원을 교방과 궁중에 전속시켰음이 주목된다.6) 아울러 ‘나기(羅綺)를 입히고 마미립(馬尾笠)을 씌워’ 별도의 남장(男粧) 1대(隊)를 꾸린 후, “신성(新聲)”을 가르쳤다는 대목도 흥미롭다.7)

‘교방’은 일찍이 문종대 이래 가무 기획을 담당하며 <포구악(抛毬樂)> 등의 “당악(唐樂)”을 취급하였고,8) 의종대 그 직제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9) 그러나 그 후 무신집권기와 고종~원종대에는 등장하는 바 없었다. 그러다가 충렬왕대 오랜만에 ‘충원’을 단행했던 셈인데,10) 연주자를 증원했다는 것 자체가 충렬왕 정부 음악정책의 방향을 예고하는 바가 있다. 한편 “새로운 소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고려사』 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는

中. 한편 『고려사』에는 대악서와 관현방이 경쟁적으로 음악을 진설하는 양상이 자주 관찰되는데 (卷14 世家14 睿宗11年/1116 4月 辛卯, ...大樂管絃兩部爭務奇侈, 以至使婦女馳馬擊毬. 王命黜之, 其戲遂絕; 卷18 世家18 毅宗21年/1167 4月 戊寅, 以河清節幸萬春亭宴, 宰樞侍臣於延興殿, 大樂署管絃坊爭備綵棚樽花, 獻仙桃拋毬樂等聲伎之戲), 두 부서에서 다루는 음악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서긍의 『고려도경』에도 “(고려의) 악(樂)에 ‘양부(兩部)’가 있는데, ‘좌(左)는 당악이며 중국의 음’이고, ‘우(右)는 향악으로 대체로 이음(夷音)’”이라 설명했음에서(卷40, 악률) 그를 엿볼 수 있다. 아마도 그 명칭상 대악서는 ‘좌부(당악)’, 관현방은 ‘우부(향악)’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한다. 이 두 관부는 흔히 ‘양부’ 또는 ‘대악관현방(문종대 별사조)’ 등으로 통칭되었다. 그런데 충렬왕대의 이 기사에는 흥미롭게도 관현방이 먼저 등장한다. 대악서의 품질이 관현방 보다 높았음에도 충렬왕대의 군신들이 굳이 관현방을 우선시한 결과라면, 이 또한 ‘향악’ 위주의 1270년대 말 음악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8방상(八坊廂)은 ‘伶官’, ‘兩府’(대악서, 관현방) 등 악곡 담당부서나, 일반 기녀·재인·장녀·악공 등의 가무 담당자들과는 별도로 운영되던 존재로서, 13세기 전, 중반에 등장한 일종의 악대·악단인 것으로 짐작된다(『高麗史』 卷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高宗]32年/1245 5月, 宴宗室司空以上及宰樞...陳伎樂百戲, 八坊廂工人一千三百五十餘人 皆盛飾入庭奏樂絃歌鼓吹轟震天地, 怡給八坊廂, 白金各三斤.; 卷102 列傳15 琴儀, ...怡亦贈銀瓶又謁王親賜酒果, 仍觀各坊廂歌吹命權等七人屬內侍; 卷26 世家26 元宗5年/1264 12月 癸亥, 王發梯浦, 內學博諭正錄等, 率七管諸生外學十二徒中教導等...率進士生徒各上表及歌謠致仕宰樞三品員等迎于郊外, 八坊廂兩部奏樂爭呈百戲, 王駐輦綵棚前觀樂至晡還宮, 賜八坊廂白金各二斤, 娼女樂工賜物有差; 卷74 志28 選舉 科目 崇獎之典, 元宗...7年/1266 5月, 命新及第綴行, 令八坊廂父老·士庶, 笙歌盛服隨從, 以寵之).

7) 『高麗史』 卷125 列傳38 姦臣1 吳潛, ..衣羅綺戴馬尾笠, 別作一隊, 稱男粧教以新聲.

8) 『高麗史』 卷71 志25 樂 用俗樂節度, 文宗27年; 31年 (“教坊 女弟子”들의 연주)

9) 『高麗史』 卷72 志26 輿服 儀衛 法駕衛仗; 燃燈衛仗 上元燃燈, 奉恩寺眞殿親幸仗; 八關衛仗, 仲冬八關會 出御看樂殿仗; 西南京巡幸衛仗; 奉迎衛仗, 西南京巡幸回駕 奉迎仗

10) 한편 『高麗史節要』 기록에 유사한 기사가 충렬왕25년(1299) 5월조에 기록돼 있다는 이유로, 관련 재인들의 충원 및 쌍화점의 첫 연주가 이뤄진 시점을 1270년대말이 아닌 ‘1299년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박노준, 1990 「쌍화점의 재조명」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이러한 관측에는 무리가 있다. 홍자번 등이 오기의 죄를 원 관료 첩목아불화 등에게 고하던 1303년 김원상도 그에 동참했음을 고려할 때(『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29年/1303 7月 辛巳, 元冲甲等五十人及洪子藩尹萬庇等三十人 以書數吳祁罪告于帖木兒不花李學士; 卷125 列傳38 姦臣1 金元祥, ..遷知申事, 與洪子藩等數吳潛罪告元使帖木兒不花..), 14세기초 이미 김원상과 오잠은 행보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충렬왕 앞에서 <쌍화점> 공연 등을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고려사절요』에는 1279년 11월 ‘주군의 창기로 인물과 재예가 있는 자를 뽑았다’는 기사에 “교방(教坊)에 충당할 것을 명령”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기돼 있어, 『고려사』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보인다. 따라서 재인의 교방충원 및 관비, 무당의 소집은 모두 1279년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충렬왕의 측근이었던 오잠(吳潛[오기,吳祈])의 열전에 수록된 것과 똑같은 기록이 등장하는데,¹¹⁾ 그 기록과 함께 ‘삼장(三藏)’과 ‘사룡(蛇龍)’이라는 노래가 소개돼 있으며, 이 중 ‘삼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쌍화점(雙花店)>의 일부이다. ‘삼장사(三藏寺)에 등불을 밝히고 가니, 사주(社主)가 나의 손을 잡았다. 이 말이 절 밖에 나간다면, 상화(上座) 네가 말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는 기사와, “뱀이 용의 꼬리를 물고 대산(大山) 등을 지나간다고 들었다. 만인(萬人)이 각기 말을 다르게 하니 ‘양심(兩心, [蛇龍二心])’이 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 노래들을 “김원상과 오잠 등이 만들었다”고 돼 있으니, <쌍화점>이 바로 앞서 언급한 “신성”의 일부였던 셈이라 할 수 있다. ‘신성’을 추구하던 1270년대말 충렬왕대 군신들의 음악적 지향이 ‘속악’, 즉 고려의 ‘향악’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토착성’과 ‘종래성’에 대한 추구가 이 시기 신성 추구의 맥락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¹²⁾

이러한 면모는 이 시기의 다른 정황들에서도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충렬왕은 1278년 9월 평양에 사신을 보내 태조(太祖), 동명(東明), 목덕묘(木覓廟) 등에 제향하였고,¹³⁾ 고려 후기 국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성황(城隍)에 덕호(德號)를 가하였다.¹⁴⁾ 동명왕 제사의 경우 고려중기 시작되어 얼마 안 있어 중단되었고,¹⁵⁾ 성황의 경우 문종대 처음 등장하고 고종대에 그 ‘공(功)’이 인정되는 사례가 등장한 바 있는데,¹⁶⁾ 동명사가 (고려의 ‘과거’로서의) 고구려에 대한 제사였고 성황은 한반도의 토속·토착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음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충렬왕의 관심은 그의 국정지향의 일단을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의 음악 정책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음악정책의 시작에 원측으로부터의 영향 또한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김원상 등의 교방 충원 조치 몇 년 전부터, 원에서도 교방 충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제 국정부는 이미 1260년 이래 악인(樂人)들을 모아 악기를 만들고 새로 제정한 아악을 조종 제사에 썼으며,¹⁷⁾ 1261년에는 동평(東平) 지역의 악공들에게 ‘대악(大樂)’을 교습시켰다.¹⁸⁾

11) 其詞云: “三藏寺裏點燈去, 有社主兮執吾手, 儻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又云: “有蛇含龍尾聞過大山峯萬人各一語斟酌在兩心.” 高低緩急皆中節簇;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三藏, 三藏寺裏點燈去, 有社主兮執吾手, 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有蛇含龍尾, 聞過大山峯,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12) 이러한 모습은 이미 태자시절 당에서 관찰된다. 1265년 태자 충렬왕은 안경공 왕창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밤새 음악을 연주했는데, 이는 도가의 설에 근거한 ‘수경신(守庚申)’이라는 고려 “국속”(“時俗”)으로 표현됨을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高麗史』 卷26 世家26 元宗2年/1265 4月 庚申).

13) 『高麗史』 卷63 志17 禮 吉禮小祀 雜祀, (忠烈王4年:1278) 9月 辛卯, 遣使于平壤, 享太祖東明木覓廟; 卷30 世家30 忠烈王19年(1293) 10月, 王至西京, 謁聖容殿, 分遣人祭平壤君祠東明王及木覓廟.

14)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7年(1281) 1月 丙午, 中外城隍名山大川載祀典者皆加德號

15) 동명 제사는 숙종대 시작되었고(『高麗史』 卷63 志17 禮 吉禮小祀 雜祀, 肅宗(10年:1105)...8月 甲申, 遣使, 祭東明聖帝祠, 獻衣幣) 예종대에도 계속되었다(卷13 世家13 睿宗4年/1109 4月 乙酉, 遣同知樞密院事許慶祭平壤木覓東明神祠; 卷64 志18 禮 軍禮 師還儀, 睿宗...11年/1116 4月 丁卯, 遣使, 祈雨於上京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 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梯淵).

16) 『高麗史』 卷63 志17 禮 吉禮小祀 雜祀, (文宗) 9年(1055) 3月 壬申, 宣德鎮新城, 置城隍神祠, 賜號崇威, 春秋致祭; 卷23 世家23 高宗23年(1236) 9月 丁巳, 蒙兵圍溫水郡郡吏玄呂等開門出戰大敗之斬首二級中矢石死者二百餘人所獲兵仗甚多王以其郡城隍神有密祐之功加封神號以呂爲郡戶長.

1266년 처음으로 궁현(宮縣), 등가(登歌), 문무이무(文武二舞)를 태묘(太廟)에서 사용하고, 태묘 8실의 악장(樂章)도 만들었으며,¹⁹⁾ 1267년 궁현악에 ‘대성(大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²⁰⁾ 1270년 정월 15일 개최된 행사에서는 교방사(教坊司)를 비롯, 운화서(雲和署), 흥화서(興和署), 상화서(祥和署), 의봉사(儀鳳司) 등 다수의 음악부서들이 동원됐음이 확인된다.²¹⁾ 원제국정부는 1274년 교방사에 800명의 악공을 충원하였고,²²⁾ 1276년 강남 복속을 계기로 악기도 계속 수집했으며²³⁾ 1279년에도 악공을 보충했는데,²⁴⁾ 이 시점에 충렬왕대의 교방 충원 조치가 내려졌음이 주목된다.

아울러 충렬왕이 즉위하자마자 원제국정부에 ‘무인(巫人)’을 요청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해 봄직하다.²⁵⁾ 그가 어떤 연유로 무인을 외국에서 구하고자 했는지는 미상이고, 원의 답신에 의하면 그는 ‘의료용’ 무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²⁶⁾ 그간 고려사회 속 ‘무녀’의 역할이 ‘의원’의 역할을 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렬왕의 측근들이 가무 담당부서 정비조치의 일환으로 무녀들을 모으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렬왕의 원나라 무인 요청도 유사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⁷⁾ 충렬왕이 원제국의 음악정책 진행과정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정책에 원의 요소들을 적극 접목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1270년대말의 음악 관련 조치들은 원제국정부의 제도정비 추세나 양국 간의

17) 『元史』卷68 志19 禮樂2 制樂始末, 中統元年(1260) 春正月, 命宣撫廉希憲等, 召太常禮樂人至燕京。夏六月, 命許唐臣等製樂器, 公服, 法服。秋七月七日, 工畢。十一日, 用新製雅樂, 享祖宗于中書省。禮畢, 賜預祭官及禮樂人百四十九人鈔有差。八月, 命太常禮樂人復還東平。

18) 『元史』卷68 志19 禮樂2 制樂始末, (中統)2年(1261) 9月, 敕太常少卿王鏞領東平樂工。常加督視肄習, 以備朝廷之用; 卷4 本紀4 世祖 中統2年(1261) 12月 甲午(太常少卿 王鏞에게 大樂을 教習하게 함)

19) 『元史』卷67 志18 禮樂1, 至元3年(1265), 初用宮縣, 登歌, 文武二舞于太廟。烈祖至憲宗八室, 皆有樂章。

20) 『元史』卷6 本紀6 世祖 至元4年(1277) 3月 丁巳(耶律鑄의 宮縣樂이 완성돼 ‘大成’이라는 이름 내림)

21) 『元史』卷77 志27下 祭祀6 國俗舊禮, 世祖 至元7年(1270) 以帝師八思巴之言, 於大明殿御座上置白傘蓋一, 頂用素段, 泥金書梵字於其上, 謂鎮伏邪魔護安國利。自後每歲二月十五日, 於大明殿啓建白傘蓋佛事, 用諸色儀仗社直, 迎引傘蓋, 周遊皇城內外, 云與衆生祓除不祥, 導迎福祉。음악부서들의 내부구성은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教坊司·雲和署(大樂鼓, 板杖鼓, 篳篥, 龍笛, 琵琶, 箏, 七色 400명), 興和署(妓女雜扮隊戲 150명), 祥和署(雜把戲男女 150명), 儀鳳司(漢人, 回回, 河西三色細樂, 每色各三隊 324명)

22) 『元史』卷68 志19 禮樂2 制樂始末, (至元)11年(1274) 8月, 製內庭曲舞; 卷8 本紀8 世祖 至元11年(1274) 11月 壬寅(악공 800인을 늘려 선발하고 教坊司에 예속)

23) 『元史』卷9 本紀9 世祖 至元13年(1276) 3月 丁卯(伯顏이 臨安에 들어가 郎中 孟祺로 하여금 宋 太廟四祖殿, 景靈宮의 禮樂器, 冊寶 및 郊天儀仗과 秘書省, 國子監, 國史院, 學士院, 太常寺의 圖書, 祭器, 樂器 등의 물건을 籍하게 함)

24) 『元史』卷68 志19 禮樂2 制樂始末, (至元)16年(1279) 10月, 命太常卿忽都于思召太常樂工。是月十一日, 大樂令完顏椿等以樂工見于香閣, 文郎魏英舞迎神黃鐘宮曲, 武郎安仁舞亞獻無射宮曲

25)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8年(1282) 7月 庚申, 遣散員高世如元請醫巫。

26)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8年(1282) 8月 丙戌, 朔高世還自元帝曰: “病非巫所能已醫則前已遣鍊德新何必他醫?” 惟賜藥物。

27) 아울러 1283년 8월에는 원에서 남녀 倡優가 왔고 그 優人들이 百戲를 呈演하기도 했는데(『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9年/1283 8月 乙巳, 己酉), 이러한 방문을 통해 원 예술계의 동향이나 원제국의 다양다기한 지향들이 고려에 전달돼 왔을 가능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관계에 편승하여 시작됐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고려의 전통, 한반도의 과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음악의 효용에 대해서는 외부의 사례에 영감을 얻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은 고려 내부의 전통에서 취한 셈이라 여겨진다.

다만 충렬왕이 국정의 주요수단으로 음악을 부각시키고자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내용을 고려의 ‘속악’으로 채운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음악과는 보통 대척점에 서 있던 ‘형정(刑政)’에 대한 충렬왕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역으로 그가 ‘음악’의 효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충렬왕의 그러한 인식과 입장은 그가 심양(沈陽)이라는 대관과 빚었던 갈등에서 나타나는 바가 있다.

1280년 3월 충렬왕은 장경도량(藏經道場)을 설행할 당시 두견화(杜鵑花)가 만개한 것을 보고는 사운시(四韻詩) 1편을 지은 뒤, 사신(詞臣) 백문절(白文節), 반부(潘阜), 곽예(郭預), 민지(閔漬) 등 18명의 관료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행사의 말미에, 백문절이 ‘심양의 죄’를 사면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했고, 충렬왕이 그를 허락했음이 주목된다.²⁸⁾

심양의 입전에 따르면, 일찍이 장성현(長城縣) 지역에 ‘금성대왕(錦城大王)을 꿈에 보았다’며 금성신당의 무녀(錦城神堂巫)를 자처했던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상국(上國: 元)’에 간다는 신어(神語)를 지어 유포시켰고, 나주의 관리는 그녀를 위해 역마를 제공했으며, 나주 출신의 한 조정 관료가 충렬왕에게 그녀를 접견할 것을 건의하였다. 당시 인들은 궁궐로 향하는 그녀의 이동을 도병마사에게 급히 보고하며 ‘금성대왕이 온다’는 표현을 썼고, 통과하는 지역의 수령들이 모두 예복차림으로 그녀를 맞으며 환대하였다. 앞서 김원상 등의 무녀 소집을 감안하면, 그녀의 개경 방문 역시 충렬왕이나 국왕측근들의 초빙으로 인한 것이었거나 최소한 국왕과의 공감 아래 진행된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충렬왕대초 공주지역 부사로 재직 중이던 심양은 그녀를 접대하기를 거부하였고, 그의 관할지역에 그녀가 잠시 머무르자 동향 출신의 남자와 동침하고 있는 그녀의 행각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충렬왕과 무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했던 셈으로, 만약 그녀가 충렬왕의 요청으로 개경에 오고 있는 중이었다면 심양의 행위는 충렬왕의 의도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 된다. 게다가 심양은 이후에도 충렬왕의 사냥과 연락(宴樂)을 비판하고, 오락에 방종해 물건을 허비하는 대신 ‘상국(上國)의 법’을 좇을 것을 제의했으며, 충렬왕의 측근이었던 윤수(尹秀)가 연회에서 추대를 보였음(‘登床 戲舞’)을 비판하는 동시에,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대선사(大禪師) 조영(祖英)은 ‘음란하고 더럽다(淫穢)’며 배척하였다. 충렬왕은 그러한 비판과 충고를 처음에는 수용했다가, 윤수와 조영이 반격에 나서자 입장을 바꿔 심양을 가혹하게 국문하였다. 이에 백문절 등이 그 사면을 요청했던 것이다.²⁹⁾

심양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그가 충렬왕더러 “위향(委巷)의 이음(俚音, 속음[俗音])”을 멀리하고 “교방(教坊)의 법곡(法曲)”을 들일 것을 주장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충렬왕의

28)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3월 丙辰, 幸本闕設藏經道場, 見殿後杜鵑花盛開, 題四韻詩一篇令詞臣白文節潘阜郭預閔漬等十八人和進, 文節等進言請宥沈陽之罪, 卽命釋之尋又釋侗應等.

29) 『高麗史』 卷106 列傳19 沈陽

음악정책은 이미 교방을 공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³⁰⁾ 그 내용이 ‘(고려의) 속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비판한 것이다. 게다가 원에서 음악정책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1280년³¹⁾ 충렬왕과 심양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양과 그 무리들의 언급은 이를테면 원제국정부의 음악정책 기조(송 아악 계승³²⁾)를 더욱 충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충렬왕의 ‘거부’는 어떤 논리에 바탕한 것이었을까? 그가 “간쟁(諫諍)은 성랑(省郎)의 임무인데, 심양은 법리(法吏: 대간)이므로 간쟁은 그의 임무가 아님”을 일갈한 대목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심양은 법과 체례의 차원에서 ‘성악(聲樂)’ 문제를 거론한 것이었지만, 충렬왕은 그를 넘어서는 정치논리, 즉 국정철학의 일부분으로서 음악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바, 법과 체례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주요 임무였던 법관(法官)이 국왕의 국정 방향을 시비하는 월권적 ‘정치 간쟁’을 한 것을 처벌한 것이라 이해된다.

‘음악’이라는 정책적 외형이 필요했으므로, 충렬왕은 원제국의 동시기 조치들을 참조해 교방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제국 음악정책의 내용이었던 ‘문무아악 위주의 정비 노력’까지 수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대신 ‘속악(향악)’을 그 내용으로 삼았음이 흥미롭다. 이는 결국 충렬왕이 자신의 국정목표 성취에 ‘당악’이나 ‘아악’ 보다는 속악이 더욱 유효할 것이라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심양을 견책하면서 대부분의 대간을 교체해 버렸을 정도로 그는 속악 위주의 음악정책을 견지하고자 하였다.³³⁾

그렇다면 이 시기 그러한 음악정책을 통해 그가 성취하려 한 국정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몽골과의 오랜 전투가 끝나고, 1260년 강화에 이어 1270년 개경 환도를 단행하면서 드디어 원제국과의 공존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원으로부터 각종 문물과 풍습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272년 12월 원에서 돌아올 당시 세자 충렬왕이 변발과 호복을 다른 모든 이들에 앞서 ‘선진적으로’ 착용해 나라 사람들을 놀래게 한 것은 그 서곡에 불과하였다. 그는 심지어 1274년 10월 공주를 맞이함에 있어 고려 관료들이 ‘개체(開剃)’를 하지 않은 것도 책망하였다.³⁴⁾ 개경으로 들어올 때에도 관료들이 백성들의 동요를 고려해 충렬왕에게 전통 예복을 입고 입경할 것을 청했지만, 충렬왕은 그를 거부하였다.³⁵⁾ 그는 즉위 직후 제일 먼저 금

30) 물론 심양이 언급한 교방은 [『고려사』 내 당악을 산출한] ‘송 교방’으로서, 고려의 교방과는 달랐다고 하겠다.

31) 『元史』 卷11 本紀11 世祖 至元17年(1280) 4月 乙酉(宋의 太常樂을 太常寺에 붙임)

32) 『元史』 卷10 本紀10 世祖 至元16年(1279) 10月 乙酉(大樂署令 完顏椿 등에게 文武樂을 익히게 함)

33)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3月 乙卯, 監察司上言論時事, 王大怒, 翰侍史沈陽于崇文館, 流雜端陳侗 侍史文應 于海島, 罷殿中侍史李承休, 以將軍金鑑爲侍丞, 郎將禹天錫爲雜端, 佐郎閔萱爲侍史, 前廣州判官李仁挺祗候閔漬爲殿中侍史.

34)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即位年(1274) 10月 辛酉. 정수리부터 앞이마까지 머리를 네모나게 깎고 대신 가운데 머리털은 남겨두는 ‘怯仇兒’의 풍속을 관료들에게도 수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그럼에도 관료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자, 충렬왕은 개체를 하지 않은 관료들을 공주 환영 행사에서 모두 철수시키고, 일찌기 개체를 한 바 있던 박구라는 관료만을 동행케 하였다.

35)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即位年(1274) 11月 丁丑. 당시 백성들은 충렬왕의 외양에 큰 충격을

오산 편액의 ‘성수만세(聖壽萬歲)’ 네 글자는 ‘경력천추(慶曆千秋)’로, ‘만세’는 ‘천세’로 바뀌었으며, ‘천하’, ‘태평’ 등의 용어도 수정하였다.³⁶⁾

이러한 변화는 전례(典例)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1276년 7월 충렬왕은 원정부에 ‘저울’을 요구함으로써 원의 칭량제도를 도입하였고,³⁷⁾ 1277년 4월에는 ‘선왕의 법’이 아니라는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형, 교수형 등 “2죄”를 범한 죄수도 사면시켰다.³⁸⁾ 1278년 2월에는 전국에 명을 내려 원의 의관을 입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몽고족[韃靼]의 옷과 모자를 상용하게 되었고,³⁹⁾ 1279년 5월에는 양국 간에 오갈 공문의 규례까지도 정해 달라고 원에 요청하였다.⁴⁰⁾ 1281년 1월에는 원으로부터 새 역법 수시력(授時曆)이 전해져 왔고,⁴¹⁾ 1289년 9월에는 고려 정동행성(征東行省) 휘하에 유학제거사(儒學提舉司)가 설치되었다.⁴²⁾

다시 말해 원제국과의 공존으로 인해 고려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던 상황이었다. 고려인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사회 전체적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국왕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자, 특단의 대책을 요하는 형국이었다.

이에 충렬왕은 원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태사국(太史局)이 “목(木)의 방위를 지닌 고려는 마땅히 청색을 숭상해야 하는데, [몽고식 복장인] 융복을 착용하게 된 후 사람들이 흰 모시 옷(白紵衣)을 옷옷으로 많이 입어 ‘목(木)’이 ‘금(金)’(흰색)에게 제압당하는 형상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백색 의복을 금할 것을 건의하자, 충렬왕은 그를 가납하였다.⁴³⁾ 호복과 변발을 수용하면서도, 백색의복의 상용화로 인한 풍수 차원의 방위적 불균형, 즉 종래의 전통에서 유지되었던 ‘균형’의 교란까지는 민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277년 7월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조성도감(造成都監)이 원의 통상적 건축 규격을 도입하여 개경 내에 (그간 <도선밀기(道詵密記)>의 내용에 따라 짓는 것을 금기시해 왔던) ‘고층건물’을 짓고자 한 것인데, 관후서(觀候署)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자 충렬왕은 그 반론을 수용해 공사를 긴급 중단시켰던 것이다.⁴⁴⁾ 고려 건국에 관련된 인물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대중에게 노출돼 백성들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가급적 자제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상황에서 충렬왕은 1280년 10월 궁인으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케 하여, 생소(笙簫), 가취(歌吹)의 소리를 궁 밖에까지 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⁴⁵⁾ 연주된 음악의 종류는 미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36) 『高麗史』 卷69 志23 禮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忠烈王元年(1275) 11月 庚辰

37)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2年(1276) 7月 癸丑

38)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3年(1277) 4月 丙子

39)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4年(1278) 2月 丙子, 7月 甲申

40)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5年(1279) 5月

41)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7年(1281) 正月 戊戌

42)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5年(1289) 9月

43)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忠烈王元年(1275) 6月

44)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3年(1277) 7月 丙申

상이지만, 전년의 교방 충원 및 가무 재인 확보 조치 등을 감안한다면 김원상, 오잠 등이 지었던 <쌍화점> 등이 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⁴⁶⁾ 충렬왕의 이러한 행위는 일본정벌 등으로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도발적인 것으로,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노출시킬 법한 작태였다. 다른 조치들에서 드러나는 용의주도함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였다. 그 점에서 오히려 그가 민심 위무 차원에서 음악을 연주케 하고, 그러한 의도를 궁 밖에 과시하려 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행된 시연에서 표출된 음악이, 과연 민심을 어루만지고 그 긴장감을 해소시켜 줄 만한 것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쌍화점>을 애정과 풍자의 노래로만 간주해 온 것과 달리,⁴⁷⁾ <쌍화점>의 네 장이 화자와 네 부류 인물들 간의 유대를 묘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착안, <쌍화점> 내 4개의 장이 각기 충렬왕과 그의 4 부류의 측근들, 즉 회회인, 호승(胡僧), 왕실보필세력(원내 실권 집단) 및 상인집단 등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최근 제기된 바 있다.⁴⁸⁾ 원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부상한 신흥세력까지도 고려의 통치질서 및 체계 안으로 포용하려는 의도에서 <쌍화점>이 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충렬왕의 측근들을 4개의 무리로 분류한 것은 다소 인위적이라 여겨지지만,⁴⁹⁾ <쌍화점>

45)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10月 戊子, 令宮人奏樂笙簫歌吹之聲聞於外. 國人以東征故皆有蹙額之嗟.

46) <쌍화점> 등의 ‘신성’이 ‘高低緩急에 있어 모두 곡조에 맞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악곡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원형은 민요에서 채집된 것이라 하더라도 김원상과 오잠 등에 의해 한 차례 가공을 거친 작품들이었던 점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한편 그 연주무대를 ‘향각’이라 보는 견해도 있는데, 향각은 이후 ‘상화연’의 공간으로 더 많이 등장한다.

47) <쌍화점>의 서술을 애정과 성의식의 솔직한 표출의 결과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이도흠, 1997 「고려속요의 구조분석과 수용의미 해석-쌍화점과 동동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 나정순, 2003 「고려 가요에 나타난 성과 사회적 성격-쌍화점과 만진춘별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절박한(타락한) 현실(사회풍조)에 대한 풍자라 보는 입장도 있고(김석희, 1990 「쌍화점의 발생 및 수용에 관한 전승사적 고찰」 『어문논지』 6,7),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심적 고통 또는 그 이면의 고려인들의 자유분방성을 드러내는 노래라 보는가 하면(양태순, 1982 「고려시대의 시가연구-속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무속과 연결시켜 보는 견해도 있다(최동국, 1984 「쌍화점의 성격 연구」 『문학과언어』 5). 이러한 논의는 <쌍화점>이 자연발생적 민요 또는 여타 형태의 노래였을 가능성에 대해 더 주목하는 입장과(신영명, 2004 「쌍화점의 어조와 미의식」 『우리어문연구』 8; 강명혜, 1996 「풍요의 노래로서의 쌍화점」 『고전문학연구』 11), 충렬왕 및 그 측근들이 민요적 원형을 궁중음악으로 재창작, 재탄생시킨 것이었을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입장(정운채, 1993 「쌍화점의 주제」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49; 1995 「삼장 및 쌍화점과 서동요의 관련양상」 『고전문학연구』 10)의 공존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한편 이른바 <元曲>의 문제와 관련시켜 충렬왕과 <쌍화점>의 문제를 논하는 견해도 발표된 바 있다(김명준, 2006 「쌍화점 형성에 관여한 외래적 요소」 『동서비교문학저널』 14; 박덕유, 2001 「쌍화점의 운율 및 통사구조 연구」, 『어문연구』 110).

48) 임주탁, 2004 「三藏, 蛇龍의 생생 문맥과 함의」 『한국시가연구』 16, 2004. 그는 충렬왕이 대악관형방의 예능인들을 충원한 점에 주목, 충렬왕이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 더 많은 종류의 ‘지향’과 교감, 동화하려 노력했던 것이라 해석하였다.

49) 충렬왕에게 상인 출신의 측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긴밀히 교류하고 있었던 회회인들이

이 당시 민중들이 흔히 드나들던 공간들(시장, 사찰, 우물가, 술집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사실이므로, 노래의 구성 자체가 소박하면서 자유로운, 다시 말해 포용적·포괄적(비차별적) 측면을 담고 있음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충렬왕은 종래의 민속요들 중 가장 토속적이고도 서민적인 노래들을 중심으로 ‘신성’을 구성, 그 자체로 정부와 민의 거리를 좁히려 한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개진해 본다. 충렬왕의 의도가 그러했다면 그가 재위초반 음악정책을 펼침에 있어 고상한 법곡, 아악 위주로 가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심양 등의 간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원제국과의 공존 상황에 직면, 최소한도로나마 고려의 전통과 과거를 보전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음악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 이 시기 충렬왕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3. 1280년대 중반-1290년대 중반의 음악정책과 지향

1) 1280년대 중반의 <태평곡> 수용과 의도

재위초반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추구한 충렬왕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회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1281년 일본정벌 이후 비록 논의가 몇 차례 더 제기된 했지만 일본정벌이 실행된 경우는 없었고, 고려와 원제국 사이에 별달리 발생한 현안도 없었다. 1270년대 전반이나 후반처럼 국토와 국체의 보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아니었던 셈이다.

따라서 종래의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 고려의 전통 보호와 그를 통한 사회통합보다는, 좀 더 안정된 바탕 위에 문화를 비롯한 고려의 제면모를 ‘일신’하는 것이 새로운 국정목표로 떠올랐음직하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등장한 악곡이 바로 <태평곡(太平曲)>이다.

충렬왕의 <태평곡> 수용은 1286년 7월 이뤄졌다. 충렬왕이 총애하던 기녀(妓女) 적선래(謫仙來)가 김원상이 지은 <태평곡>을 충렬왕에게 알리자, 충렬왕이 “글에 능한 자가 아니면 능히 짓지 못할 곡”이라며 창작자 김원상과 박윤재(朴允材) 등을 새삼 요직에 기용한 바 있다.⁵⁰⁾

<태평곡>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임주탁에 따르면 <태평곡>은 당 현종(玄宗) 연간 창작되어 당상악(堂上樂)이 된 ‘신성 법곡’ 중 하나의 제목이기도 하였다. 그는 아울러 충렬왕이 당 현종의 고사(故事) 재현을 꿈꾼 것을 거론하며⁵¹⁾ 그가 평왕

있었다면 상인 측근들과 중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충렬왕과 호승 간 접촉도 그리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충렬왕의 ‘측근’들은 또 다른 맥락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향후의 작업으로 미루도록 한다.

50) 『高麗史』 卷125 列傳38 姦臣1 金元祥;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3, 22年(1296) 7月

51)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2年(1296) 5月 庚午, 夜宴于香閣, 王見壁上唐玄宗夜宴圖 謂左右曰: “寡人雖君小國其於遊宴安可不及明皇?” 自是夜以繼日奇巧淫伎無所不至.

(平王)으로서 황제가 되기를 꿈꾼 것이라 평가하고, 현종처럼 호악(胡樂)을 포괄할 수 있는 (“합악[合樂]”) 신성 법곡을 제작하고자 한 것이라 보았다.⁵²⁾ 전자는 다소 비약적인 평가이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적실한 평가라 본다. 1280년대 중반의 상황은 이미 1270년대말과는 또 달리, 사회의 안정을 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려사회의 재정비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속악 위주의 ‘보호적’ 음악정책에서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져 당송 아악까지도 포괄하는 ‘제도의 세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280년에는 교방법곡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양을 처벌하긴 했지만, 상황이 서서히 달라지면서 그 건의의 맥락은 일부 수용하게 된 셈으로, 결국 국정목표의 중심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당 현종의 고사에 대한 충렬왕의 찬탄은 1296년에 있었던 것으로, <태평곡>이 충렬왕에게 진상된 지 10여년 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당 현종 고사에 대한 추송이 <태평곡> 제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거나, 양자를 직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태평곡>을 통해 발현된 문제의식이 이후 당 현종 고사에 대한 언급으로도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280년대 중반 김원상의 <태평곡> 제작 및 그에 대한 충렬왕의 수용의 배경을 달리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충렬왕이 1270년대말-1280년대 중반 보인 모습이 고려중기 의종대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종은 잔치와 연회 탐닉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국왕이었고, 그 중에서도 1167년의 행사가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곤 한다.⁵³⁾ 그러나 문제의 이 행사에서 연주된 <헌선도(獻仙桃)>와 <포구락(抛毬樂)> 등은 사실 당악(唐樂)이었다.⁵⁴⁾ 전자의 경우 임금의 장수를 송축하는 노래이면서⁵⁵⁾ 한편으로 요순(堯舜)의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고,⁵⁶⁾ 후자의 경우 아악(雅樂)의 아름다움을 거론하고 있다. 의종대 전반의 경우 유희라고 해 봤자 격구(擊毬)나 수희(水戲), 연등회 정도만 확인될 따름이고, 악곡이 연주되는 대규모 행사들은 사실상 의종대 후반부에 몰려 있으며, 3년여의 준비기간을 둔 이 행사가 사실상 그 시작이었다. 의종의 ‘잡희(雜戲)’ 관람과 ‘중악(衆樂)’ 청취는 이후에도 이어졌다.⁵⁷⁾

도교 초재(醮齋) 및 선풍(仙風) 등에 대한 의종의 관심은 때로는 지나친 경우도 있었지

52) 임주탁, 율논문

53) 『高麗史』 卷18 世家18 毅宗21年(1167) 4月 戊寅, 以河清節幸萬春亭宴幸樞侍臣於延興殿大, 樂署管絃坊爭備綵棚樽花獻仙桃拋毬樂等聲伎之戲. 又泛舟亭南浦沿流上下相與唱和至夜乃罷. 亭在板積窯... 窮奢極麗勞民費財凡三年而成.

54) 『高麗史』 卷71 志25 樂 唐樂 獻仙桃; 拋毬樂

55) 여운필, 2011 『역주 고려사 악지』 월인

56) “원소(元宵)의 좋은 연회(宴會)에 봄 경치를 즐기니, 성대한 행사가 있던 당년 상양궁(上陽宮) 생각이 납니다. 요(堯) 임금이 이마에 기쁨을 띠고 하늘의 북극(北極)을 바라보시고, 순(舜) 임금은 옷으로 깊어 궁전 중앙에 팔장을 끼고 계십니다...”

57) 『高麗史』 卷18 世家18 毅宗21年(1167) 5月 癸丑, 幸長湍縣應德亭舟中結綵棚載女樂‘雜戲’泛江中流凡十九艘皆飾以綵帛...; 丁巳, 自應德亭乘燭燭舟盛張‘衆樂’過皇樂亭置酒夜至普賢院; 22年(1168) 3月 壬午, 住蹕黃州洞仙驛宴于碧波亭又泛舟南溪至夜宴樂. 賜樂工及雜戲人白金三斤.

만,58) 무신의 난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서경(書經)』을 강독하고 불소(佛疏)를 편찬했던 의종의 모습은59) 환락에 빠져 국정을 등한시하는 군주의 그것은 분명 아니었으며, 신료들이 그에게 올린 ‘태평호문지주(太平好文之主)’라는 칭호 또한 아부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60) 그가 마련한 ‘악’과 ‘희’의 공간을 ‘淫樂’과 ‘淫戲’가 횡행하는 공간으로 치부할 것은 아님을 그것이 당시 ‘국자감생들의 가요’까지 함께 어우러지던 공간이었음에서도 엿볼 수 있다.61) 그는 심지어 악장까지 손수 지어 ‘백희(百戲)’와 결합시키기도 하였다.62) 백희는 고려중기 예약 정비에 노력했던 국왕들의 재위기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며, 그 자체로 국제행사, 다국적 행사의 필요조건으로서의 맥락을 띠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63)

충렬왕이 의종의 전례나 관행, 고사를 어느 정도나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며 따르려는 의지를 지녔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 그저 ‘태평’에 대한 관념을 매개로 양자 사이에 희미한 연결성이 관찰될 따름이다. 일찍이 의종이 연주케 했던 당악으로서의 <헌선도(獻仙桃)>가 요순의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이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고려사』에 실려 있는 당악 중 ‘태평’이 등장하는 노래는 단 5곡, <헌선도>를 비롯한 <수연

58) 『高麗史』 卷18 世家18 毅宗16年(1162) 3月 丙寅, 諫官伏閣上疏請罷別宮貢獻不聽. 王酷信陰陽秘祝之說每於行在集僧道數百餘人常設齋醮糜費不貲貯藏虛竭.; 卷19 世家19 毅宗23年(1169) 2月 乙卯, 設三界醮. 時齋醮之費寔繁都祭都齋二庫未支其用. 又立館北奉香泉洞三宮各置員僚徵求諸道轉輸三宮者絡繹於道民皆愁嘆. 內侍劉邦義...又制別貢金銀鍮銅器皿山積(그는 二十七位神, 十一曜, 七十二星, 十六神, 十二宮神, 二十八宿 등 온갖 종류의 도교 관련 초재를 설행하였다); 卷18 世家18 毅宗22年(1168) 3月 戊子, 御觀風殿. 下教曰: “一遵尙仙風. 昔新羅仙風大行. 由是龍天歡悅民物安寧. 故祖宗以來崇尚其風久矣近來兩京八關之會日減舊格遺風漸衰. 自今八關會預擇兩班家產饒足者定爲仙家依行古風致使人天咸悅..”

59) 『高麗史』 卷19 世家19 毅宗24年(1170) 正月 壬子, ...是日御奉元殿講書益稷; 己卯, 王如靈通寺設華嚴會親製佛疏宣示文臣百官表賀.

60) 『高麗史』 卷19 世家19 毅宗24年(1170) 5月 辛亥朔, 宴文臣于和平齋唱和至夜命內侍黃文莊執筆以書. 群臣稱贊聖德謂之太平好文之主.

61) 『高麗史』 卷19 世家19 毅宗24年(1170) 1月 辛巳, 還宮. 命諸王結綵幕於廣化門左右廊. 管絃房大樂署結綵棚陳百戲迎駕皆飾以金銀珠玉錦繡羅綺珊瑚玳瑁奇巧奢麗前古無比. 國子學官率學生獻歌謠. 王駐輦觀樂至三更乃入闕. 承宣金敦中盧永醇林宗植饗王于奉元殿. 王歡甚達曉而罷.

62) 『高麗史』 卷19 世家19 毅宗24年(1170) 5月 庚寅, 御大觀殿受朝賀 仍宴文武常參官以上王親製樂章五首命工歌之. 結綵棚陳百戲至夜乃罷. 賜赴宴官馬各一匹.

63) ‘백희’의 경우 보통 ‘잡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잡희’가 예종대 처음 등장한다면(卷14 世家14 睿宗15年/1120 10月 辛巳, 設八關會, 王觀雜戲, 有國初功臣金樂申崇謙偶像, 王感歎賦詩; 卷17 世家17 毅宗6年/1152 3月 乙卯, 宴于賞春亭, 使伶官交奏雜戲.) ‘백희’는 태조대 잠시 거론된 이후 의종대에 처음 등장하였다(卷17 世家17 毅宗6年/1152 12月 乙亥, 夜王觀百戲于內殿). 예종과 의종 모두 예의상정소(禮儀詳定所) 설치 및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편찬에서 확인되듯이 예제 정비에 노력한 국왕들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를 단순한 유희와 연락의 차원에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의종대의 백희,잡희에 ‘異國人 貢獻之狀’이 구현되었음에서(卷18 世家18 毅宗19年/1165 3月 甲申, 內侍左右番爭獻珍玩. 時右番多紉袴子弟因宦者, 以聖旨多索公私珍玩書畫等物, 又結綵棚載以雜伎作異國人貢獻之狀, 獻青紅蓋二柄駿馬二匹左番, 皆儒士不慣雜戲其所貢獻百不當一) 고려를 중심으로 한 국제성, 또는 다국적이 ‘백희·잡희’의 맥락에 부분적으로 내재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장(壽延長)>, <만년환(萬年歡)>, <안평락(安平樂)>, <한궁춘(漢宮春)> 등이어서,⁶⁴⁾ 의종이 이 중 하나인 <헌선도>를 지정 연주케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종이 1157년 민가들을 허물고 ‘태평정(太平亭)’을 지었으며, 이후에도 그 곳에 자주 거동해 반승(飯僧)을 하거나 관료들과 향연했음이 주목된다.⁶⁵⁾

물론 ‘태평’이라는 관념은 워낙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것이어서, 의종이 그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의종의 그러한 면모를 ‘태평곡’만을 매개로 충렬왕과 연결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의종이 이 태평정에서 한 일이 바로 ‘유상어원화목(遊賞御苑花木)’, 즉 ‘상화(賞花)’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충렬왕이 1290년대 중반 새로이 보이게 되는 관행이 바로 ‘상화연’ 차원의 행사다. 충렬왕이 1290년대 중반 ‘상화’를 매개로 의종의 전례를 따르려 했다면, 1280년대 중반에는 ‘태평’을 매개로 그리 하려 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충렬왕은 1275년 당시 고려 제도의 위격 조정 차원에서 팔관회 체계를 수정하면서 ‘천하’, ‘태평’ 등의 글자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태평 개념만큼은 원제국 중심의 질서를 준수하는 테두리에서 고려도 표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충렬왕의 <태평곡> 수용이 의종대의 노력과 취지에 대한 인지 아래 이뤄진 것이라면, 1285년 8월 ‘선조(先祖)가 망월대(望月臺)에 노는 것’을 꿈꾸었다는 일화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불과 반년전인 2월 연등회에서는 기악(伎樂)을 폐지했던 반면⁶⁶⁾ 이 경우는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망월대에서 음악을 연주케 한 것이 이채로운데,⁶⁷⁾ 1270년대 만큼 팔관회, 연등회 등 ‘전통’의 보호가 그리 급선무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가 잡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일화라 할 것이다. 물론 다음 달인 1285년 9월 ‘일찍이 음률(音律)에 뜻을 두어 온’ 충렬왕이 악공들에게 풍악을 연주케 하자, 제국대장공주가 “음악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면박을 주어 충렬왕을 주저케 한 바도 있었지만,⁶⁸⁾ 이후 김원상의 <태평곡>을 접함으로써 충렬왕도 새삼 자신의 노력을 본격화하지 않았을까 한다. 충렬왕이 김원상의 <태평곡>의 내용에 놀라고 질투했다는 대목이야말로⁶⁹⁾ 충렬왕이 원래 마음에 두고 있던 부분을 김원상이 적실하게 파악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원상의 경우 1279년부터 충렬왕의 음악정책을 보좌해 왔지만, 당시에는 향악(속

64) ‘취태평’, ‘태평년’ 등의 노래도 있으나, 이들의 경우 제목에 태평이 등장할 뿐 곡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65) 『高麗史』 卷18 世家18 毅宗11年(1157) 4月 丙申, ...又毀民家五十餘區作太平亭, 命太子書額旁植名花異果奇麗珍玩之物布列左右; 12年(1158) ?월 己未, 以仁宗忌日飯僧於太平亭. 時王好作佛事繼徒盈溢宮庭枯恃恩寵附託宦官侵擾百姓競造寺塔爲害日甚; 壬申, 幸壽德宮宴幸樞臺閣侍臣于太平亭仍許遊賞御苑花木.

66)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1年(1285) 2月 丁巳

67)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1年(1285) 8月 乙卯

68) 『高麗史』 卷89 列傳2 后妃2 齊國大長公主

69) 『高麗史』 卷125 列傳38 姦臣1 金元祥, ...有妓謫仙來得幸於王, 元祥與內侍朴允材俱爲妓同里閨相往來. 元祥製新調太平曲令妓習, 一日內宴歌之王妬且變色曰: “此非能文者不能誰所爲耶?” 對曰: “妾兄弟元祥允材所製.” 王喜曰: “有才如此不可不用.” 以元祥爲通禮門祇候允材爲權務.

악) 위주의 활동을 보였던 반면, 1280년대 중반에는 충렬왕의 조정된 국정목표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연회에서 <헌선도> 등의 당악을 연주했던 의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속악의 테두리를 벗어나 당악으로서의 <태평곡>을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⁷⁰⁾

이렇듯 1280년대 중반 등장한 <태평곡>은 1270년대말에 비해 달라져 있던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충렬왕의 국정목표가 1270년대말의 그것에 비해 확대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통보호의 절실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충렬왕의 의도가 의종대의 고사와 노력에 주목하게 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태평곡>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의종대의 다양한 초재 실행 및 이국성·다국성의 맥락을 포함한 백희의 성행 등은 충렬왕대에도 그대로 재현되었고, 음악정책 역시 속악에서 그 이상의 음악으로 확대됐는데, ‘음악문화의 계발’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⁷¹⁾

2) 1290년대 중반 ‘상화’ 관행 본격화의 의미

충렬왕 및 김원상의 이러한 의도는 1290년대 중반 활성화된 ‘상화연(賞花宴)’에서 확인되

70) 허남춘이 김원상의 <태평곡> 또한 당악류, 한시 계통의 노래였을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1976, 『고려시대의 소악부』 『한국한문학연구』 1). 김원상의 열전에 따르면 그는 이후 1290년대 후반 (일찍이 <쌍화점>을 함께 제작한) 오잠과 대립하게 되는 바, 애초 오잠이나 석씨 등의 측근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음악적, 학문적 차원에서 충렬왕을 보좌한 신료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적 소양을 인정받은 인물이었던 데다가, 이후 형구(刑具)의 제작도 주도하는 등 대간·형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1270년대말 및 1280년대 중반 각기 다른 맥락에서 충렬왕의 음악정책을 보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71) 다만 이 시기 충렬왕의 의도가 속악에서 완전히 탈피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의종 역시 고려 향악과 일정한 친연성을 보이지 않았을까 추측되기 때문이다. 명종대의 사적을 기록한 사신이 이른바 ‘신사년(辛巳年: 의종15, 1161년)의 악장 정비를 ’맹비난‘한 일이 주목되는데(卷70 志24 樂 雅樂 軒架樂獨奏節度, 明宗十八年二月壬申, 制, 樂工, 逃所隸, 冒居他肆者, 令還本業. 史臣曰, 樂之缺亂, 甚矣, 太常近取旨, 請從聖考代所行之制, 有司遷延, 莫肯施行, 識者恨之, 以謂是樂, 宋朝以新樂, 賜睿廟者也, 本非宋太祖所制之樂, 樂之行不久, 而宋朝亂, 辛巳年, 本朝儒臣, 狂擅改, 而進退其次序, 錯亂其上下, 干威翟, 致有盈縮不等之差, ...), 문종대부터 고려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송 교방악(송방송, 2002 『고려 당악의 음악사학적 조명』 『한국중세사회의 음악문화(고려시대편)』 전통예술원(민속원); 卷8 世家8 文宗11年/1061 6月 丁巳, 以宋進士陳渭爲秘書校書郎; 蕭鼎蕭遷爲閣門承旨; 葉盛爲殿前丞旨. 渭有文藝鼎等三人曉音律)에 대한 존숭, 그리고 예종대 새로 수입된 송 대성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만약 송 대성악이 후대의 ‘아악적 관점’에서 비판받는 맥락의 것이었다면, 예종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의종은 전반적으로 ‘비아악적’ 요소에 대한 지향(송 교방악 대신 송 대성악을 지향하고, 속악도 포기하지 않는)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의종대에는 후대 충렬왕대처럼 (고려) 교방의 역할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려사』 악지의 당악 중 헌선도(梨園弟子, 齊奏新曲)와 壽延長(梨園樂部奏中腔/ 梨園新曲奏中腔), 傾杯樂(會樂府兩籍神仙, 梨園四部絃管), 風入松(梨園弟子) 등에 등장하는 ‘이원’이 (‘고려의) 교방’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견해(김창현, 2002 『고려시대 음악기관에 관한 제도사적 연구』 윗책: ‘樂府兩籍’와 ‘梨園四部’가 각기 ‘양부(대악서+관현방)’과 ‘교방’에 대응)가 제기된 바 있다(‘이원(梨園)’은 당 현종대 (중국)속악’을 익히던 곳[여운필, 윗책]). 그렇다면 의종대 가무 연주 및 진설에서 (고려) 교방의 역할이 상당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교방(또는 ‘교방에서의 고려속악 연주’)을 매개로 의종과 충렬왕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는 바가 있다. 1295년 4월 충렬왕이 상화연을 향각(香閣)에 설치하고 따로 장전(帳殿)을 개설하여 크게 여악(女樂)을 베푼 것이 그 시작이었다. 충렬왕은 다음해에도 상화연을 향각에서 베풀었고, 대학사 정가신(鄭可臣)이 시를 지어 그를 축하하기도 했는데, 충렬왕은 정가신의 이 ‘상화 내연시’에 대해 도점의부(都僉議府)의 낭사(郎舍)와 금내육관(禁內六官), 그리고 학관(學官)들에게 화답을 중용하기도 하였다. 상화연의 관행은 충렬왕이 복위한 1304년과 1305년에도 수녕궁(壽寧宮) 등에서 계속됐으며, 그의 사망 직전인 1308년에도 이어졌다.⁷²⁾ 지극히 일반적인 행위로 보이는 이 ‘상화[연]’의 경우 문종대와 숙종-예종대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 시기의 관련 사례들에서 확인되었듯이 문학활동의 일종(“상화시 창작”)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⁷³⁾ 의종대의 경우 ‘상화’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일찍이 상화 행위의 공간이었던 상춘정은 계속 등장하며 주로 초재와 백희의 장소로 등장한다.⁷⁴⁾ 이후 무신집권기 및 대몽항쟁기에는 일체 확인되지 않다가, 충렬왕대 돌연 다시 등장해 대단히 높은 빈도로 개최되었다. 충선왕 복위연간에는 설행된 바 없다가 충숙왕대에만 한차례 확인된다.⁷⁵⁾

충렬왕은 일찍이 1276년 8월 세자부(世子府) 시학공자(侍學公子) 자격시험을 ‘육운시(六韻詩)’로 치르게 하는 등 이미 전부터 ‘율부(律賦)와 시부(詩賦)’, 즉 사장(詞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⁷⁶⁾ 1280년 9월 원에 입조할 당시에는 원 유학자 송정(宋貞)에게 자신이 지은 “9일시(九日詩)” 2편을 선보인 바도 있었으며,⁷⁷⁾ 그 직전인 1280년 3월 앞서 언급했듯이 두견화의 만개에 사운시(四韻詩) 1편을 짓고 18명의 화답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⁷⁸⁾ 그런데 이러한 빈번한 문학창작 및 독려활동 중에서도, ‘상화’가 테마로 떠오른 것은 적어도 1290년대초까지의 연회에서는 발견되는 바 없다. 그 점에서 ‘상화시’ 관행은 1290년대 중반 새로이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화’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빈번하게 개최된 상화연의 맥락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72)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1年(1295) 4월 甲午, 設賞花宴于香閣, 閣後別開帳殿, 大張女樂, 中郎將文萬壽引水爲戲, 剪青蠟綉作芭蕉王喜賜白金三斤; 22年(1296) 4월 庚戌, 還宮設賞花宴于香閣, 大學士鄭可信製詩以賀; 乙丑, 命都僉議郎舍禁內六官及學官和鄭可信賞花內宴詩, 各賜米二十石; 卷32 世家32 忠烈王30年(1304) 4월 丙戌, 王置酒壽寧宮賞花戊子亦如之; 31年(1305) 4월 丙戌, 設賞花宴于壽寧宮; 34年(1308) 4월 庚戌, 設賞花宴于壽寧宮.

73)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24年(1070) 4월 辛酉, 朔王曲宴于賞春亭令太子諸王侍臣, 各賦賞花詩; 9월 丙申, 王宴于賞春亭, 命近臣賦詩夜分乃罷; 卷11 世家11 肅宗2年(1097) 4월 丙戌, 御賞春亭宣示御製禁亭賞花詩, 令館閣近侍文臣和進親第高下賞綉有差; 4年(1099) 4월 辛巳, 御紗樓召集詞臣賦重光殿玉玫瑰花詩分第, 賜綉有差; 卷13 世家13 睿宗4年(1109) 3월 戊申, 親醮三清於賞春亭; 卷14 世家14 睿宗10年(1115) 4월 癸丑, 召諸王宰樞于賞春亭置酒極歡制詞二闕令左右和進. 兩府宰樞表辭不允.

74) 『高麗史』 卷17 世家17 毅宗6年(1152) 3월 乙卯, 宴于賞春亭使伶官交奏雜戲; 卷18 世家18 毅宗12年(1158) 4월 乙巳, 命平章事崔允儀知門下省事申淑同知樞密院事金永夫 醮于賞春亭禱雨; 卷19 世家19 毅宗24年(1170) 4월 乙巳, 以..平章事許洪材醮于賞春亭.

75) 『高麗史』 卷34 世家34 忠肅王元年(1314) 閏3월 丙寅, 王命義成德泉會設賞花宴, 將以慰公主公主先出坐殿. 王怒有司緩告因不出宰樞入赴終宴.

76)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2年(1276) 8월 庚午

77)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9월 己酉

78)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3월 丙辰

앞서도 언급했듯이 ‘꽃을 감상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의미를 담은 개념으로서,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려사』 악지 당악조의 <화심동(花心動)>에 ‘상화’가 등장해 흥미롭다.⁷⁹⁾ 작자가 여성(완일녀[阮逸女])으로 추정되며 내용도 사랑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려사』에 실려 있는 당악곡 중 ‘상화’가 등장하는 노래는 ‘화심동’이 유일하다.

아직 근거는 부족하지만, ‘상화’에 대한 충렬왕의 높은 관심과 관련 행위(상화시 창작, 상화연 개최)가 ‘당악’과 무관치는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1280년대 후반 나타나기 시작한다. 1286년 <태평곡>이 충렬왕에게 바쳐진 이후, 1288년 4월 충렬왕이 전리사(典理司)와 국학의 관료였던 민지(閔漬)와 조간(趙簡) 등에게 “신곡(新曲)”을 제작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안향이 그 때 함께 시를 지어 바친 것으로 전한다.⁸⁰⁾ 민지의 경우 이후 충렬왕에게 ‘상화시’를 진상하게 될 정가신과 함께 충선왕의 측근이었던 인물로서, 원제국 강남지역에서 원 관료들과 교류하고 원 문산계를 수령한 바 있으며, 쿠빌라이의 여러 자문에 적극 응하는 등 주요 활동무대가 원제국이었던 인물이다. 또 안향은 주지하다시피 당시 성리학의 도입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들이 충렬왕의 음악정책을 보좌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미 1280년대 중반 ‘향악에서 당악으로’ 이동하고 있던 음악정책의 기조가 더욱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렬왕이 1296년 5월 (상화연의 공간이었던) 향각(香閣)에서 밤에 잔치를 벌일 당시 벽상(壁上)의 “당현종야연도(唐玄宗夜宴圖)”를 보고는 주위에 이르기를 “과인이 비록 작은 나라의 임금이지만 그 유연(遊宴)에 있어서는 어찌 가히 명황(明皇)에 미치지 못하겠는가.”라며 밤까지 ‘기교음기(奇巧淫伎)’를 즐겼다는 일화 역시, 충렬왕에게는 ‘상화’가 ‘당악’과 무관하지 않은 개념이었음을 엿보게 한다.⁸¹⁾

충렬왕대 전, 중반기 활발하던 초재의 설행 역시 1295년을 끝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상화연’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묘하게 엇갈리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당시 원에서도 도교활동이 위축되고 있었으며,⁸²⁾ 원 도교행사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거론된 ‘수녕궁’과 동일한 명칭을 지닌 (고려) ‘수녕궁’의 존재가 예종대 잠시 등장한 이래 충렬왕대에 접어들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⁸³⁾ 원 도교행사의 감소와 고려 초재의 감소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고, ‘원측 도교행사의 마지막 개최 공간’이 고려에서는 ‘새로이

79) 『高麗史』 卷71 志25 樂2 唐樂 花心動. 관련 서적에서 이 <화심동>의 작자로 알려진 완일(阮逸)은 송 인종(仁宗) 당시 전악관(典樂官)을 지낸 음악대가(音樂大家)로 전해지고 있다.

80)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4年(1288) 4月 戊寅, 宮花盛開宴群臣于香閣酒酣, 王命典理正郎閔漬國學直講趙簡製新曲左副承旨安珣亦製詩以進.

81)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2年(1296) 5月 庚午

82) 『元史』 卷17 本紀17 世祖 至元30年(1293) 4月 甲寅(江南에서 諸道觀의 聖祖天尊祠를 허물); 卷18 本紀18 成宗 至元31年(1294) 5月 壬子([1281년 이후] 처음으로 醮祠를 壽寧宮에서 개최); 成宗 元貞元年(1295) 2月 癸卯(1320년 이전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도교제사).

83)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5年(1289) 3월 庚寅, 元阿古大以眞珠衣二領來獻公主張舜龍所買也. 王與公主宴阿古大於壽寧宮

등장한 상화연의 주요무대'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원과 고려 양쪽에서 진행되던 변화가 서로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쪽의 지향이 공히 당악(고려) 또는 아악(원)을 중시하는 맥락을 점점 더 강하게 띠어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1280년대 중반 들어 종전의 국정목표(사회통합 및 안정) 대신 '태평 추구'의 맥락을 지닌 새로운 목표가 추구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 시기 들어 세련된 국정을 통한 가치 실현이 더욱 시의적인 목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시기 '요순의 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언급이 등장함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가 있다. 1287년 5월 임정기(林貞杞)라는 인물이 율부(律賦)의 제(題)를 남에 있어 "(당[唐]) 태종(太宗)이 요순(堯舜)의 도(道)를 좋아하기를 고기가 물을 의지해 잠시라도 그에서 떨어질 수 없어 하듯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순의 도를 끊임없이 좋아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제를 냈음이 주목된다.⁸⁴⁾ 물론 이 문제는 이후 기술적인 오류가 드러나 힐난과 망신의 대상이 됐지만, 당시 고려정부의 국정이 당 태종 고사 등이 상징하고 있던 이른바 '요순의 성스러운 정치'를 고려사회 내에 확산시키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이 일화는 잘 보여준다. 결국 1280년대 중반 '태평'의 가치가 처음으로 거론된 이래, 태평시대의 전형이었던 "요순시대"의 "성정(聖政)"이 고려정부의 지향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와중에 기존의 '속악 지향'을 대신해 '당악 추구'가 새로운 대세로 정착해 가고 있었음을, '태평곡'과 '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1290년대 후반의 <쌍연곡>과 14세기초의 상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렬왕의 음악정책은 1270년대말 이후 12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됐지만,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300년 6월 또 하나의 변동이 관찰되는데, 충렬왕이 원제국에 들어가 부두연(扶頭宴)을 베풀 당시 황제가 "고려가(高麗歌)"를 부르라고 하자, 충렬왕이 송방영(宋邦英) 등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는 '쌍연곡(雙燕曲)'의 존재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⁸⁵⁾ 이 노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14세기초에 처음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290년대 후반의 상황은 사실 충렬왕에게 대단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새 황제 성종(成宗)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1295년 5월 충렬왕이 원제국정부에 제기한 몇 가지 요구사항, 예컨대 세자와 원 공주의 혼인이라든가, 충렬왕 본인에게 태사 중서령(太師 中書令)의 작호를 더하는 것, 그리고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에게 인장(印章)을 내리는 것 등 충렬왕의 여러 요청을 성종이 대부분 거부했음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⁸⁶⁾

84) 『高麗史』 卷74 志28 選舉 科目 國子試試員, 忠烈王13年(1287) 5月

85)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6年(1300) 6月 己巳, 又詣闕設扶頭宴帝命唱高麗歌, 王令大將軍宋邦英 宋英等歌雙燕曲, 前王執檀板王起舞獻壽帝與后悅.

86)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1年(1295) 5月 丁亥

그리고 1295년 5월부터는 세자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원제국정부가 8월 세자 충선왕을 ‘의동삼사(儀同三司) 상주국(上柱國) 고려국왕세자(高麗國王世子)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使事)’로 책봉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⁸⁷⁾ 동년 9월에는 세자가 도첨의사에서 일을 처리하며 판중군사(判中軍事)를 겸하였으며, 관료 임명에 개입하는 동시에 권세가들의 전민 검병까지 처벌하는 등 국정 전반에 나서게 된다.⁸⁸⁾ 1295년 12월 여항(閔巷)의 나(儼)를 금한 것도 충선왕의 조치였던 듯하고,⁸⁹⁾ 1296년 11월에는 충선왕이 원 공주와 혼인했으며,⁹⁰⁾ 1297년 5월에는 충렬왕비 원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함으로써 충렬왕의 정치적 후원자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물론 1298년 충선왕이 8개월간 즉위해 과격한 개혁을 수행하다가 퇴위당하고 이후 충렬왕이 복위하긴 했지만, 1298년 9월에는 원 관료들이 고려에 와 국정을 함께 살피게 되었고,⁹¹⁾ 더 나아가 정동행성에 평장정사(平章政事)가 처음 임용되는 등(활리길사[闕里吉思]), 충렬왕의 권위는 이미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이었다. 1299년 1월 충렬왕세력과 충선왕세력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자⁹²⁾ 이후 충렬왕이 충선왕비의 재혼을 주선하는 등 공세에 나섰지만,⁹³⁾ 1303년 관료들이 충렬왕을 겨냥해 일으킨 일종의 항명사태로 인해 충렬왕의 측근들이 원제국에 의해 대거 숙청되면서,⁹⁴⁾ 결국 충렬왕은 실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쌍연곡>의 테마와 맥락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도 역시 임주탁이 주목한 바 있다.⁹⁵⁾ 일찍이 세자 충선왕이 서원후(西原侯)에게 향연을 베푸는 자리에서(1289년경 추정⁹⁶⁾), 동석자 김광좌(金光佐)가 ‘서리(黍離)’(주나라의 쇠락에 대한 노래)와 ‘백주(柏舟)’를 노래하는 중간에 쌍연곡(雙燕曲)을 노래하고, 민지(閔漬)는 (『시경』의) ‘하피농의(何彼穠矣)’(주나라의 전성기에 대한 노래)로써 이를 보조(補助)한 바 있는데,⁹⁷⁾ 임주탁은 김광좌가 “일찍이 삼국을 통일하고 천자국의 위상을 누리다가 훗날 쇠망하게 된” 고려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라 보고, 그 점을 당시 고려의 현안들과 연결시켜 볼 경우 <쌍연곡>을 부른 맥락은 “잃어버린 고려 강역의 수복을 염원”하는 데 있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마침 <쌍연곡>의 등장 시점을 전후하여 원제국으로 들어갔던 고려지역의 일부 반환이 이뤄지고 있어,⁹⁸⁾ 임주탁의 가설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녕부(東寧府) 반환의 경우 고

87)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朝 [忠烈王21年(1295) 8月 戊午]

88)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1年(1295) 9月 壬辰, 乙未, 丁丑

89)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忠烈王21年(1295) 12月

90)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2年(1296) 11月 壬辰

91)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5年(1299) 10月 甲子

92) 『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5年(1299) 1月 丁酉; 戊申; 2月 戊午

93) 『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27年(1301) 5月 庚戌; 29年(1303) 9月 庚午

94) 『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29年(1303) 7月 辛巳; 8月 丙戌; 乙巳

95) 임주탁, 잊은문

96)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5年(1289) 2月 壬子, 世子冠以西原侯瑛之女爲世子妃.

97) 『高麗史』 卷105 列傳18 趙仁規, 瑞...忠宣爲世子時宴西原侯, 瑞與金光佐車元年皆以善歌與焉光佐以黍離柏舟間歌雙燕曲, 閔漬以何彼穠矣補之, 自是內殿有宴必歌此曲.

98)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6年(1290) 3月 丁卯, 帝詔罷東寧府復歸我西北諸城. 王拜其摠管韓愼柱文庇爲大將軍玄元烈爲大僕尹羅公彥李翰爲將軍; 卷58 志12 地理3, 東界 安邊都護府登州, 忠烈王24年

려정부의 고토(故土) 수복 노력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이른바 ‘동방(東方) 3왕가’ 계열 나안(乃顔), 카다안(哈丹)의 난이 발생하면서 원제국정부가 동녕부 유지의 전략적 득실을 검토한 결과 고려에 돌려준 것이었다. 임주탁은 또 주나라의 전성기에 관한 민지의 노래(“하피농의”)는 ‘고려의 전성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았지만, 일찍이 정가신과 함께 교지(交趾) 정벌에 대한 쿠빌라이의 자문 요청에 응한 바 있었던 민지의 경우⁹⁹⁾ 원제국의 외연 확장 과정을 지켜보며 그것이 하나의 세계제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부른 “하피농의”는 원제국을 염두에 두고 선곡(選曲)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서리’와 ‘하피농의’ 사이에 노래된 <쌍연곡>을 “고토회복에 대한 염원”에서 불린 노래로 보기는 어렵게 된다. 오히려 대제국이 된 원제국과 공존하게 된 고려가,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의 위상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그렇게 보는 것이 충선왕의 성향에 더 맞는 일이기도 하다).¹⁰⁰⁾ 즉 <쌍연곡>은 고려가 원제국에 맞서 뭘가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핵심 정서였던 <쌍화점> 단계의 시기나, 성장해 가는 원제국에 보조를 맞춰 고려 또한 ‘향악’을 넘어 ‘당악’ 정비로 나아가야 했던 <태평곡> 단계의 시기를 넘어, 대원제국과의 관계가 정형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지·인정하게 된 시기의 노래였다고 하겠으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노래였다고 할 수 있겠다.¹⁰¹⁾

실제로 이 시기의 여러 정황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14세기초를 전후하여 원제국 세조(世祖, 쿠빌라이)의 성훈(聖訓)과 성헌(成憲)에 대한 고려인들의 준수 의식이 강화되었고,¹⁰²⁾ “상국(원)”의 체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¹⁰³⁾ 1288년만 해도 관찰되는 잡희 등은¹⁰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으며, 교육기관의 가요 진상 행사에도 더 이상 포함되지 않게 된다.¹⁰⁵⁾ 무엇보다도 1301년 이른바 ‘무도·경필’이 폐지되는데,¹⁰⁶⁾ 이는 의종대 ‘상정예문’ 상

(1298) 各還本城

99) 『高麗史』 卷107 列傳20 閔漬

100) 충렬왕이 1296년 충선왕의 혼인 관계로 입조했을 당시 원제국정부의 연회에 본국 악관들을 참석시켜 <감황은조>라는 당악곡을 노래케 한 사실 또한(『高麗史』 卷31 世家31 忠烈王22年/1296 11月 壬辰, 王與公主詣闕世子以白馬納幣于帝尙晉王之女. 是日宴皆用本國油蜜果. 諸王公主及諸大臣皆侍宴至晚酒酣令本國樂官奏感皇恩之調. 既罷王與公主詣隆福宮太后設氈帳置酒入夜乃罷) 1300년 불린 <쌍연곡>의 맥락을 보여주는 바가 있다.

101) 실제로 <쌍연곡>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명준이 <대동운부군옥> 권6에 기록된 ‘원문’을 소개한 바 있다(“강남과 강북의 풀이 비단 같으니, 봄 제비 쌍으로 날아 옥 난간에 이르네. 향기로운 진흙 가져다 새로 보루를 쌓지 마라. 발 너머 성긴 비에 살구꽃이 차구나.”[江南江北草女純, 春燕雙飛到玉欄, 休把香泥新築壘, 一簾疎雨杏花寒]; 김명준, 2008 『고려속요집성(개정판)』 도서출판 다운샘), 원문을 보면 협상 또는 요청의 맥락에서 지어지거나 불린 노래라 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102) 이강한, 2007 「정동행성관 활리길사의 고려제도 개편 시도」 『한국사연구』 139

103) 『高麗史』 卷72 志26 輿服 輿輅 命婦車, 忠烈王二十九年五月, 依上國例, 定諸王宰樞承旨班主夫人, 乘朱漆車, 三四品夫人, 黑漆車, 事竟不行.

104)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14年(1288) 1月 癸卯, 王及公主幸妙蓮寺宦者將軍崔世延金義光等設彩棚張雜戲; 壬子, 王以世子生日宴群臣上將軍鄭仁卿爲侏儒戲將軍簡弘爲倡優戲王亦拍手起舞.

105) 『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30年(1304) 6月 丙戌, 王詣國學忽憐林元從之. 七管諸生具冠服迎謁於道獻詞謠. 王入大成殿謁聖命密直使李混作入學頌林元作愛日箴以示諸生.

의 중요 요소 2개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의종대 정책기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14세기초의 상황이 전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01년 1월 황제의 건강을 위한 축리(祝釐)의 예가 시작된 것 또한 고려와 원제국의 관계에 새로운 맥락이 더해졌음을 의미한다.¹⁰⁷⁾ 원제국은 이후 1305년 교사례(郊祀禮) 및 원구단(圜丘壇)에 쓸 악장을 정비하고¹⁰⁸⁾ 제사에서는 ‘호천(昊天)’ 개념을 도입하는 등¹⁰⁹⁾ 명실상부한 세계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1301년의 조치가 그를 예고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270년대말 <쌍화점>을 통해 구현되던 문제의식이나, 1280년대 <태평곡> 시대 이래 ‘상화연’ 등을 매개로 표출되던 문제의식은 당연히 시의(時宜)를 잃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렬왕의 뒤를 이어 복위한 충선왕은 이렇게 13세기후반과는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다. 일찍이 송인(宋人)의 연기를 관람하라는 부왕 충렬왕의 권유를 거부한 것에서도 보이듯이¹¹⁰⁾ 충선왕은 충렬왕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소유자였다. 그는 충렬왕과는 달리 대간의 간언들을 적극 수용하는 등 ‘형정’을 중요시하는 면모를 보였고,¹¹¹⁾ ‘친초삼계(親醮三界)’는 물론 팔관회나 연등회 제사도 빈번하게 정지하는 등¹¹²⁾ 고려의 통상적 전례 관행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명왕 대신 도선(道詵)을 추송하는 등 과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다.¹¹³⁾ ‘백희’를 폐기함으로써 <쌍화점>, <태평곡> 단계의 정책기조를 확실히 폐기하였고,¹¹⁴⁾ 성균관(成均館)에 악정(樂正)을 둬으로써 유교적 아악정책 기조를 채택, 종래의 ‘당악 추구’ 노선을 대체해 갔다.¹¹⁵⁾

106) 『高麗史』 卷72 志26 輿服 儀衛 法駕衛仗, 忠烈王27年(1301) 5月, 黃傘 僭擬上國, 以紅傘代之, 遂除舞蹈警蹕之禮.

107) 『高麗史』 卷32 世家32 忠烈王27年(1301) 1月 丙辰

108) 『元史』 卷68 志19 禮樂2 制樂始末, 成宗 大德9年(1305), 新建郊壇既成, 命大樂署編運曲譜舞節, 翰林撰樂章. 11月 28日, 祀圜丘用之; 卷21 本紀21 成宗 大德9年(1305) 2月 庚子(中書省에 命하여 郊祀禮를 행하는 것을 의논하게 함); 辛亥; 卷23 本紀23 武宗 至大2年(1309) 11月 乙酉

109) 『元史』 卷20 本紀20 成宗 大德6年(1302) 3月 甲寅(昊天上帝와 皇地祇를 南郊에서 함께 제사지내고.); 卷21 本紀21 成宗 大德9年(1305) 4月 壬辰(中書省의 신하가 말하기를.. 「前代의 郊祀는 祖宗으로 配享했습니다. 신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비로소 郊禮를 행하니 오직 昊天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의논한 바에 의거하여 행할 것을 詔); 6月 丙子(皇太子를 세우는 일을 中書右丞相 答剌罕 哈剌哈孫으로 하여금 昊天上帝에 告하게 하고, 御史大夫 鐵古迭으로 하여금 太廟에 고하게 함); 庚午(昊天上帝에게 南郊에서 제사를 지냄); 卷23 本紀23 武宗 至大3年(1310) 11月 丙申(南郊에서 제사를 지내고 太祖皇帝를 높여 昊天上帝에 배향)

110) 『高麗史』 卷33 世家33 (忠烈王)14年(1288) 8月, 以聖節宴于大殿宋人作戲. 忠烈召王觀之王辭不入時王年十四嘗踞內僚元奕膝上從容相語奕謂王曰: “人主不宜聽察殿下聰明大過宜小寬容.” 王作色曰: “汝輩使我癡暗持弄掌上如軟餅乎?” 奕懼.

111)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復位年(1308) 4月 丙寅, 王命詞臣許有全趙簡及致仕金孝巨崔瑒直言時事, 凡有愆違即疏以聞.

112)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復位年(1308) 11月 甲子, 命停八關會; 卷34 世家34 忠宣王復位3年(1311) 11月 辛亥, 停八關會; 復位5年(1313) 2月 甲戌, 停燃燈會.

113) 『高麗史』 卷33 世家33 忠宣王復位年(1308) 11月 辛未

114)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忠宣王(復位)2年(1310), 傳旨: “迎駕山臺已有禁令毋復爲之. 公私宴油蜜果絲花並皆禁之違者痛治.”

115) 『高麗史』 卷76 志30 百官1 成均館, (忠烈王)34年(1308), 忠宣改成均館刪定員吏置: 祭酒一人從三品;

5. 맺음말

이상에서 충렬왕대의 ‘음악’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국왕이었던 그가 개인적으로 겪었을 고통과 불안, 그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고 또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가다듬었을 그만의 문제의식, 그리고 고려와 원제국의 관계상 위정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시의적으로 가장 시급했을 국정상의 목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쌍화점>으로 대변되는 1270년 대말의 시대상황과 과제, <태평곡>과 “상화” 관행에서 드러나는 1280~90년대 충렬왕과 신료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쌍연곡>에서 드러나는 13세기말-14세기초의 상황 등을 시간 순으로 검토하였다.

충렬왕대를 원제국과의 관계가 시작되던 혼선기, 전란의 종식 및 외교관계가 형성되는 안정기, 그리고 대원제국 질서의 구축 및 그 일부로서의 고려의 위상이 정립되는 시기 등으로 거칠게 나누어 본다면, 충렬왕대의 음악정책은 각각의 시기에 전통의 수호, 국정의 세련화, 그리고 외교관계의 정립 등에 기여한 것 같다. 고려인들의 정서의 변화, 그리고 대원관계의 정형화 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법제 외의) ‘음악’이라는 영역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필자의 음악 및 전례에 대한 이해가 짧아 각종 오독과 오해, 그리고 부적절한 의미부여가 노출된 부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각종 악곡, 악장 및 문학작품들의 연원에 대한 검토도 거의 진행하지 못해 심층 분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아울러 충숙왕대와 공민왕대, 그리고 우왕대의 음악정책에서도 흥미로운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는데,¹¹⁶⁾ 본고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후일을 기약하도록 한다.

樂正一人從四品...한편 전악서의 경우 그 수장은 종래의 종7품에서 정7품으로 올리되 새로 설치한 자운방에 편입시켰다(卷77 志31 百官2 典樂署, 忠烈王34年/1308, 忠宣改爲典樂署屬紫雲坊改定員吏置...). 유사한 시기 원에서는 太子位承和署를 고쳐 典樂司로 삼고 秩을 正3품으로 했다(『元史』卷22 本紀22 武宗 至大元年/1308 6月 甲午).

116) 고려와 원제국의 관계가 다시금 불안정해지는 충숙왕대에는 가요에 악과 희가 재등장하고(『高麗史』卷34 世家34 忠肅王即位年/1313 6月 丙子, 入京都, 張樂雜戲, 七館十二徒東西學諸生獻歌謠上王命止之以待公主二王遂入泥岷延德宮), 구요당 및 일반초제가 재개되며, 충렬왕에 이어 당 현종이 재거론된다(卷34 世家34 忠肅王5年/1318 正月 丙寅, 王及公主宴于延慶宮還宮王於馬上記姚安道所賦玄宗打毬圖詩: “金殿千門白晝開三郎沈醉打毬回九齡已老韓休死明日應無諫疏來!” 沈吟久之. 翌日夜贊成事崔誠之享王. 王召權漢功尹莘傑等賦詩權甚又久吟打毬圖詩). 아울러 충숙왕-공민왕 시기에 다수의 속악이 채집되게 되며, 우왕대에는 호악(胡樂)과 호무(胡舞)가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강한, 충렬왕의 시대인식과 음악정책〉에 대한 토론문

윤은숙

본 논문은 충렬왕시대의 대표적인 음악이었던 <雙花店>, <太平曲>, <雙燕曲>을 기존의 문화사적 관점이 아니라 통치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국문학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해석 차원을 넘어 왕조적 특히 고려·원이라는 관계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자가 고려 충렬왕대 음악정책이나 시대정신에 무지한 관계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음악이 시대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면서, 충렬왕 시기는 대원제국의 일원적 지배질서 속에 고려가 안착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고, 음악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면 쌍화점의 경우 이것을 어떤 방식에서 이해해야 할 수 있을지요? 혹 쌍화점의 외래적 요소를 강화한다면(김명준, 2006) 충렬왕은 쌍화점을 통해 고려의 다원성 내지 고려인들에게 세계성의 필요를 강조하려 했던 요소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쌍화점이 대중에게 남녀상열을 각인시켜 대중 파급력을 강화하려 했고, 충렬왕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대중을 교화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雙花店이 雙花를 팔던 상점이라면 雙花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래 『大典條例』 ‘霜花’의 만두로 보는 견해와 몽골어로 삼(Sam)이 빗을 의미하므로 빗이나 머리 장신구를 팔던 상점이라는 주장(이개석, 2010)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쌍연곡 등장 배경을 두고 선생님께서 ‘충렬왕과 충선왕은 전혀 다른 성향의 소유자’라고 평하셨는데 저도 이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의 생각은 대원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는 부자간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p.16에서 ‘동녕부 유지의 전략적 득실’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구체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충렬왕에서 충선왕에 이르는 시기까지 음악정책의 변화를 쌍화-태평-쌍연의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주셨는데 태평과 쌍연의 경우 원의 정책에 동화 내지 고려 위상의 재조정이라는 선생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쌍화의 단계가 ‘원제국에 맞서 무언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핵심정서’라는 언급은 언뜻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언급하셨듯이 충렬왕 스스로가 변발과 호복 착용에 적극적이었고, 원종의 경우를 통해서 원의 존재가 고려왕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막대했던 시기에 ‘고려의 독자성(?)의 요소를 강화하려했던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몽골 복속기 고려의 ‘기억 만들기’와 양국관계 — ‘복속’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고명수

1. 서론
2.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복속’ 인식
3. ‘복속’ 인식의 불일치와 양국전쟁
4. 쿠빌라이 시기 ‘복속’ 인식의 동요와 정착
5. ‘복속’에 관한 고려의 ‘기억 만들기’와 수용
6. 결론

1. 서론

13세기 초 탄생한 몽골제국이 유라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정복전쟁에서 고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231년 개시된 몽골의 침략이 30여 년 간 단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려는 많은 인명을 잃고, 토지 대부분이 황폐화되는 큰 시련을 겪었다. 결국 1260년 저항할 여력이 남지 않은 고려가 몽골에 복속하여 이후 100여 년 간 강한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시대 고려가 몽골의 속국으로 전락하여 일방적인 간섭과 수탈만을 당한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고려국왕은 대대로 몽골황실과 통혼하여 駙馬에 봉해지고, 본토에 설치된 행정(征東行省)의 승상에 임명되어 몽골의 세계질서 안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을 보유하고 왕위를 누리는 것은 오직 三韓뿐이다”라고 한 카이산 카안(武宗)의 발언이 말해주듯이 몽골 지배층 사이에서 공히 인정되었다.¹⁾ 이러한 고려국왕 위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양국관계는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종래 연구가 대체로 국내 고려사 전공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논의의 초점이 ‘대몽항쟁’이나 ‘몽골의 간섭·수탈과 고려의 대응’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복속국 고려의 입장에서 몽골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구조와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관점으로 고려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작업 역시 충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거시적인 몽골의 대외정책 틀 안에서 양국관계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高麗史』 卷33 忠宣王2년 7월 乙未.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복속’에 관한 몽골 지배층의 전통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 양국관계의 흐름에 주목하고자 한다. 몽골시대 대외관계 관련 기록에는 ‘복속’에 관한 용어와 기사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²⁾ 이는 그 시기 몽골 지배층의 세계관 안에서 주변국의 ‘복속’이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물론 몽골시대 이전 중국적 조공책봉체제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에서도 ‘복속’ 개념은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은 책봉을 받은 주변국 군주가 조공의 대상인 중국황제의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독자성을 보장받고, ‘황제의 은혜’ 명목으로 많은 경제·문화적 이득을 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달리 몽골 지배층은 ‘복속’을 대상국에게 정치적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 주종관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인식과 판단에 입각하여 그들과 맺는 외교관계의 형태를 설정했다. 따라서 ‘복속’에 관한 몽골 지배층의 인식은 그 시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양태와 성격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몽골 지배층의 ‘복속’ 인식과 대외정책의 특성에 관해 乙坂智子が 선구적 업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녀는 몽골과 주변국 간 실제적 복속관계가 중국적 조공책봉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몽골이 복속국으로 하여금 六事를 이행케 하여 수립한 특유의 외교관계 형태를 內附體制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후속연구를 통해 고려와 티베트를 그에 부합하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³⁾ 아울러 森平雅彦은 몽골의 세계질서 안에서 고려국왕이 부마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정을 탐색한 논고에서 고려가 가장 먼저 몽골에 ‘복속’했다는(率先歸服) 후대의 인식이 통혼의 이유로 윤색되었음을 밝혔다.⁴⁾ 이들 연구는 참신한 관점으로 고려의 ‘복속’에 관한 몽골 지배층의 인식과 양국관계의 성격을 고찰한 탁월한 업적임에 틀림없지만, 몽골의 ‘복속’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따른 양국관계의 전말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안에서 고려의 능동적 외교활동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고려복속’에 관한 몽골 지배층의 인식과 그것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국관계의 역동적 변화상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복속’에 관한 몽골 지배층의 전통적 인식을 확인하고, 이어 13-14세기 ‘고려복속’에 관한 몽골의 인식 변화 속에서 양국관계의 흐름을 짚어보며, 쿠빌라이 사후 고려가 ‘복속’에 관한 새로운 기억을 생산하여 그것을 몽골 지배층·지식인에게 주입하고, 몽골과 교섭할 때 고려의 입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교활동의 모습을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몽골 지배층의 ‘복속’ 인식과 그것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고, 몽골에 대한 외교활동에서 발휘

2) 몽골시대 ‘복속’은 사료에서 內附, 內屬, 內嚮, 內降, 來附, 來降, 歸附, 降附, 臣服, 臣附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본고에서는 이 용어들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복속’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려 한다.

3) 乙坂智子, 「元代『內附』序論-元朝の對外政策をめぐる課題と方法」, 『史境』 34, 1997; 乙坂智子, 「元朝の對外政策-高麗·チベット君長への處遇に見る『內附』体制」, 『史境』 38·39, 1999.

4) 森平雅彦, 「駙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1998, 2~9쪽.

된 고려의 능동적·주체적 역할과 성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복속’ 인식

13세기 초 몽골제국 성립 시기 몽골 지배층은 이미 칭기스칸이 천명을 받은 유일한 군주로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주변국의 완전한 복속을 요구하고, 대외정복의 주요한 명분으로 표방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제국성립 후 단행한 金國과 호레즘 정벌에서 칭기스칸이 침공의 이유를 과거 알탄칸(금 황제)이 무고한 자신의 조상들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복수’와⁵⁾ 일전에 호레즘에 파견한 사신·상인 일행을 오토라르 지방관 이날축이 몰살한 행위에 대한 ‘응징’에서 찾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⁶⁾

그러나 중앙아시아 정벌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몽골인은 자신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정복전쟁의 주된 명분으로 삼는 단계로 발전시켰다. 1221년 칭기스칸이 니샤푸르 대인들에게 항복을 종용하면서 전한 다음 칙령에서 처음으로 그 이념이 정복전쟁의 유일한 이유로 표방되었다.

아미르들과 대인들과 많은 백성들은 위대한 신께서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지상의 모든 곳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알라! 누구라도 복속하면 그 자신과 처자식들과 권속들에게는 자비가 있을 것이나, 누구라도 복속하지 않고 적대와 저항을 앞세운다면 그는 처자식들과 권속들과 함께 파멸하고 말 것이다.⁷⁾

이처럼 칭기스칸 시기 형성된 몽골인의 세계관은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계승되었다. 1245년 로마 교황청의 명을 받아 몽골에 파견된 수도사 카르피니가 귀환 후 저술한 여행기에서 당시 몽골인들이 세계정복의 야망을 품고 서유럽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그들만이 몽골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몽골의 세계관이 이방인인 자신이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몽골인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음을 증언했다.⁸⁾ 몽골의 3대 카안 구육도 그를 통해 로마교황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오로지 ‘모든 지상을 지배하라’는 천명에 근거하여 서유럽 기독교 세계의 완전한 복속을 요구했다.⁹⁾ 1254년 4대 카안 몽케는 수도사 루브록을 통해 프랑스 국왕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몽골이 주변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전쟁’과 ‘평화’로 양분하고, 몽골에 복속하는 것만이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¹⁰⁾ 과거

5)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칭기스칸기』, 사계절, 2003, 433쪽.

6) 『칭기스칸기』, 312쪽.

7) 『칭기스칸기』, 349쪽.

8)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pp. 43~44.

9) Igor de Rachewiltz, *Papal Envoys to the Great Kha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1, pp. 213~214.

10)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His Journey to the court of the Great*

교황청에서 파견된 사제단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몽골 장군 바이주를 통해 전달받은 구육의 서한에도 “그대는 스스로 와서 조근할지 여부 즉, 우리와 우호할 것인지 적대할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하여 사신을 보내 보고하라”라는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다.¹¹⁾ 이는 그 시기 몽골인의 대외인식 속에 오직 전쟁과 복속(평화)만 있고, 대등한 입장의 화평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5대 카안 쿠빌라이가 남송병합 후 日本·安南·瑠求에 복속을 요구하면서 보낸 다음 서한에도 변함없이 반영되었다.

우리 祖宗은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區夏를 모두 차지하여 먼 異域에서 위엄을 두려워하고, 은덕을 생각하는 자가 모두 셀 수 없을 정도이다. (……) 聖人이 四海를 一家로 만드는 데 서로 通好하지 않으면 어찌 一家의 도리이겠는가. 전쟁에 이르는 것을 대체 누가 좋아하겠는가.¹²⁾

祖宗이 법을 세운 이후 무릇 여러 나라들이 귀부하여, 친히 내조한 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편안하게 하였고, 항거하고 복종하지 않은 자는 진멸하지 않음이 없었다.¹³⁾

짐이 생각건대, 祖宗이 법을 세운 이후 무릇 미처 내부하지 않은 나라에 먼저 사신을 보내 초유하여, 내조하면 즉 예전과 같이 편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반드시 정벌하여 토벌시켰다.¹⁴⁾

물론 이 같은 이분법적·자기중심적 세계관이 몽골만의 독특한 인식체계는 아니다. 주지하듯이 전통시대 중국의 여러 왕조는 고유의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세계를 華와 夷로 양분하고, 주변국과 형식적 군신관계를 맺어 중국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 질서를 수립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북방유목국가로 대표되는 주변의 강력한 정치세력을 실제로 복속시킬 만한 정치·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조공책봉 관계는 조공국이 중국황제의 명목적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을 보장받고, 중국황제의 하사품 명목으로 일정량의 물자를 받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그러한 국제질서 안에서 중국황제가 조공국 군주에게 親朝를 요구하거나 관철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몽골인은 그들의 전통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복속’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주변국 군주의 친조를 가장 확실한 복속의 표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몽골 지배층은 일찍부터 주변국과 접촉할 때 군주의 친조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국성립 직후 칭기스칸은 당시 카라키타이에 복속해 있던 위구르 군주 이두쿠트와 카를룩 군주 아르슬란에게 친조를 요구해 관철시켰고,¹⁵⁾ 구육도 수차례 로마교황에게 서한을 보내 서유럽 기

Khan Möngke 1253~1255, The Hakluyt Society, 1990, pp. 248~250.

11) 馮承鈞 譯, 『多桑蒙古史』(上), 上海書店出版社, 2001, 242쪽.

12) 『元史』卷208 列傳95 外夷1 日本, 4625~4626쪽.

13) 『安南志略』卷2 大元詔制 至元二十八年諭世子陳詔.

14) 『元史』卷210 列傳97 外夷3 瑠求, 4667쪽.

15) 『칭기스칸기』, 251쪽; 라시드 왓 딘 지음, 김호동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247~248쪽;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사계절, 2004, 235쪽.

독교세계의 국왕들과 함께 친조할 것을 명했다. 쿠빌라이 역시 동남아·인도양의 여러 나라(南海諸國)를 초유할 때 국왕의 친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구실로 삼아 대규모 정벌을 단행했다.¹⁶⁾

그리고 몽골은 주변국 군주로 하여금 친조를 이행케 하여 복속관계를 맺을 때 그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 즉 술선하여 입조한 군주일수록 더 큰 공적을 인정하고,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1234년 키르만 지역 군주 루큰 앓 딘 쿠틀룩(Rukn ad-Din Qutug)이 입조했을 때 우구데이가 그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칙명에 따라 어전으로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그에게 ‘쿠틀룩 칸’이라는 호칭을 주었다”¹⁷⁾라는 기록과 至元 7년(1270) 2월 쿠빌라이가 몽골에 입조한 高麗 元宗을 질책하며 “그대는 늦게 內附했기 때문에 諸王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우리 太祖 시기에 亦都護(이두쿠트)는 먼저 귀부하여 諸王 위에 위치하게 했고, 阿思蘭(아르슬란)은 후에 귀부하여 그 아래에 위치하게 했다”¹⁸⁾라고 한 발언에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몽골인은 칭기스칸 시기 확립된 독자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계제국’으로 간주하고 지상의 모든 지역과 사람들을 실제적·잠재적인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즉 몽골인의 세계관 속에는 실제 지배하는 국가·백성과 향후 반드시 정복·복속시켜야 할 대상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군주의 친조를 복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친조가 실현될 경우 그 순서에 따라 공적과 지위에 차등을 두었다. 다시 말해 주변국에서 사신을 보내 복속의 의향을 표시해도 군주가 직접 입조하지 않는 한 복속을 인정하지 않았고, 친조가 이행되어도 그 순서가 상대적으로 늦는다면 높은 공적과 지위를 보장하지 않았다. 몽골은 이러한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에 입각하여 주변국에게 군주의 친조를 통한 ‘완전한’ 복속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가공할 전투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굴복시켰다. 그 결과 몽골은 단시간에 유라시아 대부분을 포괄하는 ‘세계제국’을 건설했다.

3. ‘복속’ 인식의 불일치와 양국전쟁

13세기 초반 만주지역에서 金에게 반기를 들고 거병한 거란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高宗5년(1218) 12월 哈眞·札刺가 지휘하는 몽골군이 당시 江東城에 웅거해있던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 고려 경내에 진입했다. 이 때 趙沖과 金就礪가 이끄는 고려군이 그들과 연합하여 다음해(1219) 정월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거란족의 투항을 받아냈다. 그 직후 양국 사이에 화친이 맺어졌다. 『高麗史』, 『高麗史節要』와 같은 고려

16)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번영-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史叢』 72, 2011, 243~255쪽 참조.

17) 『칸의 후예들』, 105쪽.

18) 『元史』 卷7 本紀7 世祖4, 128쪽.

측 자료에는 이 때 哈眞이 사신을 보내 고려에 講和를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¹⁹⁾ 『元史』, 『元高麗紀事』와 같은 몽골 측 자료에는 고려국왕이 몽골에 항복하고 歲貢 바치기를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이러한 서술의 불일치는 그 사건에 대한 후대 역사가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양국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성립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화친 후 몽골이 고려에 대해 줄곧 고압적인 자세로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적어도 몽골은 그들의 전통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화친의 성립을 고려의 ‘실제적’ 복속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려는 그 시기 이미 몽골에 관해 “夷狄 중 가장 흉악하고 사납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므로²¹⁾ 형세에 따라 부득이하게 화친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친 후 몽골의 무리한 공물요구에 대해 고려는 이제껏 주변국으로부터 그와 같은 강한 외교적 압박을 받은 전례가 없었으므로 몽골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가 몽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한편 변방의 수비를 강화하여 침입에 대비한 조처를 통해 그들에 대한 고려의 부정적 인식과 반감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애당초 불안정한 형태로 맺어진 양국의 화친관계는 결국 고종12년(1225) 정월 발생한 몽골사신 著古興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파탄을 맞게 되었다.

고종18년(1231) 8월부터 30여 년 간 6차례에 걸쳐 몽골의 고려침략이 단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고려는 고종19년(1232) 6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몽골의 침략에 강하게 저항하는 한편 그들에게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방식으로 전란을 종식시키려 노력했다. 여기에서 전쟁기간 중 양 측 사이에 왕래한 서신을 검토하면 ‘복속’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고려는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줄곧 강동성 전투 시기 이미 몽골에 ‘복속’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고종18년(1231) 撒禮塔이 이끄는 몽골군의 침입 직후 고려가 화친을 청하면서 보낸 서한에서 “그 投拜에 관한 일은, 이전에 河稱과 札刺가 왔을 때 이미 일찍이 投拜했습니다”라는 구절과²²⁾ 강화천도 직후 몽골군의 철수를 청하면서 보낸 서한에서 “己卯年(1219)에 이르러 우리 대국에서 장수 河稱과 札臘이 지휘하는 군사를 보내 그 무리(거란)를 소탕했습니다. 소국이 입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어 投拜의 예를 행하고 마침내 영원히 和好할 것을 하늘에 맹세했으며 매년 편의에 따라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는 내용에 잘 나타난다.²³⁾ 즉 몽골의 투항 요구에 대해 고려는 이미 고종5년(1218) 강동성 전투 직후 몽골에 ‘복속’했으므로 침략을 받을 만한 허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몽골은 끊임없이 고려의 불복을 질책하며 확실한 ‘복속’을 요구했다. 이는 고려가 항시 몽골에게 사신과 공물을 보내 신하의 예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지

19) 『高麗史』 卷22 高宗6년 정월 庚寅; 『高麗史節要』 卷15 高宗6년 정월.

20) 『元史』 卷1 本紀1 太祖, 20쪽; 『元高麗紀事』 太祖13년.

21) 『高麗史節要』 卷15 高宗5년 12월.

22) 『高麗史』 卷23 高宗18년 12월 庚辰.

23) 『高麗史』 卷23 高宗19년 11월.

배층이 전통적 대외관념에 입각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군의 침입에 강하게 저항하며, 국왕의 친조를 이행하지 않는 고려의 태도를 ‘실제적’ 복속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몽골은 세상의 모든 지역과 사람들을 전쟁과 복속의 대상으로 양분하고, 주변국이 확실하게 복속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해 철저히 굴복시키는 세계관과 대외 정책 방식을 지녔는데, 그것이 고종18년(1231) 12월과 고종40년(1253) 8월 고려에 보낸 다 음 서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皇帝大國의 영토 안에서 몽골인들은 주위 사방의 국토를 모두 거두었다. 투항하지 않은 국 토를 모두 거두었다. 너희들이 투항하지 않으면 모두 일거에 칠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침략하여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거둘 것이다. 너희가 투항하면 고려국왕의 민호 중 투항하는 자는 전과 같이 살게 될 것이고, 투항하지 않은 자는 죽게 될 것이다.²⁴⁾

짐은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려는데, 너희들이 명 령에 거역하므로 皇叔 예쿠(也窟)에게 명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벌하게 했다. 명을 받아 복 속한다면 군대를 돌릴 것이고, 명을 거역한다면 짐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²⁵⁾

이처럼 몽골은 주변국에게 자신들이 만족할 정도의 ‘확실한’ 복속을 요구하고, 군주의 친 조를 그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려에게도 국왕친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우선 고종19년(1232) 11월 고려가 몽골에 보낸 서한에서 “제가 친히 조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폐하께서 황통을 계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가서 하례를 올려야하는데 하물며 外臣으로서 황궁에 가서 영광스럽게 조회하는 것은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왕의 자리를 하루라도 비우기 어려우니 진실로 황궁할 뿐입니다”라고 변명하는 내용을 통해 몽골이 투항의 징표로 국왕친조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²⁶⁾ 몽골은 고종26년(1239) 4월·8월, 다음해(1240)년 9월, 고종38년(1251) 10월에도 거듭 사신을 보내 국왕친조를 요구 했다.²⁷⁾

그러나 고려는 전쟁기간 중 몽골의 국왕친조 요구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국왕 의 신변안전에 대한 고려정부의 우려나 권위의 약화를 우려한 무신 집권자의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무엇보다 국왕친조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종5년(1264) 5월 고려가 원종의 친조를 요구하는 쿠빌라이의 명을 받았을 때 李藏用을 제외한 모든 신료들이 반대했다는 기록을 통해 재차 확인된다.²⁸⁾ 그 시기 고려 지배층이 생각하는 ‘복속’이란 과거 전통적 조공책봉체제 안에서 거란과 금의 황제에게 事大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는 그와 동일한 국제질서 안에서 상국으로써 몽골의 형식적 지위를 인정하고 조공국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24) 『高麗史』 卷23 高宗18년 12월 壬子朔.

25) 『高麗史』 卷24 高宗40년 8월 戊午.

26) 『高麗史』 卷23 高宗19년 11월.

27) 『高麗史』 卷23 高宗26년 4월; 8월; 高宗27년 9월; 高宗38년 10월 戊申.

28) 『高麗史節要』 卷18 元宗5년 5월.

전례 없는 국왕친조를 행하지 않고도 그들과 화친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종18년(1231) 전쟁 후 몽골에게 신하의 자세를 취하면서 저항의지를 보이지 않고 조공국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한 고려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군대를 일으켜 침략을 자행하는 몽골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종40년(1253) 8월 당시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 지휘관 예쿠(也窟)에게 보낸 서한에서 “小邦이 상국에 臣服한 이래 오직 한 마음으로 힘껏 직공을 닦았으므로 (상국의) 보호를 받아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황제의 군대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그러한 고려의 당혹감이 반영되어 있다.²⁹⁾

이처럼 고려가 고유한 대외관념에 입각하여 ‘복속’의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국왕친조가 이행되지 않는 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속’에 관한 양국의 현격한 인식 차이는 1249년 몽골이 고려에 보낸 서한에서 “힘을 다해 직공을 닦으려면 庚子年(1240) 간에 (국왕이) 직접 조회하러 오라고 이 같은 분명한 깨우침을 보냈는데, 지금도 예전처럼 황제의 명을 거스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듣겠는가하여 나를 속였으니 너희는 진실로 경솔하였다”라고 질책하는 내용에 잘 나타난다.³⁰⁾ 그들의 대외관념 속에서 국왕친조의 불이행은 ‘불복’을 의미하고, 몽골에 불복한 나라는 곧 군사정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무력침공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고려의) 宰樞들이 몽골이 해마다 전쟁을 일으키니 아무리 힘껏 섬겨도 이득이 없다고 의견을 모아, 봄에 정례적으로 공물 바치는 것을 중지했다”라는 기록은 ‘복속’에 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양국관계가 안정되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³¹⁾ 따라서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30여 년 지속된 양국전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집요하게 국왕친조를 요구하던 몽골은 고종43년(1256)부터 태도를 바꿔 국왕 대신 태자의 입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 양국전쟁에서 고려뿐 아니라 몽골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그 해 5월 당시 고려정벌을 지휘하던 몽골장수 車羅大가 화친을 청하기 위해 파견된 고려사신 愼執平에게 화를 내며 “화친을 맺고 싶다면 너희나라는 어찌서 우리 군사를 (이토록) 많이 죽였는가”라고 말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³²⁾ 그러므로 이러한 몽골의 태도변화는 그들이 장기간 힘겨운 전쟁을 겪으면서 국왕친조를 통한 고려의 완전한 복속을 실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자의 입조는 몽골이 국왕친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차기 군주위계승자의 완전한 복속을 받아 즉위 후 그 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주변국에게 시행하는 전통적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몽골은 고종43년(1256) 4월과 다음해 7월 車羅大를 통해 태자의 입조를 요구했다.³³⁾ 고려에서도 30여 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더

29) 『高麗史』 卷24 高宗40년 8월 己未.

30) 『元高麗紀事』 正宗 己酉年.

31) 『高麗史』 卷24 高宗44년 정월 丙辰.

32) 『高麗史』 卷24 高宗43년 5월 壬寅.

33) 『高麗史』 卷24 高宗43년 4월 壬申; 高宗44년 7월 壬申.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몽골이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자 그것을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마침 고종45년(1258) 3월 柳璈·金俊이 그동안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고 몽골에 대한 항전을 주도한 최씨 무신정권을 타도하는 정변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고려정부 안에서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친을 맺자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아 결국 다음 해(1259) 4월 고려 태자 王侁의 입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씨정권 붕괴 후 고려가 몽골에 보낸 서한을 살펴보면 ‘복속’에 관한 고려의 인식이 크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그 때까지 고려는 줄곧 몽골에게 강동성 전투 시기 이미 복속하여 조공국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때부터 그 동안 몽골에게 저항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권신(최씨가문)이 발호한 탓으로 돌렸다. 고종45년(1258) 12월 고려는 몽골에 사신을 보내 “본국이 대국을 섬기는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은 단지 권신이 정치를 농단하면서 복속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崔嬪가 이미 죽었으니 즉시 섬에서 나와 육지로 가서 상국의 명을 따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고,34) 다음해(1259) 4월 태자 왕전이 몽골에 입조하러 떠나면서 소지한 표문에도 “소방은 일찍이 병권을 지닌 권신이 오래도록 군대를 장악함으로써 국사가 그의 수중 안으로 떨어져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상국을 받드는 일에 자못 결례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받아 흉악한 놈을 쉽게 제거했으니 장차 영원히 한 마음으로 (직공을 닦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했다.35)

이와 같이 최씨정권 붕괴 후 고려는 몽골에 대해 그동안 복속국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음을 자인하고, 태자입조 요구를 수용하여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 했다. 과거에 몽골이 여러 차례 고려의 불복과 저항을 질책하고, 고려 역시 뒤늦게 그것을 인정했으므로 태자의 입조가 성사될 경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오랜 전쟁을 겪은 후 비로소 실현된 최초의 ‘복속’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몽골 지배층은 元宗원년(1260) 3월 왕전과 쿠빌라이의 만남을 계기로 맺어진 양국의 화친을 몽골에 대한 고려의 ‘최초’ 복속으로 보았다.

4. 쿠빌라이 시기 ‘복속’ 인식의 동요와 정착

고종46년(1259) 4월 태자 왕전이 몽골에 입조하기 위해 고려를 출발했다. 당시 몽골의 몽케 카안이 남송정벌군을 이끌고 사천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왕전은 요동을 지나 燕京·京兆를 거쳐 사천으로 통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던 중 섬서지역 六盤山에 이르렀을 때 몽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귀환 길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해(1260) 정월 汧梁 부근에서 남송정벌 좌익군을 이끌고 북상하던 皇弟 쿠빌라이와 회합했다. 그 때 왕전이 쿠빌라이에게 예를 표하자 그가 “고려는 만 리 밖의 나라로서 唐太宗이 친히 정벌해도 복속시키지 못했

34) 『高麗史』 卷24 高宗45년 12월 甲辰.

35) 『高麗史』 卷24 高宗46년 4월 甲午.

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와서 나에게 귀부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기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³⁶⁾ 여기에서 과거 당태종의 군대에 저항한 바와 같이 고려가 장기간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불복했다는 인식이 바탕에 놓여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은 당시 쿠빌라이 뿐 아니라 몽골의 지배층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가 회합했을 때 쿠빌라이 측근인 江淮宣撫使 趙良弼이 “고려가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산과 바다로 막혀 있어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동원한 지 20년이 되어도 아직 복속하지 않고 있습니다.(尙未臣附)”라고 한 발언과³⁷⁾ 카안 즉위 직후 쿠빌라이가 도성에서 불교를 크게 진흥시키려 했을 때 네스토리우스교 신자 愛薛이 그것에 반대하면서 올린 진언 중 “고려가 새롭게 복속하고(高麗新附) 산둥이 초기에 평정되었으나 강남은 아직 평정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³⁸⁾

그런데 쿠빌라이는 그 때 왕전과의 만남을 고려의 ‘진정한’ 복속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왕전과 함께 開平에 이르러 그에게 마침 사망한 전왕(고종)의 자리를 이으라고 명하고 귀국시키면서 전한 서한에서 “지금 하늘 아래 (우리에게) 복속하지 않은 나라는(未臣服者) 오직 너희 나라와 송나라뿐이다”라고 하여 여전히 고려가 복속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³⁹⁾ 中統원년(1260) 3월 그가 근거지 개평에서 카안에 즉위하고, 다음 달 왕전 역시 개성에서 국왕(원종)으로 즉위했다. 그 직후 원종은 永安公 僖를 보내 쿠빌라이의 카안 즉위를 축하하고, 고려가 복속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송나라가 복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小邦은 항상 大國을 섬겨왔는데 어찌 이 같은 통일의 시기에 감히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매년 조빙을 거른 적이 없고 모든 지시에 복종했으며, 하물며 臣이 직접 찾아뵙고 과분한 대접까지 받은 터에 어찌서 우리를 그 나라와 비교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전에 (황제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거처를 옮긴 것이(徙處)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되어버린 듯합니다.⁴⁰⁾

그 때 원종은 대대로 충실하게 직공을 닦았다는 전쟁 시기 입장을 되풀이하고, 쿠빌라이의 오해가 자신이 그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거처를 옮긴’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그가 쿠빌라이 앞에서 복속에 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⁴¹⁾ 동시기 조양필이 쿠빌라이에게 “그(왕전)가 일단 귀국하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진언한 것도 그의 모호한 태도에

36) 『高麗史』 卷25 元宗원년 3월 丁亥.

37) 『高麗史』 卷25 元宗원년 3월 丁亥.

38) 『元史』 卷134 列傳21 愛薛, 3249쪽.

39) 『高麗史』 卷25 元宗원년 4월 丙午.

40) 『高麗史』 卷25 元宗원년 4월 丙寅.

41) 김호동은 왕전이 쿠빌라이와 만났을 때 복속에 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귀국하여 국왕에 즉위한 후 영안공을 사절로 보내 비로소 정식으로 복속의 뜻을 표명했다고 보았다. (김호동, 『쿠빌라이와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85~89쪽)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²⁾ 또한 쿠빌라이는 그 때 양자의 회합이 어디까지나 차기 카안위 계승 후보자와 고려의 태자 사이의 만남이었으므로 그것을 몽골카안과 고려국왕 사이에 맺어진 정식 외교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 시기 쿠빌라이는 분명 몽골의 황족으로써 국왕친조를 진정한 복속의 표시로 여기는 전통적 대외관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양자의 만남을 고려의 실제적 복속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즉위 후 고려국왕으로 하여금 친조를 이행케 하여 확실하게 복속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그는 카안위 계승분쟁을 치르는 데 진력하느라 친조를 요구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으나, 내전에서 승리한 후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에 입각하여 원종에게 친조를 명하고 원종5년(1264) 10월 그것을 실현시켰다. 아마도 쿠빌라이를 위시한 몽골 지배층은 그 때 처음으로 이행된 고려국왕의 친조를 고려의 실제적 복속으로 인식했을 것이다.⁴³⁾

그러나 국왕친조가 이루어진 후에도 쿠빌라이는 줄곧 고려의 복속을 의심했다. 우선 그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고려가 出陸還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일반적으로 몽골인들은 복속국이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방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자신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적대행위로 간주했다. 칭기스칸 시기 몽골이 금을 침략했을 때 금이 화친을 맺은 후 수도를 中都(북경)에서 汴梁(개봉)으로 옮기자 몽골이 그것을 이유로 다시 침략하여 황하 이북 지역을 모두 점령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고종18년(1231) 몽골의 1차 침입 때 고려가 화친을 맺은 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자, 몽골은 그것을 저항의 표시로 받아들여 재침의 구실로 삼았다. 그리고 전쟁기간 내내 복속의 조건으로 국왕친조와 더불어 출륙환도를 강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비록 국왕친조가 이루어져도 출륙환도가 이행되지 않은 한 쿠빌라이는 고려복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원종9년(1268) 2월 몽골에서 귀환하는 安慶公 涓에게 그가 “너희 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땅이 협소하므로 지금 西京에 들어와 屯田하는 軍民을 모두 귀환시켜 주시면 즉시 남아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3년 간 힘써 농사를 지은 후 옛 수도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둔전하는 軍馬를 모두 불러들인 지금 과연 옛 수도로 돌아갔는가?”라고 책망한 언사에 이러한 의구심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⁴⁴⁾ 다음해(1269) 5월 한인관료 馬亨도 “고려는 본래 箕子の 봉지였고, 漢나라와 晉나라 때 모두 군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내조했지만 그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일찍이 旨를 내려 힘을 헤아려 육지로 나와 살라고 명했으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사신을 보내 화호하여 親仁善鄰의 도리를 행하여도 지금 고려는 거짓말을 하면서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⁴⁵⁾라고 하여 출

42) 『高麗史』 卷25 元宗원년 3월 丁亥.

43) 『高麗史』 卷25 元宗원년 8월 戊申條에 쿠빌라이가 입조한 고려사신 張季烈과 辛允和에게 “너희 나라는 40년 간 大國을 섬겼다. 지금 여기에 조회한 80여 나라 가운데 너희 나라만큼 예우와 대접이 후한 경우를 보았느냐”라고 하여 고려가 40년 전 이미 몽골에 복속했음을 인정한 언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승분쟁 시기 정통성 면에서 열세에 처한 그가 카안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고려의 사신을 후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의 오랜 저항을 무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온당하다. (森平雅彦, 앞의 논문, 26~27쪽 주석16)

44) 『高麗史』 卷26 元宗9년 2월 戊戌.

륙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고려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쿠빌라이는 고려가 助軍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화친성립 후 몽골은 원종3년(1262) 12월과 원종9년(1268) 3월 두 차례 조서를 보내 몽골에 복속한 나라들에게 조상들이 정해놓은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納質, 籍民, 置驛, 助軍, 輸糧, 置達魯花赤 등을 요구했다.⁴⁶⁾ 통상 六事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고려 뿐 아니라 다른 복속국에 계도 요구된 것으로 안남, 위구르, 티벳의 경우에도 확인된다.⁴⁷⁾ 그 중 당시 몽골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목전에 두고 있던 남송·일본정벌에 대한 고려의 군사지원(조군)이었다. 이에 따라 쿠빌라이는 여러 차례 조서를 보내 군사, 전함, 식량, 무기를 마련해 조달 하라고 명했다. 그 때마다 원종은 부담이 과중하다고 호소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조군이 몽골에 복속한 나라에게 부여된 주요한 의무사항이었으므로 그것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고려의 태도는 쿠빌라이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는 원종9년(1268) 2월 안경공 창에게 그가 “너희 나라가 진심으로 투항했다면 마땅히 군사를 내어 전쟁을 돕고 군량을 보내며, 다루가치를 요청하고 민호를 조사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찌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한 발언에 잘 드러난다.⁴⁸⁾ 또한 동시기 입조한 이장용에게 “지금 이 칙령은 예전에 너희 왕에게 가서 유지한 것이다. 속히 출정할 수 있는 군대의 수를 보고 하라. 너희가 이미 고식책을 썼고 다시 지연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너희의 분명한 말을 듣기 위해 사람을 보내 독촉할 것이다. 만약 다시 분명한 말로 아뢰지 않으면 장차 너희 나라에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거 칭기스칸이 금과 호레즘을 정벌할 때 西夏국왕이 조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멸망시킨 고사까지 운운한 것도 조군 요구를 회피하는 고려가 동일한 운명을 겪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이와 같이 복속국의 필수적 의무사항인 조군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고려는 끊임없이 복속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려에 대한 몽골 지배층의 의심과 불신은 林衍의 원종폐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원종10년(1269) 6월 고려의 권신 임연이 원종을 폐위하고 안경공 창을 옹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몽골에서 귀국하던 세자 謙이 국경 부근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몽골로 되돌아가 쿠빌라이에게 사건의 전말을 고하자, 그는 즉시 군사 3천을 보내 임연을 압박하여 11월 결국 원종을 복위시켰다. 원종은 주변국 군주들 중 처음으로 쿠빌라이로부터 직접 책봉을 받고, 이후 친조를 이행하여 그와 사적으로 군신관계를 맺은 인물이다. 따라서

45) 『元高麗紀事』 至元6년 11월

46) 『高麗史』 卷25 元宗3년 12월 乙卯; 『高麗史』 卷26 元宗9년 3월 壬申.

47) 至元4년(1267) 9월과 至元12년(1275) 정월 두 차례 몽골이 安南에게 六事를 요구한 기록이 있다.(『元史』 卷209 列傳96 外夷2 安南, 4635쪽; 『元史』 卷8 本紀8 世祖5, 160쪽) 몽골이 고려와 안남 외에 육사를 요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시기 위구르와 티벳에서 몽골의 요구를 받아 육사가 이행되었음을 규명한 연구성과가 있다. (Thomas T. Allsen, “The Yuan Dynasty and the Uighurs of Turfa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乙坂智子, 「元朝チベツト政策の始動の変遷—關係樹立に至る背景を中心として—」, 『史境』20, 1990)

48) 『高麗史』 卷26 元宗9년 2월 戊戌.

49) 『元高麗紀事』, 至元5년 5월.

쿠빌라이는 그를 자신의 충직한 제후이자 몽골의 동쪽 변방을 지키는 복속국의 군주로서 매우 특별하게 인식·대우했다. 그리고 고려의 신료·백성들이 자신이 책봉한 국왕을 거역하는 것을 곧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했다. 이는 원종원년(1260) 4월 그가 왕전을 고려국 왕으로 책봉해 귀환시킬 때 고려조정에 내린 조서 중 “만약 다시 감히 반란을 일으켜 국왕을 범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너희 임금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정한 법을 문란케 한 것이니, 나라에 규범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를 죽일 수 있다. 아! 세자는 그 나라의 왕이니 귀국하여 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영원토록 東藩이 되어 나의 명을 선양하도록 하라”⁵⁰⁾라는 내용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임연의 원종폐위를 권신이 집권하는 고려 정부가 자신에게 정면 도전한 행위로 간주하여 군대를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그 시기 한인관료 馬希驥와 趙璧도 다음과 같이 고려의 복속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전의 명을 내려 사신을 보내 일본에 은혜를 내리고자 했으나 (고려가) 음모를 꾸며 방해했습니다. 백성들을 옮겨 물에서 나와 육지로 가게 했으나 또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지형을 험고함을 쉽게 믿고 스스로 강대하다고 여겼으니 저항의 싹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체로 (고려) 신하의 권세가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上國에 청하지도 않고 함부로 (왕을) 폐립했으니 법으로써 마땅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⁵¹⁾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지 오래되었는데 밖으로 비록 臣貢한다고 말해도 안으로는 그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권신이 두렵거나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그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지금 林衍이 죽었는데 왕은 실로 죄가 없으니, 만약 조정에서 군사를 보내 호위하여 (왕을) 돌려보내 옛 도읍에 조정을 다시 세우게 한다면 군사와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상책이 될 것입니다.⁵²⁾

위 글에서 마희기와 조벽은 임연의 원종폐립을 카안이 정한 법도를 위반하는 불경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것이 고려에서 권신이 발호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쿠빌라이가 원종의 친조를 받아 군신관계를 확립해도 고려의 정권을 국왕이 아닌 권신이 장악하고 있는 한 고려의 실제적 복속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몽골이 고려를 확실하게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권신을 타도하고 국왕의 지위·권한을 보장하여 정권을 그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사건발생 후 몽골이 고려의 내정에 즉각 개입하여 원종을 복위시킨 조처는 그러한 몽골 지배층의 인식과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후 몽골의 지원을 받은 원종이 다음해(1270) 5월 마침내 권신 林惟茂를 주살하여 100여 년에 걸친 무신집권을 종식시켰다.

무신정권 몰락 후 왕권을 회복한 고려와 그것을 지원한 몽골의 결속이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임유무 주살 직후 원종은 몽골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출륙환도를 단행하고, 삼별초

50) 『高麗史』 卷25 元宗원년 4월 丙午.

51) 『元高麗紀事』 至元6년 11월.

52) 『元史』 卷159 列傳46 趙璧, 3749쪽.

가 양국정부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란을 공동으로 진압했다. 이어 원종15년(1274) 5월 고려 세자 왕심과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켈미시(忽都魯揭里迷失)가 혼인하여 사돈관계를 맺고, 그 해 10월 일본정벌에 함께 출정하여 군사동맹을 공고히 했다. 이와 같이 무신정권 타도 후 일본정벌 출정까지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련의 긴박한 과정을 겪으면서 양국은 긴밀하게 결속했다. 그리고 이 때부터 고려의 복속을 불신하는 몽골 지배층의 언사가 담긴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몽골 지배층은 그러한 양국의 강고한 결속을 몽골에 대한 고려의 완전한 복속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따라서 원종원년(1260) 쿠빌라이와 왕전의 만남을 계기로 다소 불안정하게 출발한 양국관계는 국왕친조, 무신정권 타도, 출륙환도, 삼별초 진압, 왕실통혼, 일본정벌(조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몽골 지배층이 점차 고려의 실제적 복속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안정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0여 년 간에 걸친 양국의 불안정한 복속관계가 127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고려가 장기간 몽골에 저항한 후 쿠빌라이 시기 ‘늦게’ 복속했다는 기억은 몽골 지배층의 인식 속에 그대로 존재했다. 우선 至元7년(1270) 2월 쿠빌라이는 자신을 복위시켜준 것을 하례하기 위해 입조한 원종에게 “그대는 늦게 內附했기 때문에(內附在後) 諸王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우리 太祖 시기에 亦都護(이두쿠트)는 먼저 귀부하여 諸王 위에 위치하게 했고, 阿思蘭(아르슬란)은 후에 귀부하여 그 아래에 위치하게 했다”라고 하여 고려의 ‘늦은’ 복속을 질책했다.⁵³⁾ 또한 至元15년(1278) 東征元帥府가 몽골정부에게 일본정벌을 건의하면서 올린 글에서 “고려가 처음 복속하여(高麗初服)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일본을 정벌하다가 돌아온 사졸 2700명을 징발하여 관리를 두고, 충청과 전라의 여러 곳에 주둔케 하여 먼 곳의 오랑캐를 진무하고 그 백성을 안정시키십시오”라고 하여 여전히 고려가 쿠빌라이 시대 ‘처음’ 복속했음을 언급했다.⁵⁴⁾ 아울러 충렬왕17년(1291) 2월 고려가 카단(哈丹)의 군대가 북계의 여러 성을 함락시켰다고 보고하자, 쿠빌라이가 “너희 나라는 唐太宗이 친히 정벌해도 이기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귀부하지 않아(未歸附) 우리가 정벌했지만 역시 쉽게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찮은 도적을 어찌 그렇게 심하게 두려워하는가?”라고 하여 그의 치세 말기까지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엄존했음을 나타냈다.⁵⁵⁾

이와 같이 전쟁 종식 후 몽골 지배층은 쿠빌라이-왕전의 만남과 원종의 친조를 오랜 전쟁을 겪은 후 비로소 실현된 고려의 최초 복속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무신집권기 고려가 몽골의 출륙환도와 조군의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자, 몽골은 고려복속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임연의 원종폐립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몽골은 임연을 무력으로 압박하여 원종을 복위시키고, 이후 그를 적극 지원하여 무신정권을 타도했다. 이어 고려가 출륙환도를 단행하고, 양국이 삼별초의 반란을 공동으로 진압하며, 왕실통혼 관계를 맺

53) 『元史』 卷7 本紀7 世祖4, 128쪽.

54) 『元高麗紀事』 至元15년.

55) 『高麗史』 卷30 忠烈王17년 2월 丁亥.

고, 일본정벌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고려복속에 대한 몽골 지배층의 의구심과 불신감이 해소되어 비로소 양국관계가 안정되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치세 말기까지 몽골 지배층은 여전히 고려가 오랜 항전 후 늦게 복속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5. ‘복속’에 관한 고려의 ‘기억 만들기’와 수용

전쟁 말기 고려는 권신의 발호를 내세우면서 복속국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즉위 후 쿠빌라이가 여러 차례 고려의 늦은 복속을 지적했을 때에도 합리적인 반박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쿠빌라이 치세 말기까지 몽골 지배층의 인식 속에서 ‘고려의 오랜 항전과 늦은 복속’에 관한 기억이 변함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고려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그들의 인식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쿠빌라이 사후 고려는 스스로 칭기스칸 시기 가장 먼저 복속했다는 率先歸附 기억을 생산하여 몽골과 교섭할 때 적극 내세우기 시작했다. 충렬왕20년(1294) 정월 테무르 카안(成宗)이 즉위하여 5월 고려에게 몽골에 귀속한 시기를 물었을 때 충렬왕이 보내는 답서에 그것이 처음 시도되었다.

太祖 聖武皇帝께서 朔方에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大勢國이 금나라의 정벌을 도왔는데, 이후 그 공을 믿고 교만해져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았습시다. 金山王子가 국호를 고쳐 大遼라 칭하고 中都 등지에서 납녀와 귀한 재물을 약탈하고 동쪽으로 도주하여 江東城을 점거했습니다. 조정에서 哈眞과 札刺를 보내 추격하여 토벌하게 했는데, 마침 눈이 깊게 쌓이고 길이 험해 군량의 보급이 끊겼습시다. 高王(高宗)이 그 소식을 듣고 趙沖과 金就勳를 보내 군량을 보급하여 그 추악한 오랑캐를 섬멸했습니다. 이로써 (황제께) 표문을 올려 東藩이 되기를 청하니 태조께서 慶都虎思를 보내 은혜로운 조서를 내려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으니, 그 후로 지금까지 76년이 지났습시다.⁵⁶⁾

이와 같이 충렬왕은 테무르 카안의 질의에 대해 76년 전 강동성 전투 시기 몽골에 처음 복속했다고 하여 고려의 솔선귀부를 강조했다. 여기에서 우선 몽골 카안이 즉위 직후 고려의 ‘복속 시기’를 물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시기 새로 즉위한 몽골 카안이 주변국 군주와 복속관계를 설정할 때 여전히 복속 시기를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했음을 알려준다. 충렬왕4년(1278) 7월 몽골이 國史院에 통보할 자료를 구하기 위해 고려의 역대 사적, 복속한 날짜(臣服日月), 황제 즉위 후 파견한 사신의 명단, 국왕이 친조한 연월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명했는데, 여기에도 국사를 편찬할 때 주변국의 복속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전통적 대외관념이 반영되어 있다.⁵⁷⁾

과거 충렬왕은 즉위 후 빈번하게 친조를 행하고, 몽골의 일본정벌에 적극 협조했으며, 나얀의 반란 시기 직접 군대를 이끌고 중군하겠다고 자청하여 복속국 군주의 임무를 충실하

56) 『高麗史』 卷31 忠烈王20년 5월 甲寅.

57) 『高麗史』 卷28 忠烈王4년 7월 丁亥.

게 수행했다. 이에 그는 쿠빌라이로부터 여러 차례 충근의 노고와 공적을 치하 받았다. 따라서 그 시기 비록 쿠빌라이가 고려의 오랜 항전에 관한 기억을 갖고 있어도 실제적 복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충렬왕은 그와 강고한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쿠빌라이 사후 테무르가 즉위하자 그는 몽골 카안과 복속관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현실에 직면했다. 그는 세자 시절부터 장기간 몽골에서 숙위하고, 몽골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으며, 즉위 후 빈번하게 몽골을 왕래하면서 카안을 비롯한 고위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따라서 그는 당시 고려에서 몽골 지배층에 관해 가장 많은 지식과 교류경험을 보유하고, 몽골에 사정에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주변국의 복속 시기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몽골 지배층의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그가 몽골의 주변국 중 고려가 가장 먼저 복속했다는 기억을 생산하여 그때까지 자신과 특별한 연고가 없었던 새로운 몽골 카안과 우호관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충렬왕은 쿠빌라이 시대 몽골 지배층의 인식과 달리 30여 년에 걸친 오랜 항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고려의 이른 복속만을 크게 부각했다. 이러한 고려의 답변 대해 테무르 카안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사실은 그가 고려의 입장을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그 역시 ‘고려복속’에 관한 몽골 지배층의 일반적 인식을 공유했을 테지만, 새로 즉위한 카안으로서 복속국 고려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려의 대응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충렬왕은 몽골 지배층의 전통적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억을 생산하여 몽골 카안과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이후 고려는 양국 간 정치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생산한 술선귀부 기억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했다. 충렬왕25년(1299) 10월 몽골에서 闊里吉思와 耶律希逸을 파견하여 정동행성의 증치를 단행했다. 정동행성 증치는 몽골관원 哈散이 “고려왕이 신민을 복속시키지 못하니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 함께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한 건의에 따른 결과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⁵⁸⁾ 행성 승상 충렬왕의 지위과 권한을 약화시키고 몽골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실제 관할권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고려의 정치적 독자성을 크게 침해하는 조처였다.⁵⁹⁾ 이에 충렬왕은 표문을 올려 행성증치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려의 ‘술선귀부’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

小邦이 여러 대에 걸쳐 황제께 충성을 다한 80여 년 간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臣이 일찍이 세자로써 入侍하여 황실과 잇달아 혼인하여 마침내 甥舅관계를 맺었으니, 진실로 지극한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小國으로 하여금 祖風을 바꾸지 않고 영원히 제후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⁶⁰⁾

58) 『高麗史』 卷31 忠烈王25년 10월 甲子.

59) 고병익,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200~208쪽.

60) 『高麗史』 卷31 忠烈王25년 10월 丙寅.

이처럼 충렬왕은 몽골이 고려의 구풍을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로서 몽골에 일찍 복속하고 정성껏 충근을 닦은 공적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이 즉각 수용되지 않았지만, 위 사건은 고려가 술선귀부 기억을 생산하여 몽골과 외교적 마찰을 겪을 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충선왕4년(1312) 6월 洪重喜가 입성책동을 시도했을 때에도 충선왕이 ‘祖宗에 臣服한 공’을 내세우면서 반대하여 결국 저지시켰다.⁶¹⁾ 이 때 그가 내세운 고려의 공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위 사례와 이후 그의 외교활동에 비춰볼 때 분명 고려의 술선귀부 공적을 가장 먼저 내세웠을 것이다. 또한 충숙왕 8년(1321) 11월 당시 티벳으로 유배간 충선왕이 측근들에게 글을 보내 고려가 칭기스칸 시기 ‘술선귀부’하여 대대로 충근을 닦은 공적을 앞세워 자신이 유배에서 벗어나도록 주청하는 글을 올리라고 지시하여 그 때에도 술선귀부 기억을 자신의 석방을 위한 외교활동에 활용하려 했다.⁶²⁾ 실제로 충숙왕10년(1323) 정월 崔誠之와 李齊賢이 그의 환국을 요청하기 위해 몽골조정과 승상 바이주(拜住)에게 올린 글에서 고려의 술선귀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⁶³⁾

또한 충숙왕10년(1323) 정월 柳淸臣과 吳潛이 입성책동을 시도했을 때 이제현이 몽골조정에 반대 상소문을 올려 “聖祖에 臣服하여 매년 공물을 바친 지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고,⁶⁴⁾ 다음해(1324) 5월 고려신료들이 당시 몽골에 체류하던 충숙왕의 환국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글에서 “小邦은 처음 太祖 聖武皇帝께서 나라를 세울 때 우리 忠憲王(고종)이 앞장서 복속하고 매년 조공을 바쳐 힘써 본분을 따랐습니다”라고 했다.⁶⁵⁾ 이어 충혜왕 즉위년(1330) 7월 江南人 蔣伯祥이 입성책동을 벌였을 때 충혜왕이 몽골에 보낸 반대 서한에서 “小邦이 聖祖에 臣服하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데 백여 년 간 조금도 태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고,⁶⁶⁾ 충숙왕 복위4년(1335) 12월 李穀이 고려처녀의 공출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글에서도 “國家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앞장서 臣服하여 왕실에 현저한 공훈을 세웠습니다”라고 했으며,⁶⁷⁾ 충숙왕 복위6년(1337) 5월 역시 이곡이 당시 고려에 내려진 무기와 말 소유 금지 명령을 거두어달라고 청하면서 보낸 글에서도 “太祖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고려가) 가장 먼저 歸附했습니다”라고 하였다.⁶⁸⁾ 아울러 충혜왕 복위년(1339) 6월 고려신료들이 충혜왕의 복위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글에서 “太祖 聖武皇帝께서 천명에 응하여 나라를 세우시자 우리 忠憲王이 앞장서 內附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라고 했고,⁶⁹⁾ 충정왕 즉위년(1348) 12월 충정왕의 즉위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글에서도 “本國은 太祖 聖

61) 『高麗史』 卷34 忠宣王4년 6월 戊辰.
 62) 『高麗史』 卷35 忠肅王8년 11월 壬午.
 63) 『高麗史節要』 卷25 忠肅王10년 정월.
 64) 『高麗史節要』 卷25 忠肅王10년 정월.
 65) 『高麗史』 卷35 忠肅王11년 5월 壬辰.
 66) 『高麗史』 卷36 忠惠王 즉위년 7월 庚寅.
 67) 『高麗史節要』 卷25 忠肅王 복위4년 12월.
 68) 『稼亭集』 卷10 謝復弓兵馬匹表.
 69) 『高麗史』 卷36 忠惠王 복위년 6월 壬辰.

武皇帝 때부터 온 나라가 臣服했습니다”라고 하였다.⁷⁰⁾ 이와 같이 고려는 칭기스칸 시기 가장 먼저 복속했다는 기억을 만들어 몽골과 교섭할 때 고려 측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리고 1320년대부터 고려는 술선귀부 외에 새로운 기억을 생산하여 몽골에 대한 고려의 공적으로 내세웠다. 충숙왕10년(1323) 정월 이제현이 유청신·오잠의 입성책동을 반대하면서 올린 상소문에서 “己未年(1259) 世祖皇帝께서 강남에서 회군할 때 우리 忠敬王(원종)이 천명이 귀의하고 인심이 복종하는 것을 알고 산 넘고 물 건너 5천여 리를 가서 梁·楚 지역에서 맞아 뵈었습니다”라고 진언했다.⁷¹⁾ 이는 원종이 국왕 신분으로 쿠빌라이에게 복속하기 위해 고려에서 변량지역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먼 길을 갔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실제로 원종은 1259년 태자 신분으로 사천에서 남송정벌전을 지휘하던 몽케를 알현하기 위해 떠났고, 육반산 부근에서 그의 사망소식을 듣고 귀환하던 중 변량지역에서 마침 회군하는 쿠빌라이와 회합했다. 즉 당시 태자 왕전은 국왕 신분도 아니었고, 쿠빌라이를 만나기 위해 고려를 출발하여 먼 길을 가지도 않았으며, 그를 만났을 때 확실한 복속의 뜻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이제현의 진언은 ‘술선귀부’와 마찬가지로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생산한 기억은 충혜왕 즉위년(1330) 7월 충혜왕이 장백상의 입성책동을 반대하면서 보낸 서한에서 “己未年 世祖皇帝께서 강남에서 회군할 때 우리 4대조 忠敬王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산 넘고 물 건너 6천여 리를 가서 梁·楚 지역에서 맞이하여 예를 올렸습니다”라고 하여 다시 언급되었고,⁷²⁾ 충혜왕 복위년(1339) 6월 고려신료들이 충혜왕 복위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글에서도 “憲宗皇帝께서 강남을 정벌하다가 돌아가시고 아릭부케(阿里孛哥)가 북방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世祖皇帝께서 襄陽에서 회군하자 우리 忠敬王이 산 넘고 물 건너 모진 고난을 무릅쓰고 梁·楚 지역에 가서 예를 올렸습니다”라고 하여 여전히 되풀이되었다.⁷³⁾ 이와 같이 고려는 원종이 쿠빌라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정성을 다해 복속했다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술선귀부와 함께 몽골에 대한 공훈으로 적극 내세웠다.

그렇다면 쿠빌라이 사후 고려가 생산한 기억이 몽골과 교섭할 때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것을 앞세운 고려의 요청이 수용되었는지 여부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는 술선귀부를 내세워 충선왕4년(1312), 충숙왕10년(1323), 충혜왕 즉위년(1330) 발생한 입성책동을 모두 저지시켰다. 또한 동일한 논리에 바탕을 둔 이곡의 충숙왕 복위4년(1335) 고려처녀 공출 중단 요청과 충숙왕 복위6년(1337) 무기와 말 소유 금지 철회 요청도 수용되었다. 아울러 충렬왕25년(1299) 행성증치 철회 요청과 충숙왕10년(1323), 11년(1324), 충혜왕 복위년(1339), 충정왕 즉위년(1348) 제출된 고려국왕의 석방, 환국, 즉위에 관한 요청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두 가납되었다. 이를 통해 몽골과 교섭할

70) 『高麗史』 卷37 忠定王 즉위년 12월 己卯.

71) 『高麗史節要』 卷24 忠宣王10년 정월.

72) 『高麗史』 卷36 忠惠王 즉위년 7월 庚寅.

73) 『高麗史』 卷36 忠惠王 복위년 6월 壬辰.

때 술선귀부를 앞세운 고려의 외교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몽골은 그러한 고려의 요청을 항상 수용한 것도 아니고, 수용했을 경우 그 사유를 ‘술선귀부 공적’에서만 찾은 것도 아니다. 고려는 몽골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술선귀부 뿐 아니라 조공, 쿠빌라이-원종 회합, 국왕친조, 케식복무, 왕실통혼, 조군, 카이산 옹립, 일본방어 등 고려의 공훈과 군사적·지정학적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를 내세웠다. 또한 입성책동 시기 입성의 비실효성을 강조한 몽골관원의 주장도 입성철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⁷⁴⁾ 그러나 몽골과 교섭할 때 고려가 개진한 대응논리의 근간은 역시 ‘누대에 걸친 고려왕실의 공훈’이었고, 그것은 칭기스칸 시기 이루어진 술선귀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술선귀부 기억은 몽골로부터 외교적 이득을 얻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술선귀부를 앞세운 고려의 주장이 몽골에게 수용된 것은 그것이 몽골 지배층에게 설득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고려는 전쟁 시기 전통적 조공책봉체제 인식 틀 안에서 술선귀부를 주장했지만, 몽골은 상이한 대외관념에 근거하여 국왕친조를 결여한 복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빌라이 시대 고려의 실제적 복속이 이루어졌지만 ‘오랜 항전과 늦은 복속’ 기억은 몽골 지배층 인식 속에서 여전히 유지되었고, 종종 몽골이 고려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쿠빌라이 사후에도 몽골 지배층이 스스로 ‘고려복속’에 관한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현실적 이유나 계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그들이 술선귀부 인식을 수용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생산한 기억을 그들에게 주입하려 노력한 고려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충분치 않지만 몽골 지배층·지식인이 남긴 저술·언사에서 술선귀부 기억을 공유한 흔적이 발견된다. 한인관료 姚燧는 「轉運鹽使曹公神道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처음에 高麗가 太祖 때부터 대대로 복속했는데 國王 穆呼哩(무칼리)가 군대를 이끌고 매년 끊임없이 동쪽을 정벌하여 백성을 살육하고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았다. 고려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王城을 버리고 그 백성을 江華島로 옮겼다. 世祖께서 그들의 항복을 가엾게 여겨 매년 계속되던 정벌을 멈추고 유시하여 그들의 王城으로 돌아가도록 했다.⁷⁵⁾

위 비문의 주인공인 曹世貴는 大德6년(1302) 사망했으므로 이 글은 그의 사망 직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고려가 칭기스칸 시기 이미 복속했고,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내용은 그 시기 몽골이 항시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려의 불복’ 주장과 상반되고, 오히려 침략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표명한 고려의 입장과 대체로 유사하다. 따라서 위 글은 몽골의 지배층·지식인이 고려가 생산한 술선귀부 기억을 수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그 시기 비로소 그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

74) 대표적으로 충숙왕10년(1323) 입성책동 시기 한인관료 王約과 王觀이 주장한 입성반대론을 들 수 있다. (『元史』 卷178 列傳65 王約, 4142쪽; 『高麗史節要』 卷24 忠肅王10년 정월)

75) 『牧庵集』 卷24 轉運鹽使曹公神道碑.

다. 그리고 충선왕2년(1310) 7월 카이산이 내린 고려 선대왕 추증 조서와 한인관료 蘇天爵의 작품에서 그것이 다시 확인된다.

지금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을 보유하고 왕위를 누리는 것은 오직 三韓뿐이다. 祖宗 이래 신하로 복속한지 백여 년 간 아버지와 아들이 반복해서 우리와 장인·사위관계를 맺어 훈적이 되었으니 마땅히 부귀를 누려야 한다. 예를 다하여 앞장서 대국을 섬겼으니 추송하는 의례를 어찌 늦출 수 있겠는가?⁷⁶⁾

대체로 高麗라는 나라는 바닷가 한 구석에 치우쳐 있는데 聖朝가 처음 흥기할 때 가장 먼저 복속했다. 世祖皇帝께서 그 공로를 가상하게 여겨 공주를 시집보내니 이로써 小邦을 회유하는 은혜가 매우 두터워졌다.⁷⁷⁾

한편 고려가 생산한 솔선귀부 기억은 양국 간 외교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고려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때 뿐 아니라 몽골관료가 고려 측 주장을 지지할 때에도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충숙왕10년(1323) 입성책동 시기 한인관료 往觀은 입성의 부당성과 비효율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승상 바이주에게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高麗가 의를 사모하여 聖祖에 귀순한지 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서로 이어받아 신하의 예절을 잃지 않았으므로 世祖皇帝께서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황제의 딸을 시집보내고, 위계를 親王과 같게 하며, 총애하는 융숭함이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⁷⁸⁾

위 글에서 그는 동시기 입성철회를 주창하는 글을 올린 이제현과 마찬가지로 입성반대 이유로써 고려의 솔선귀부와 충근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글이 제출된 직후 몽골정부가 입성계획을 철회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그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쿠빌라이 사후 고려는 몽골 지배층의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억을 생산하여 몽골과 교섭할 때 적극 활용했을 뿐 아니라 몽골 지배층의 인식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그들이 고려의 주장을 지지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솔선귀부 기억의 생산과 활용은 몽골의 외교적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한 고려의 능동적·성공적 외교활동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6. 결론

13세기 초 몽골제국 건립 시기 몽골 지배층은 세상 모든 지역과 사람들을 복속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형성했다. 그리고 주변국 군주의 친조를 유일한 복속의 표

76) 『高麗史』 卷33 忠宣王2년 7월 乙未.

77) 『滋溪文稿』 卷26 災異告白十事.

78) 『高麗史節要』 卷24 忠肅王10년 정월.

시로 간주하고, 친조의 순서에 따라 복속국 군주의 공적과 지위에 차등을 두었다. 이러한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에 입각하여 그들은 주변국에게 국왕친조를 조건으로 하는 실제적 복속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혹독한 군사정벌을 단행하여 단시간에 유라시아 대부분을 정복·지배했다.

몽골은 건국초기 개시된 고려와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전통적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강동성 전투 시기 양국의 첫 접촉 후 몽골은 줄곧 고려에게 국왕친조를 요구하고, 고려가 그것을 회피하자 여러 차례 침공을 단행했다. 전쟁 시기 고려는 줄곧 전통적 조공책봉체제 인식 안에서 일찍이 복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몽골은 국왕친조를 결여한 복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 측 인식의 불일치가 30년 전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1260년 쿠빌라이와 왕전의 만남 후 원종이 몽골에 친조하여 고려의 실제적 복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몽골은 출륙환도와 조군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고려를 줄곧 의심했다. 결국 무신정권 붕괴 후 고려의 출륙환도, 조군, 왕실통혼이 차례로 성사되어 고려에 대한 몽골의 불신감이 해소되고 양국관계가 안정되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치세 말기까지 몽골 지배층은 여전히 고려가 오랜 항전 후 늦게 복속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쿠빌라이 사후 고려는 칭기스칸 시기 몽골에 가장 먼저 복속했다는 ‘술선귀부’ 기억을 생산하여 몽골과 교섭할 때 적극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지배층의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그들이 고려의 입장을 지지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술선귀부 기억은 고려가 몽골과 교섭할 때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술선귀부 기억의 생산과 활용은 몽골에 대한 고려의 능동적·성공적 외교활동 사례로 평가될 만하다.

〈고명수, 몽골복속기 고려의 ‘기억만들기’와 양국관계〉 에 대한 토론문

조 원

본 논문은 몽골과 고려 양국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양국 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사건을 둘러싼 양자간의 인식의 균열에 주목하고 그것이 양국간의 관계 설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몽골과 고려 양국 관계의 역동적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다. 몽골과 고려 양국 간의 성문화된 외교문서가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고려의 몽골 복속 시점에 대한 몽골 측의 기억은 고려를 압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 측에서는 이러한 균열을 역으로 이용하여 ‘복속의 시점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대몽골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려의 입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고려와 몽골의 관계사 연구에 있어서 몽골제국의 일방적인 정치적 복속·간섭·수탈과 고려의 대응이라는 단면적인 역사상을 탈피하고 고려가 ‘기억’의 생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몽골과의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을 正史, 文集 등 양측의 사료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몽골과 고려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논문에서 떠오른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발표자는 2장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복속’ 인식에서 몽골은 주변국과 ‘전쟁’ 아니면 ‘평화’의 방식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맺어진 주종 관계에 따라 ‘복속국’에게 정치적 실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몽골에게 ‘복속’은 복속된 국가와의 주종관계를 맺는 중요한 인식과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에서 각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방식이 다소간 달랐다. 고려, 안남, 티벳, 위구르, 한지에 대한 정책이 각각 상이했던 것을 미루어 몽골의 정복지역에 대한 외교 관계 설정은 ‘복속’된 사실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의 경우 몽골제국 내에서 부마국과 같은 특수한 위치를 차지했던 점을 미루어 ‘복속’의 문제 이외에도 몽골과 복속국가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두 번째로, 몽골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계제국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와 그것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묻고 싶다. 본고에서는 징기스칸 시기 중앙아시아 정벌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몽골의 세계정복과 세계제국으로서의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몽골의 세계관은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의 세계정복의 명분을 마련해주고, 복속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몽골의 대외관계와 세계제국 존속에 있어서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복속’ 관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 궁금하다. 몽골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복속’ 관념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징기스칸 시기 몽골 정복 전쟁 성격의 변화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발표자는 몽골인들은 그들의 전통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복속’을 ‘형식’이 아닌 ‘실제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주변국 군주의 친조를 가장 확실한 복속의 표시로 인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몽골이 요구한 복속의 방식은 親朝를 비롯한 六事 요구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몽골과 복속국의 정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행되었으며 몽골의 지배력이 관철되는 강도도 각 지역마다 달랐다. 쿠빌라이 집권 시기 고려와 안남은 몽골의 육사 요구 일부에 대해 지연 혹은 철회 요구로서 몽골 정부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으며, 몽골 조정의 질책이 있었으나 복속 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몽골과 복속국 간의 관계에 유동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충렬왕 시기 이후 몽골에 ‘술선귀부’를 내세워 고려측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려측의 능동적 외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양국간의 정치적 국면의 전환이 있지는 않았는가? 고려 측의 술선귀부 주장에 대한 몽골측의 수용의 이면에는 몽골의 대고려 정책의 변화 혹은 몽골측의 내부적 요인도 함께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세속화'

이정란

1. 머리말
2. 고려전기 龍孫意識을 통한 권력의 독점
3. 고려 후기 왕권의 상대화와 '廢假立眞' 논리의 통용
4. 맺음말

1. 머리말

전근대 어느 왕조 국가에서나 국왕은 왕권의 절대성이라는 이데올로기 위에 구축된 초월적 존재에 가까웠다. 물론 그것은 이념형에 불과할 뿐으로 君臣關係의 실상과 거기에 투영된 왕권의 실체는 당대의 정치 구조와 권력의 추이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적어도 국제관계에서 과생된 현상이 아니라면 이데올로기상 자국 내에서 국왕은 群臣과 百姓 위에 君臨한다는 자기완결적 존재였다.

자기 영역 안에서 왕권의 이와 같은 절대성 이념을 구축하는데 구사되었던 전략은 왕조마다 달랐다. 삼국시대에는 임금이 해 또는 하늘의 자손이라거나 부처의 분신임을 천명하는 방식, 즉 초월적 권위에 가탁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에 비해 유교가 보편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조선시대의 경우 天命과 人心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¹⁾ 그런데 기존연구에 따르면, 초월적 권위에 의탁하는 전략은 통일신라기에 불교를 통해 어느 정도 해체되었다고 한다. 통일신라와 고려의 임금은 분명 불교를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뒷받침 받았지만, 그때의 불교는 왕즉불이 통용되던 中古期の 그것과는 달랐다. 즉, 통일신라 이후 화엄사상의 영향 아래 불교는 다분히 철학화한 논리에 의거하여 임금의 권위를 높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는 것이다.²⁾

여하튼 이상의 논리를 따르면, 고려는 철학화된 불교와 유교의 天命論에 의거하여 왕권의 절대성 이념이 구축되던 시기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고려가 이상으로 삼은 군주론을 專論으로 다룬 기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³⁾ 그에 따르면, 고려후기

1) 李泰鎮, 1993,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104~106쪽 ; 도현철, 1995, 「高麗末期 士大夫의 理想君主論」, 『東方學志』88, 6쪽.

2) 李泰鎮, 1993, 「朝鮮王朝의 儒敎政治와 王權」,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104~106쪽 ; 최병헌, 1984, 「新羅 佛敎思想의 展開」, 『歷史都市 慶州』.

3) 고려 국왕권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가 이상으로 삼은 군주관이 조금 다루어졌는데, 그것들도 대개

성리학의 수용이후 天命과 修身을 강조하는 ‘성인군주론’이 완전히 자리 잡아 나갔지만 그 이전의 시기에는 부처나 天靈·山川 諸神의 가호를 받는 ‘神聖君主의’ 모습이 잔존하고 있었다.⁴⁾ 다만, 그 때의 신성군주는 초월적 권위에 가탁하여 上帝나 부처의 분신으로 자처하던 고대적 군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합리화된 ‘중세적’ 군주라고 하였다.⁵⁾

그런데 고려 왕가가 초월적 권위에 가탁하는 ‘고대적 군주론’에서 완전히 벗어났는가는 의문이며, 諸神의 가호를 받는 것이 중세적 군주로서의 모습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성리학이 신성군주론에서 성인군주론으로 전환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漢代에 이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거하여 성인군주론이 황제 정통론의 주류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⁶⁾ 사실 고려의 경우 왕권의 절대성이 구축된 논리가 신라나 조선에 비해 선명하지 않다. 신라는 天孫 내지 轉輪聖王·王即佛과 같은 초월적 권위에 기대는 논리를 주로 구사했다고 한다면, 조선은 天命과 人心에 대한 해석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공’ 담론에 의거함⁷⁾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에 비해 고려는 二元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그 동안의 연구는 대개 후자적 측면만을 크게 강조하였다. 하지만 고려가 전자와 같은 ‘군주론’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고는 왕권의 절대성 이념을 구축하고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 고려왕실이 채택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고려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모하여 나갔는지도 아울러 확인해볼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연구목표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大妃의 교서 하나로 이루어졌던 고려 왕조의 멸망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고려전기 龍孫意識을 통한 권력의 독점

이 장에서는 고려 왕조가 왕권의 절대성 이념을 구축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채택한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우선 살펴보겠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신성예의 가탁은 통일신라 이후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고려 역시 신성예의 가탁보다는 天命

성리학 수용 이후 天命과 修身의 관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는가에 치우쳐 연구되었다. 관련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현철, 1995, 「高麗末期 士大夫의 理想君主論」 『동방학지』88 ; 한정수, 2005, 「고려시대 군주관의 二元的 이해와 정치적 상징」 『國史館論叢』106.

4) 한정수, 2005, 「고려시대 君主觀의 二元的 이해와 정치적 상징」 『國史館論叢』106.

5) 한정수, 2005, 앞의 논문, 3쪽 註 5) 참조.

6) 李成珪, 1993,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東洋史學會研究叢書1, 한울아카데미, 15쪽.

7) 조선은 왕과 관료·사족집단이 천명과 인심에 대한 해석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그것을 ‘일반의지’로 치환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고 한다.(송양섭, 2013, 「18세기 ‘공(公)’ 담론의 구조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조선시대 ‘公’ 담론의 새로운 모색』 한국역사연구회·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40쪽).

을 국왕권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었다. 왕건의 추대 과정에서 諸將들은 “하늘이 주는데 받지 않으면 도리어 죄를 받는 법입니다. 이제 德望이 공보다 뛰어난 이가 없는데, 어찌 하여 天命을 어기고 獨夫의 손에 제압을 받으려 하십니까?”⁸⁾라고 하여 ‘聖人君主論’에 의거하여 태조의 즉위가 정당함을 설파했다. ‘성인군주론’은 天의 권위를 매개로 德이 뛰어난 인간이 임금이 된다는 추상적 개념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諸將들이 天命과 德望을 함께 운위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성인군주론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태조 자신도 즉위의 정당성을 天命에서 구했다. 그는 연호를 天授로 삼아 자신의 즉위가 하늘에서 부여된 것임을 선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신하들에게 “짐이 비록 너희들의 힘으로 여기에 이르렀으나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었겠는가? 천명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너희들이 감히 어찌할 수 있겠는가?”¹⁰⁾라고 하여,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천명에서 구하였다. 태조가 이처럼 성인군주론을 펼친 이래로 고려의 역대 국왕들은 遺詔나 즉위조서를 통해 유사한 논리를 구사하여 왕위 계승을 정당화시켜 나갔다.

하지만, 이처럼 천명과 천명의 거울인 人心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신성예의 가탁으로 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구축하려는 ‘전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천명은 역성혁명의 근거이기도 했다. 따라서 천명만으로는 왕권의 절대성 이념이 보장되기 어려웠다. 천명에 대한 해석권은 사실 一人이나 一家에 의해 독점되기 어려웠다. 天譴을 천인감응론에 의거하여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천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일망정 왕권의 절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천명 이외에 왕위를 聖化하는 또 다른 장치가 요구되었다.¹¹⁾ 이 점에서 고대적 신성왕권은 왕권의 절대성을 보증하는 유효한 장치가 될 수 있었다.

사실 국왕은 사회 전체를 상징하며 어느 한 부분과 자신을 同一視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王位는 어느 지역에서나 또한 어느 시대이거나 다소간 신성한 자리”였다.¹²⁾ 따라서 왕권을 聖化하는 수단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형태로든지 있기 마련이다. 왕도정치론을 내세웠던 조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의 국왕들은 龍飛御天歌로 왕권의 聖化를 도모하는 한편, 온 세상에 임금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率土之濱 莫非王臣’의 관념 아래 鬼神까지도 주재하는 ‘神人之主’로 자신을 표상하기도 했다.¹³⁾

8) “天與不受 反受其咎 當今德望 靡有居公之右者 豈可違天命 受制於獨夫之手乎”(『의재난고』 9상 忠憲王世家).

9) 李成珪, 1993,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東洋史學會研究叢書1, 한울아카데미, 15쪽.

10) “太祖策杖立 厲聲叱之曰 朕雖以汝輩之力至此豈非天乎 天命已定 汝敢爾耶”(『고려사』 권127 열전40 桓宣吉傳).

11) 뒤에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고려 왕가는 “우리 신성하신 태조에 미쳐서 天命에 응하였다. 여러 나라를 통일하여 빛을 거듭하고 경사를 포개었다. 龍孫이 계승하여 일어나서 큰 기업이 길이 성하였다”라고 하여 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天命과 함께 龍孫이라는 신성성에서 구하였다.

12) E. E. Evans-Pritchard, "The Divine Kingship of the Shilluk of Nilotic Sudan", in *Essays in Social Anthropology*(Faber and Faber, London, 1962), p. 84(李基東, 「新羅 王權 연구의 몇 가지 前提—中古 期 王權과 신분제, 종교의 相互 關係—」 『신라문화』22, 4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려 왕가 역시 초월적 존재에의 가탁을 통해 권위를 높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왕권의 절대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왕권의 절대성을 가장 손쉽게 보장하면서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혈통의 유래를 聖化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월의 가탁은 당시 사회적 효용성을 상실한 낡은 방식이기도 했다.¹⁴⁾ 왕이 하늘의 아들이라거나 자신이 부처라는 정통성 이론은 통일신라 이후에는 거의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전략이었다.¹⁵⁾ 따라서 고려 왕가는 초월적 권위에의 가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점에서 高麗 世系에서 왕권의 신성화가 婚姻談 부분에서만 이루어졌음에 착목한 견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⁶⁾ 우선, 고려 왕가는 ‘始祖’ 그 자체를 神聖으로 삼지 않고 혼인을 통해 神聖성을 부가시켰다. 삼국은 시조의 혈통 자체에 神聖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誕生の 神異-神異의 行績-死後의 神異」라는 형태로 시조의 설화를 일대기적 완결성을 갖는 구조로 짚으로써 神聖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에 비해 고려 왕가의 신성은 혼인담에 그칠 뿐 그것이 일대기로 연결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호경과 女山神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작제건과 용녀, 용건과 몽부인 사이의 혼인담으로 재현되고 반복되었다. 한편, 왕가의 聖化는 父系가 아니라 女系의 신성에서 가미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결국, 고려 왕가의 신성은 시조 자체가 神聖이 아니며 여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성을 수혈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고려 왕가가 채택한 가탁의 전략은 고대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중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런데 고려세계의 이러한 神異한 혼인담을 통해 구현된 왕가의 신성성은 이후 ‘龍孫意

13) 정도전은 이성계의 즉위를 “하루아침에 즉위하여 神과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 一朝作其即位 爲神人之主”라고 표현하였고(『三峯集』 권7 朝鮮經國典 上 禮典), 문종은 厲祭의 제문에 “내가 덕이 박한 사람으로 한 나라의 神과 人의 주인이 되어 한 물건이라도 그 있을 바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였다. …(중략)… 너희 귀신들은 흠으로써 흠을 이어가고 乖憤한 기운을 깨끗이 거두고 生生하는 본래의 덕을 布施하기 바라노라.; 予以涼德 忝一爲國 神人之主 常懼有一物之不獲其所者 …(중략)… 惟爾鬼神 思以善繼善 收霽乖憤之氣 以布生生之本德”(『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9월 계해조)”라고 하여, 神과 인간의 주인으로서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14) 중국에서 漢代 이후에 황제의 정통성 이론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성인천자론’이었다고 한다. 즉, 황제가 天神 또는 그 分身이라는 신성론은 그 이후 사라져 ‘天子’조차도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이 그를 도와 아들로 삼았다”[天之子之]는 뜻으로 해석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李成珪, 1993,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東洋史學會研究叢書1, 한울아카데미, 1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물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전략이 취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궁예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미륵관심법을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시대착오적이었다. 왕즉불 사상은 중고기에 사용되고 통일신라 이후 이미 폐기 처분된 전략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궁예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했던 것이다.

16) 金烈圭, 1975, 「高麗史 世家에 나타난 ‘神聖王權’의 意識」, 『진단학보』40, 180쪽.

17) 기존 연구(한정수, 앞의 논문, 3쪽 註 5)에서는 諸神이나 부처로부터 加護를 받는 것을 ‘중세적’ 신성군주론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중세적 군주론’의 일환일지언정 ‘신성군주론’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성군주론이라고 하면, 적어도 왕위의 정당성을 초월적 존재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諸神의 가호로부터 왕위의 정당성을 구하는 것은 왕조국가라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그것을 ‘신성군주론’이라고 명명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識'의 정착을 통해 지속되고 재창출되었다. 즉, '高麗世系的' 설화의 전승을 통해 왕가의 先系血統의 '초월성'과 '비범성'을 널리 알렸다. 또한 그러한 고려세계라는 '허구적' 세계를 바탕으로 고려 왕가는 龍王의 후손 내지 龍의 精靈에 감응하여 출생한 '龍孫'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계혈통의 초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허구적인 추상의 세계에서 창출된 왕가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을 현실의 세계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고려 당대인들은 왕건의 후손을 용손이라고 인식했고 그렇게 호칭했다. 명종대 高惇謙이 文宗의 손자이자 朝鮮公 王燾의 아들인 王源의 혈통을 “公의 世系는 龍孫으로부터 나왔고, ●衣와 작위를 이어 나라의 울타리가 되었도다.”¹⁸⁾라고 贊한 것이나 원종대 李承休가 원종의 아들인 순안후를 “三韓 東海의 龍孫”¹⁹⁾이라 지칭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은 용손의식이 고려 초부터 구축된 인식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필이면 용손과 관련된 기사들이 대개 무신정변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용손인식의 주요 바탕이 되는 설화인 高麗世系마저도 의종대 인식의 소산으로 흔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용손인식은 고려 초부터 왕가에 의해 전파된 인식이라 여겨진다. 용손인식은 고려 왕손이 龍王의 후손이거나 龍의 精靈에 감응하여 출생한 후손이라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용왕은 우리나라 고유의 龍神崇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훈요10조에 “朕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燃燈과 八關에 있는데, 燃燈은 事佛하는 바이고 八關은 天靈과 五嶽·名山大川 및 龍神을 섬기는 바이다.”²⁰⁾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는 태조 대부터 용신을 국가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1) 군자의 나라가 바다 동쪽에 솔밭처럼 셋이 있었다. 대대로 임금을 세웠는데, 하늘이 예지 있고 총명한 이를 내었다. 알 속에서 나온 이는 赫居世요, 해의 아들은 朱蒙이었다. 百家로 건너와서 백제가 되었고, 세 성씨를 雉姓이라 하였다. 우리 신성하신 태조에 미쳐서 천명에 응하였다. 여러 나라를 통일하여 빛을 거듭하고 경사를 포개었다. 龍孫이 계승하여 일어나서 큰 기업이 길이 성하였다(“迄我神聖 應天符命 一統群邦 重光豐慶 龍孫嗣興 鴻業長盛”; 『동문선』 권28 冊 文王哀冊)

2) 지금 이 東韓의 땅도 일찍이 삼분되었다. 그래서 우리 太祖가 創業하던 때에, 行軍福田 四大法師 能兢 등이 글을 올리기를, “듣건대, 大唐에 세 가지를 모아 하나로 귀일시키는 妙法華經과 天台智者의 一心三觀禪法이 있다 합니다. 聖君께서 三韓을 합하여 한 나라로 이룬 것과 풍토가 서로 합치되니, 만일 이 법을 구하여 세상에 널리 행하도록 한다면 뒤를 잇는 龍孫의 수명이 연장될 것이고, 왕업도 끊어지지 않아서 항상 한 집안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위의 자료는 용손의식을 나타내는 기록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 중 가-1)은 박

18) “公之世系 出資龍孫 ●衣襲爵 爲國藩垣”(『王源墓誌銘』). 이 묘지명은 명종 원년에 高惇謙에 의해 작성되었다.

19) 『動安居士行錄』 卷4 賓王錄 并序.

20) “其六曰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 하4월조).

寅亮이 찬술한 文王哀冊인데, 그에 따르면 고려는 태조가 天命에 응하였고 龍孫이 계승하여 큰 기업이 길이 성하였다고 하였다. 문종이 사망한 직후 작성되었을 위의 기록에서 왕건 이후의 역대 군왕을 ‘용손’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손인식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문종대에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2)는 원종에서 충숙왕 13년까지 활약한 閔漬가 찬술한 글에 인용된 말 중에 용손이 있어 주목된다. 태조대의 승려 能兢이 태조의 후손을 용손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민지의 인용이 능공의 말을 원래 있는 그대로 한 것인지 확실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에 의거한다면 태조대부터 왕가를 龍孫家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용손으로 직접 지칭한 경우는 아니지만 혜종의 사례는 주목해볼만 하다. 혜종은 어머니 장화왕후가 일찍이 포구의 龍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낳은 아들인데다가 본인 자신도 항상 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당시 진정한 용의 아들[龍子]로 인식되었다.²¹⁾ 사실 이것은 『고려사』 后妃傳에 전하는 내용인데, 「후비전」의 서문이 李齊賢의 諸妃傳序에서 취한 것으로 보아²²⁾ 고려 후기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문이 유사하다고 하여 본문의 내용까지 이제현의 글에서 따왔다고 볼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혜종에 대한 龍子 지칭이 고려초기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상의 추론에 따르면 고려는 태조 대부터 龍神을 국가적으로 섬기는 전통이 있었으며 능공과 혜종의 사례에서 용손인식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건대, 국초부터 왕가를 용손가로 보는 인식이 존속했다고 하겠다.

이처럼 국초부터 고려세계적인 허상에서 구축된 신성한 혈통인식은 사실 그것의 口傳이나 서책으로의 간행만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다. 끊임없는 왕권의 신장과 권위의 혁신을 통한 재정비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초월에 가탁한 신성이란 사실 중세시기에 통용되기 어려운 논리였다.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 유학은 그와 같은 왕가의 神聖에 흠집을 내기에 충분한 논리를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세계적 설화’의 전파로 창출된 왕가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고려 왕가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것은 독점과 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끊임없는 근친혼의 시행을 통해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냈고²³⁾ 小君의 배출을 통해 신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배제시켜 나갔다.²⁴⁾ 그리고 그 결과 ‘고려세계적’ 허상에서 구축된 용손이라는 神聖에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어 왕가의 권위를 지속시켜 나갔던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왕권

21) 『고려사』 권88 후비1 태조 장화왕후조.

22) 변태섭, 1987,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100쪽.

23) 고려는 근친혼을 지속시키기 위한 세부적 전략도 짜두었다. 諱稱姓制의 마련이 그것이다. 사실 인류학에 의거하면 근친혼을 지속하였던 집단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은 일종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곤 한다고 한다. 그리로 諱稱姓이나 鄉里制가 고려 왕가가 그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둔 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즉, 근친혼한 공주들은 자신의 母나 外祖母 등의 姓을 諱稱하게 함으로써 개성왕가의 일원이면서도 해당 휘칭성의 성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동일한 원리는 왕자의 鄉里勢力에도 적용되었다고 판단된다.

24) 순수한 혈통의 보존은 철저한 자기배제에서 시작되었다. 소군과 국서가 배제의 아이콘이었다.

의 절대성 이념을 보존시켰고 아울러 여러 번의 강력한 도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 왕가에 의한 왕권의 독점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 이자겸과 묘청의 반란을 거치고 무신정변을 지나는 사이에 왕권은 계속 약화되었고, 무신정권기가 되자 국왕은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권위만 겨우 유지한 채 정치권력을 사실상 거의 상실하였다.²⁵⁾ 이러한 실권의 상실은 자연히 권위의 위축을 초래시켰으며 나아가 龍孫이 부정되는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용손은 12代로 끝난다는 참언의 유행이 당시 왕가가 처한 곤란한 현실을 대변한다. 明宗代 李義旼은 “龍孫十二盡”이라는 참언을 믿으며 왕이 되기를 꿈꾸었다.²⁶⁾ 또한 元宗代 金通精의 삼별초 부대가 제주도로 가는 것을 보고 “龍孫은 12대에 끝나며 남쪽으로 가서 帝京을 이룩한다[龍孫十二盡 向南作帝京]”는 讒說이 징험되는 것으로 믿었던 判太史局事 安邦悅은 제주도로의 남행에 동행했다고 한다.²⁷⁾

하지만 이러한 龍孫十二盡의 유행은 당시 고려 왕가가 왕권의 독점권을 여전히 굳건히 지켜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최씨 정권의 등장 이후 국왕은 정치권력을 거의 모두 빼앗겼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성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당시 개성왕가는 群臣과 百姓 위에 君臨한다는 국왕의 절대성 이념만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 점은 무인집정들이 왕실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했던 행동에서도 드러나지만²⁸⁾ 여러 명의 왕을 갈아치우면서도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던 최씨 무인집정들의 태도에서 좀 더 여실히 드러난다. 최씨 집정자들이 사실상 국왕의 위에 군림하면서도 왕이 되지 않은 이유를,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신분제의 존속과 아울러 대몽항쟁의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구하고 있다.²⁹⁾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당시 집정들은 국왕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이의민은 실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木子得國이라는 참언에 신라부흥이라는 명분을 덧붙여 왕이 되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천한 자신의 혈통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꿈이었다. 더구나 전대 이래로 구축된 왕가의 신성성이 존속하는 한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꿈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木子得國보다 왕가의 신성성을 허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참언이 ‘용손십이진’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해당 참언이 명종대부터 원종대의 기록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임금이 되고자 했던 무인집정들에 의해 당시 처음으로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의 참언이 당시에 재해석되어 의도적으로 널리 전파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록에는 없지만 최씨정권도 이의민과 동일한

25) 이명미, 2010, 「奇皇后세력의 恭愍王 폐위시도와 高麗國王權」 『역사학보』206, 27쪽.

26) 『고려사절요』 권13 명종 23년 12월조 ; 『고려사』 권128 열전42 李義旼傳.

27) 『고려사절요』 권19 원종12년 5월조 ; 『고려사』 권130 반역 裴仲孫傳.

28) 여기에서 왕권의 상징성 유지에 있어 왕실의 근친혼은 상당히 주효한 전략이었음이 입증된다. 이의방·정균·최충수 등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뒤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왕가의 권위에 기대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것이 발미가 되어 정권이 붕괴되었던 사실은, 그 만큼 당시 왕가의 신성성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이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9) 나만수, 1990, 「高麗 明宗代 武人正權과 國王」 『成大史林』6 ; 김당택, 1986, 「高麗 崔氏武人政權과 國王」 『한국학보』42.

전략을 구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무리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후삼국의 분립과 같은 ‘통일전쟁’을 거치지 않고 易姓革命을 이룬다는 것은 본래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天命에다가 龍孫이 덧붙여져 신성왕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개성왕가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최씨집정 역시 용손십이진이라는 참언을 전파하는 것으로 왕가의 신성성을 허물고자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의민과 최씨집정이 용손십이진의 전략을 구사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달랐을 수 있다. 최씨집정자들이 왕이 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당대의 기록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위의 전략은 왕가의 신성성을 허물어트림으로써 자신들의 권력행사를 좀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구사된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용손십이진의 유행은 국왕권을 능가하는 무인집정조차도 무력만으로 왕가의 신성성을 허물 수 없었던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은 그만큼 고려왕가를 신성왕가로 보는 인식이 당대에 팽배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왕가의 신성성 궤멸보다 무인정권의 붕괴가 먼저 이루어졌다. 물론 무인집정의 전략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龍孫 그 자체를 부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왕을 교체하는 논리로 龍孫認識이 사용되기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원종 9년에 대몽항쟁의 주도자인 金俊父子를 몽골이 소환하자 將軍 車松祐가 “용손이 비단 今上만 있을 뿐이겠는가? 諸王이 진실로 많이 있다. 하물며, 태조도 장군의 거사로 즉위하였으니 무슨 의심과 염려가 있겠는가?”³⁰⁾라고 하여 원종의 폐위를 종용하였다. 또한 원종 10년에 사공 李應烈은 “龍孫이 한 사람뿐이 아닌데 하필 지금 임금이라?”³¹⁾라고 하여 임연이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 滄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임금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표상하던 용손이 국왕을 교체하는 논리로 변질 사용된 것이다.³²⁾ 이러한 논리의 수용·확산은 차후 개성왕가만이 고려의 국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무인정권은 무너졌다. 그 뒤 고려 왕가는 몽골황가와 밀착을 이룸으로써 왕권의 강화와 권위의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용손의식은 그 뒤로도 한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다음의 글을 보자.

나) 다만 애석한 일은 本朝의 仁宗紀에 僞박당했다고만 말하고, 임금 자리(天位)를 다시 복구하여 마침내 그 자손에게 좋은 계책을 영구히 전해준 일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하나의 결점이라 하겠다. 어찌 ‘난을 다스림은 忠臣에 힘입고, 龍孫이 면면히 이어져 끊어지지 않았다’는 한 구절을 첨가해서 덧붙이지 않았는가? 선생이 몰라서가 아니라 간략하게 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리라.³³⁾

30)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金俊傳.

31)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0년 6월 임신조.

32) 龍孫이라는 관념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龍孫十二盡說’나 그와 연관된 ‘木子得國說’의 계기로 인해 반란 명분이 되는 등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金成煥,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34~237쪽).

위의 글은 충렬왕 22년경에 진주부사로서 『제왕운기』의 印刊을 주관했던 李源이 跋文으로 남긴 글이다. 그에 따르면 이원은 『제왕운기』의 저자인 이승휴가 仁宗紀에서 이자겸의 반란을 진압한 사실을 쓰면서도 “난을 다스림은 忠臣에 힘입고, 龍孫이 면면히 이어져 끊어지지 않았다”는 한 구절을 쓰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다. 어쨌든 이원의 글로 보아 충렬왕대까지 개성왕가를 용손으로 본 인식이 존속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원종 14년에 순안후 종을 모시고 원에 사신으로 갔던 이승휴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휴는 원종 14년 9월 1일에 원의 중서성에서 베푼 연회에 참석한 뒤 “萬古 中都의 鳳省(중서성 : 필자 주)에서 특별히 빛나는 잔치를 열었어라. 三韓 東海의 龍孫께서 성대한 예식을 관람하였네.”³⁴⁾라는 내용으로 된 감사의 글을 순안후에게 올렸다. 원종의 아들인 순안후를 ‘동해의 용손’이라 지칭했던 것이다. 이러한 용손인식은 고려 후·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충숙왕대의 글로 추정되는 「誕生元子祝上疏」題下の 글에서 저자 息影菴³⁵⁾이 “주상께서는 百代의 용손”³⁶⁾이라고 말한 것이나 태조대 승려인 能兢의 말을 재인용하는 형태로 언급된 것이긴 하지만 閱漬가 ‘龍孫’에 대해 언급한 점으로 보아, 그러한 인식은 고려 후기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용손의식은 무신정권을 지나는데 동안 약화되었고 몽골에 복속된 것을 계기로 쇠퇴의 길을 걸어 그 사회적 효용성을 거의 잃어버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다.

3. 고려 후기 왕권의 상대화와 ‘廢假立眞’ 논리의 통용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에서는 뛰어난 德性을 가진 聖人에게 하늘이 임금의 지위를 하사하였다는 ‘성인군주론’과 초월한 존재에 가탁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신성군주론’이 병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이르러 후자의 논리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33) “但所惜者 於本朝仁宗紀 只言見逼 不言其終復天位 永貽孫謨 是一缺耳 胡不添撥亂賴忠臣 龍孫綿不已之句 而足之乎 先生非不知 撮略故爾”(『제왕운기』 後題). 한편, 이원의 이러한 후제에 대해 이승휴는 아래와 같은 말로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其論仁廟紀 只言見逼 不言其終復天位 永貽孫謨 而添撥亂賴忠臣 龍孫綿不已之句 補其缺處 眞所謂點鐵成金者也 多感多感”(『動安居士集』 雜著 寄晉陽牧伯李尙書諱幢書).

34) 『動安居士行錄』 卷4 賓王錄 并序.

35) 息影菴은 李齊賢·李崱 등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고려 후기의 인물로 추정될 뿐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형편이다. 다만 식영암이 지은 「誕生元子祝上疏」에서 원자로 호칭되었던 인물이 용산원자로 추정되므로, 이 글은 충숙왕대의 글로 추정된다. 그에 대해서는, 金鉉龍, 1983, 「釋息影菴의 正體와 그의 文學」, 『국어국문학』 89를 참조하기 바란다.

36) 千刹分潭月之輝 萬機交感 兩宮集渚虹之慶 一國舉欣 恭惟主上 以百代龍孫 爲萬乘駟馬 天心有賚 肇臻熊夢之祥 世德無愆 俄見燕禴之報 會金枝之寢衍 宜木運之遐延 伏念生遇文明 職存福利 常抱百男之願 傾倒愚衷 頃蒙千聖之恩 挺生哲嗣 遙承吉語 曷極權情 故茲涓日之良 于以祝年之永 伏願坤儀配德 震位承休 龍顏穆穆之光 並照於千秋白日 螽羽詵詵之美 終傳於萬歲清風(『동문선』 권111 誕生元子祝上疏).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왕이 초월적 권위에 가탁하지 않게 된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됨으로써 황제로 자칭할 수 없었던 외교적 현실에서 비롯된 측면도 강했지만,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여러 형태의 정치적 경험을 겪은 가운데 절대적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토대가 형성된 데에 있다고 하였다.³⁷⁾ 한편, 그 사회적 토대와 관련하여 성리학파 같은 도덕적 합리주의 사고체계의 수용 및 1세기 간 지속된 대원관계도 거론되기도 했다.³⁸⁾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되는 일련의 연구가 제출되었다. 대원관계 속에서 고려 국왕권이 상대화되었다는 것이 그 요체인데,³⁹⁾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신정권기 이래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 왕가는 원 황실과의 혼인을 주도하여 마침내 고려의 군주이자 몽골의 부마이며 정동행성의 승상이라는 세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⁴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추된 왕권의 회복을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 고려의 군신관계가 상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전까지 고려의 국왕은 고려 영역 안에서는 이론상 누구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일인독재권’을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여원관계가 지속되는 속에서 상황은 일변했다. 이제 원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고려의 국왕이나 신하는 둘 다 동등하게 元帝의 신하일 수밖에 없었다. 고려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동일한 신하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고려의 정치권력은 몽골황제의 권력과 권위가 정점에 존재하는 가운데 그 아래에서 고려의 정치권력 가운데 누가 그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가”에 따라 최고 권력조차도 재편될 가능성이 생겼음을 의미했다.⁴¹⁾ 요컨대 여원관계 속에서 고려 국왕권의 절대성 이념이 부정되고 군신관계의 상대화가 촉진되었던 것이다.⁴²⁾

결국, 왕권의 상대화는 “몽골 황실이나 황제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고려의 다른 권력주체가 등장할 경우” 고려 국왕이 그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⁴³⁾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의

37) 李泰鎮, 1993, 앞의 논문, 105-106쪽.

38) 한정수, 2005, 앞의 논문, 9쪽.

39) 森平雅彦, 2009, 「威鎮東方極邊未附日本國邊面勾當—元帝國における高麗の機能的位をめぐって—」 『13-14세기 동아시아와 고려-고려·대원관계의 성격탐구』, 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동북아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 모리히라 마사히코, 2011, 「제국 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원 제국 속에서 고려의 기능적 위치-」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동북아역사재단·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엮음), 동북아역사재단, 194쪽 ; 이명미, 2010, 「奇皇后세력의 恭愍王 폐위시도와 高麗國王權」 『역사학보』 206.

40) 森平雅彦, 1998, 「駙馬高麗國王의 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호, 21~23쪽 ;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출판부 ; 金石煥, 2011, 「몽골제국의 對高麗政策의 一面-高麗國王의 駙馬化 및 行省官 兼職을 중심으로-」 『서울大 東洋私學科論集』 35, 53~54쪽.

41) 이명미, 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박사학위논문, 58쪽.

42) 한편, 왕권의 상대화는 고려 국왕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하는 집단에게 권력을 분점시키는 측근 정치를 양산하게 하였다. 이후 측근정치가 지속되는 와중에 원조에 의해 重祚政治가 계속 시행됨으로써 고려 왕권의 상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43) 이명미, 2012, 앞의 글, 60쪽.

미했다. 즉, 이것은 전기 이래로 지속되었던 개성왕가의 왕위 독점권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상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고려왕은 고려왕·부마·승상이라는 세 가지 지위를 한 몸에 일체화시킴으로써 대원관계 속에 한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고려 왕권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몽골황실과의 지속적인 연혼을 이룸으로써 원 황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확대하여 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개성왕가에 의한 왕위 독점에 흠집을 내는 일은 왕가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 왕위를 둘러싼 고려왕과 심왕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투쟁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심왕가는 고려 국왕위를 두고 충숙왕의 가계와 지속적으로 경쟁하였다. 심왕가의 사람들은 龍孫이긴 했지만 先王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것처럼 여러 번 고려 왕위를 두고 일련의 경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심왕가가 기존의 ‘고려왕가’⁴⁴⁾만큼이나 원 황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⁴⁵⁾ 여하튼 국왕위를 두고 심왕가와 사이에서 지속된 일련의 경쟁은 고려인들이 고려 국왕위에 대한 인식을 변경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고려왕위는 ‘고려왕가’의 전통적 내부 계승의 원리에 따라 특정인에 의해 자동 승계되는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산물’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형성을 그러한 경쟁이 유도했을 것으로 보인다.⁴⁶⁾

그러한 인식이 정말로 고려후기에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당시에 小君들이 보여준 행보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고려 전기 이래로 용손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왕가에서 배제되었던 小君들이 고려 후기에 이르러 왕위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원 황실 사람과의 친분이 고려왕위를 도전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되자, 그 동안 왕가의 일원이면서도 국왕의 계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던 소군들의 왕위 도전이 속출하였다. 소군에 의한 왕위도전은 충렬왕의 小君인 王湑에서 비롯되었다. 王湑는 본래 忠烈王과 崔嬪의 婢 盤珠 사이의 소생으로 고려 전기 이래로 왕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전형적인 소군이었다. 왕서는 당시 齊國大長公主의 사랑을 받아 소군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궁중을 출입하는 특혜를 누렸고⁴⁷⁾ ‘中郎將’이라는 벼슬까지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꿈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王

44) 여기서 필자가 말한 ‘고려왕가’는 기존에 왕위를 계승하고 있던 충렬왕-충선왕-충숙왕으로 이어지는, 좁은 범위의 왕가를 의미한다.

45) 물론 심왕가가 고려 국왕위를 주장하게 된 근원적인 근거에는 충선왕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다. “上王(충선왕 ; 필자 註)이 인종 황제에게 아뢰어 충숙왕으로 고려왕을 삼고 왕호로 세자를 삼아 이미 정한 명령이 있었는데, 영종대에 이르러 충숙왕이 백안독고사와 모의하고 김의로 하여금 충선왕을 달래게 하여 왕호의 世子印을 빼앗았다.”는 柳淸臣과 吳潛의 주장(『고려사』 권35 충숙왕 15년 추 7월 기사조)에 의거한다면, 충선왕이 처음에 왕호에게 고려의 세자 지위를 약속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北村秀人, 1996, 「麗末に於ける立省問題について」 『文學部紀要』 14-2, 北海道大學文學部, 136쪽), 그렇다면 심왕이 고려 국왕위를 나중에 이어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6) 원에 의해 지속된 중조정치 역시 그러한 인식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7) 소군은 본래 어려서 출가함으로써 왕위 계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왕가의 서얼이었다. 소군에 대해서는, 이정란, 2003, 『고려시대 서얼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 뒤를 이어 황제의 宿衛가 되고자 하였다. 물론 禿魯花를 거느리고 入元하라는 원조의 명령이 丞相 安童의 말을 청탁하여 이루어낸 ‘조작’이었음이 밝혀져, 그는 결국 충렬왕 2년에 祝髮되었고, 48) 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소군들의 도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공민왕 12년에 원조에 의해 폐위된 공민왕을 대신하여 고려의 왕으로 책봉된 것으로 유명한 德興君도 그와 유사한 시도를 감행했다. 사실 덕흥군은 원조에 의해 고려의 임금으로 추봉되기 이전부터 왕이 되려고 모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 5년 10월에 공민왕은 이인복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원의 조정에 올렸다.

다) “祖王 이래로 (임금의) 서얼인 아들은 반드시 중이 되게 하였으니, 그것은 적서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왕위를 엿보는 싹을 막는 소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塔思帖木兒(덕흥군 ; 필자 註)라는 자가 있는데, 스스로 일꾼기를 忠宣王의 얼자라고 하고 일찍이 머리를 깎았는데, 장성하자 還俗하여 京師로 달아나, 그곳에서 本國의 不逞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거짓말로 선동하고 인심을 현혹하고 있사오니, 이와 같은 자는 조정에 있어서 어찌 조금의 이익인들 있겠습니까? 그와 그의 당여들을 本國으로 돌려보내 주었으면 하옵니다.”라고 하였다. 49)

위의 글에서 덕흥군이 불령한 무리들을 이끌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덕흥군이 훗날 원과 기황후의 세력에 의해 고려왕으로 책봉된 사실, 공민왕 5년에 공민왕이 그의 환국을 강력하게 요구한 점 및 당시가 공민왕에 의해 奇轍의 주살이 이루어진 직후라는 점 등에서 미루어보건대, 그의 행위는 고려 왕위에 대한 도전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적어도 공민왕에게는 그렇게 해석되었던 것이다.

충혜왕의 소군인 釋器도 고려 왕위에 대한 도전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석기는 商人의 딸이자 단양대군의 家婢였다가 충혜왕의 후궁인 된 銀川翁主의 소생으로 전형적인 小君이었다. 50) 따라서 석기는 소군의 前例에 따라 공민왕 즉위년에 萬德寺에 출가한 상태에 있었는데, 51) 때에 元朝가 그를 원으로 불러들이려 하자 공민왕이 먼저 소환했다고 한다. 52) 공민왕의 행동은 아마도 당시 元朝에서 불령한 무리를 모으며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던 덕흥군의 사례에 비추어 ‘화근’을 미리 제거하려는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민왕의 그러한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석기는 공민왕 5년에 林仲甫 등의 역모에

48) “小君湑 初忠烈爲太孫 金俊以崔嬪盤珠納之 得幸生湑 公主亦愛之 出入禁中 號王小君 拜中郎將 欲襲王宿衛 賂康守衡以請 守衡以丞相安童言 來告曰 令湑率禿魯花來 二年 王以湑驕恣 剃髮爲僧”(『高麗史』卷91 列傳4 宗室2 忠烈王)

49) 遣政堂文學李仁復如元 上表謝 又上書曰 … 祖王以來 庶孽之子 必令爲僧 所以明嫡庶之分 杜覬覦之萌 今有塔思帖木兒自謂忠宣王孽子 亦嘗剃髮 及長還俗 奔于京師 誘致本國群不逞之徒 扇起訛言 眩惑人心 若此人者 其於朝廷 豈有小益 乞將此人及其黨與 發還本國(『高麗史節要』卷 26 公민왕 5년 10월).

50) 『高麗史』卷 89 列傳 2 后妃 2 銀川翁主 · 『高麗史』卷91 列傳4 宗실전 釋器.

51) 十二月辛卯 髮永陵孽子釋器 置萬德寺(『高麗史』卷38 公민왕 즉위년 12월).

52) 『高麗史』卷91 列傳4 宗室2 釋器.

서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혐의를 받고⁵³⁾ 제주도에 안치되었고, 공민왕 22년 12월에 결국 斬首되었다.⁵⁴⁾

이와 같은 소군들의 도전은 왕가의 신성성이 무너진 결과이자 원인이기도 했다. 사실 전기 이래로 고려 왕가는 소군들의 배제를 통해 용손으로서의 신성성을 유지하여 왔는데, 그들이 왕위에 도전하였다는 것 자체는 그 만큼 왕가의 권위가 추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군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결국 용손으로서의 왕가의 전통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神聖의 붕괴는 결국 개성왕가의 왕위 독점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살핀 소군들의 도전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원조에 의해 덕흥군이 고려의 국왕으로 책봉되는 결과를 낳았다. 덕흥군이 고려의 왕으로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은 왕가의 신성성 붕괴와 왕권 상대화의 결과였다. 물론 그것은 원조의 개입 및 奇皇后의 개인적 원한과 고려 왕권에 대한 기황후세력의 도전⁵⁵⁾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조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간 고려의 왕위를 전혀 넘볼 수 없는 차단막 안에 갇혀있던 ‘小君’⁵⁶⁾이 고려 왕위에 도전하고 중국에 고려인으로부터 덕흥군이 ‘新主’로까지 호칭되기에 이르렀던 배경⁵⁷⁾에는 신성왕가로서의 용손인식의 붕괴가 자리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성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개성왕가의 왕위 독점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선, 신성의 붕괴는 위와 같은 소군들의 도전을 낳았고, 나아가 소군들의 ‘잠재적인’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는 단계에 점진적으로 진입하게 하였다. 덕흥군이 원에 의해 고려의 국왕으로 책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李仁任은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마도 덕흥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新主’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파악하였다.⁵⁸⁾ 이인임의 그와 같은 판단은 당시 원조의 지지만 있다면 고려왕위의 계승에 소군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고려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고려인의 인식은 석기의 사례에서도 다시 포착된다. 공민왕 22년에 사망한 석기가 우왕 원년에 다시 되살아나 문

53) 석기의 역모는 충정왕의 즉위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였던 손숙경 등의 부원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현구, 1981, 「고려 공민왕의 즉위배경」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을 참조하기 바란다.

54) 『高麗史』 卷91 列傳4 宗室2 釋器 ; 『고려사절요』 권29공민왕 22년 12월조.

55) 이에 대해서는, 이명미, 2010,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56) “遣政堂文學李仁復如元 上表謝 又上書曰 … 祖王以來 庶孽之子 必令爲僧 所以明嫡庶之分 杜覬覦之萌”(『高麗史節要』 卷 26 공민왕 5년 10월).

57) 『고려사』 권126 열전39 李仁任傳.

58) 당시 원에 의해 공민왕이 폐위되고 덕흥군이 고려왕으로 책봉되자, 이인임은 “主上(공민왕)은 舊君이고 덕흥군은 新主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저 편안하고 배부른 것을 즐겁게 생각할 줄만 알았지 어찌 邪와 正의 所在를 알겠는가! ; 主上舊君 德興新主 愚民但知安飽之爲樂 豈知邪正之所在(『고려사』 권126 열전39 李仁任傳)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언급에서 덕흥군이 新主로 표현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많은 수의 고려인들은 덕흥군이 고려의 새로운 국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현구, 2004, 「新主(德興君)과 舊君(恭愍王)의 대결」 『고려정치사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명미, 2010, 앞의 논문, 23쪽 참조.

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석기와 닮은 사람에 대해 당대인들은 “용모가 빼어나고 위엄이 있었으며 말씨가 범상치 않은 점”을 보고 “진짜 王子”라고 여겼다고 한다.⁵⁹⁾ 본래 소군은 왕의 아들이지만 ‘王子’라고 호칭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런데 ‘석기’에게서 보이는 ‘비범성’을 보고 당대인들은 그를 ‘왕자’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고려전기의 경우, 국왕의 아들이 더라고 신성한 혈통이 아니라면 ‘왕자’가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석기처럼 좋지 않은 혈통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임금이면 왕자라고 여겼던 것이다. 석기에 대한 이와 같은 ‘王子性’의 인정은 곧 그의 ‘잠재적인’ 왕위 계승권을 승인한 것과 다름 없다고 하겠다.

결국 神聖의 붕괴는 소군들의 도전을 초래했고 그것은 다시 왕가의 神聖을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대인들은 이제 원의 지지만 있다면 심왕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소군들도 고려 왕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그들에게 고려 왕위에 대한 ‘잠재적인’ 계승권이 있다고 인식하기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 가서는 개성왕가의 왕위 독점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권이 龍孫이 아닌 小君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은 고려의 왕위 계승권이 개성왕씨가 아닌 他姓에게도 개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성립할 여지를 내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 문제를 다룬 논고에서는 덕흥군의 원자로 기삼보노가 내정된 사실을 개성왕가의 독점권이 他姓에 의해 강력하게 도전받게 된 실례로 평가하였다.⁶⁰⁾ 그에 따르면 기황후 세력은 고려의 왕권을 개성왕씨에서 기씨에게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덕흥군을 선택했다고 한다. 만약 그러한 기황후 세력의 숨겨진 의도가 실현되었다면, 중국에 고려의 국왕권은 왕씨에서 기씨로 변경되고 고려 영내에서 고려 왕가의 왕위 독점권은 완전히 부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실현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소군이 실제로 국왕에 즉위함으로써, 신성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소군’으로서 국왕에 오른 사람은 禍王이었다. 사실 고려의 小君은 『고려사』 등의 기록에 小君으로 직접 명명되거나 아니면 임금의 庶子 내지 孽子로 흔히 기록되었다.⁶¹⁾ 그런데 우왕의 경우 小君으로도 庶孽로도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모로 그는 前代의 소군과 동일한 위상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소군들은 대개 임금과 궁인 또는 기생 사이의 소생으로 그들의 母系혈통이 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왕의 생모인 반야는 賤系인 데다가 신돈의 애첩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기 이래로의 전통에 따르면 小君으로 불리며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조취의 일환으로 祝髮되어야 하는 운명의 사람이었다. 우왕은 실제로 소군으로 불리지 않았고 축발도 되지 않았지만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부적절한 혈통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점은 父王인 공민왕의 태도에서 엿보인다. 공민왕은 자신의 아들인 우왕을 궁궐로 데려온 이후에도 후손이 없음을 근심하여[王慮無嗣] 子弟衛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⁶²⁾ 이러한 공민왕의 태도는 牟尼奴(禍王의 아명)가

59) “釋器形貌奇偉 言語不凡 觀者皆謂 此眞王子也”(『高麗史』 卷91 列傳4 종실전 釋器).

60) 기삼보노의 존재는 당시 고려의 국왕권과 고려왕실의 권위가 몽골의 질서 아래에서 他姓에 의해 도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약화되고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명미, 2010, 앞의 논문, 22쪽).

61) 이정란, 2003, 『고려시대 서얼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자신의 아들이긴 하나 ‘소군’과 같은 존재여서 왕위를 성공적으로 이을 수 있을지, 이는 이후에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이처럼 ‘소군’이나 진배없었던 우왕이 성공적으로 왕위를 이었던 것은 당대의 여러 역사적 정황이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였다. 당시 반원정책을 통해 전대와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큰 정통성을 구축한 父王 공민왕의 유언, 이성계와 조민수의 힘겨루기 속에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이제현의 지지 및 실권자 이인임의 적극적인 조치 등이 우왕의 성공적인 즉위에 일정하게 기여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은 소군들의 ‘잠재적인’ 왕위 계승권을 승인하기 시작했던 당대의 변화라고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면 용손의식의 붕괴에 없었다면 우왕은 고려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며, 소군에 대한 잠재적 계승권의 ‘사실상’의 승인과정이 없었다면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왕의 즉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지속된 용손의식의 붕괴 내지 효용성의 감축은 결과적으로 우왕대에 이르러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데올로기의 부재를 가져왔다. 앞에서 살핀 소군들의 도전에는 언제나 元朝가 일정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원조에 있으면서 고려왕위를 엿보다가 결국 기황후의 세력에 의해 고려왕으로 책봉되었던 덕흥군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왕서와 석기의 도전도 사실 원과의 직·간접적인 관련 하에 이루어졌다.⁶⁴⁾ 그리고 이처럼 소군들의 도전에 원조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상 고려왕권의 정당성이 당시 원조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었던 당대의 정치구조와 직접 관련이 된다.

본래 고려 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국초 이래로 천명과 용손의식에 의해 구현되었다. 앞에서 살핀 문종의 애책문에서 보이듯이 당시의 국왕들은 태조가 받은 天命에 용손으로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혈통적 정통성에 기대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구하였다. 그런데 원에 복속된 이후 용손은 그 사회적 효용성을 다했고⁶⁵⁾ 天命은 元의 것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 고려의 왕들은 자연히 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元帝와의 관계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원제의 外孫이라거나 사위임을 강조하여 자기 왕위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입증하려 했던 것이 당대 국왕들이 취했던 일반적인 태도였다. 물론 태조의 후손이며 德으로 왕이 되었음을

62) 『高麗史節要』 卷 29 공민왕 21년 10월.

63) 이정란, 2003, 『고려시대 서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2~73쪽.

64) 예컨대, 왕서는 제국대장공주의 총애로 非望을 꿈꾸기 시작했고 끝내 원조의 權臣과의 연결을 통해 꿈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석기도 마찬가지였다. 승려였던 석기의 還俗이 원조가 그를 장차 소환하려고 한다는 소문에서 비롯된 점에서 보건대, 석기가 고려 왕위에 도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분명 원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5) 용손의 사회적 효용성 종말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고체계의 수용이 초래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하지만 한편에서 끊임없는 자신들만의 특권적 집단 의식을 창출하고 국가적으로 그것을 공유 받지 못한 고려 왕가의 실책이 가져다준 결과이기도 했다. 사실 그것은 배제를 통한 신성성의 유지와 독점을 통한 강화에 의해 이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배제는 소군들의 도전으로 무너졌고 독점은 원조의 요구로 근친혼이 공적으로 부정되는 宰相之宗이 성립됨으로써 소멸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附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며 부차적인 수준의 언급에 불과했다.⁶⁶⁾ 결국, 고려 후기 국왕위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원제와의 관계에서 주로 찾아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우왕대에 이르러 그러한 조건에 큰 변화가 생겼다.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이어지는 원조의 쇠약으로 고려왕이 정통성을 기댈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중원의 새 왕조인 명에 의지하면 되겠지만, 당시 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왕의 즉위를 오랜 동안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논리를 창출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전통적인 天命論은 건재했으나 天命論은 역성혁명의 근거이기도 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고려 왕가의 국왕 독점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없었다. 중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지원받을 수도 없고 또한 왕가의 신성성도 붕괴된 현실 속에서 고려 왕가는 고려전기의 용손을 대체할 만한 논리를 시급히 찾아야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당시 고려 앞에는 왕권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⁶⁷⁾ 더구나 우왕은 기존의 용손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천계의 혈통을 지니고 있어, 대안의 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하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색은 “선왕인 공민왕이 우왕을 자신의 아들이라 믿어 江寧大君으로 삼았고 중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과 대외적인 위기상황에서는 기존의 지배질서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⁶⁸⁾로 우왕의 정당성을 지지하였지만,⁶⁹⁾ 그것은 사실상 논리의 부재나 진배없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우왕대에 이르러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신진세력에 의해 廢假立眞의 논리가 제시되었다. 廢假立眞의 논리는 생각보다 파괴력이 컸다. 전대의 논리에 의거한다면 전혀 국왕이 될 수 없던 ‘소군’이었던 데다가 생모가 역적이자 승려였던 신돈의 애첩이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폐가입진의 논리를 쉽게 수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우왕의 非行非禮와 파행적인 정치를 낱낱이 설파하여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아울러 지적하며, “기존의 군신관계보다 天命의 대행자, 王政의 최고 책임자”로 군주의 위상을 객관화시켜 왕위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데올로기의 사실상의 부재가 禍王非王說과 天命論만으로 개성왕가의 오랜 국왕권 독점에 중지부를 찍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66) 예를 들어, 공민왕은 즉위교서에서 “(원로 대신들이) 내가 충선왕의 손자이자 충숙왕의 아들이며 덕망이나 나이로 보아 중묘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 나를 임금으로 받들겠다는 글을 천자에게 올렸으며, 천자께서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 오늘날 (나를) 국왕으로 책봉하셨다.”(以余爲忠宣之孫忠肅之子 以德以年 合主宗祧 獻書天子 願奉爲君 天子俯採其言 故有今日之錫命 ; 『고려사』 권38 공민왕 원년 2월 병자)라고 하여, 덕망과 신료들의 추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元帝의 책봉을 가장 중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67) 모리히라 마사히코, 앞의 글, 194쪽.

68) 『고려사』 권115 열전28 李穡傳.

69) 도현철, 1995, 앞의 논문, 17~19쪽.

맺음말

〈이정란, 고려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세속화’〉
에 대한 토론문

이명미

별 지 참 고

고려말 지식인들의 원·명 교체와 자아 인식

김인호

1. 머리말
2. 원·명의 교체와 인식
 - (1) 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 (2) 원·명의 교체와 정책의 전환
3. 원·명 교체 후의 양국에 대한 인식과 회고
4. 맺음말

1. 머리말

14세기 후반 중국과 한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중국은 100년 가까이 계속되어왔던 원 왕조의 지배력이 약화되었고, 각지에서 농민반란군이 봉기하였다. 이 가운데 새롭게 명이 중국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원은 대륙의 중심 무대에서 북방 지역으로 옮겨야 했다.

대륙의 정세 속에서 고려는 오랜 기간 받아온 원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이를 위한 정치적 분수령이었다. 그리고 명과의 사대 외교가 전개되었다. 이후 고려의 지식인들은 바뀐 대륙의 주인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다.

고려 지식인들은 원과 명의 교체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세계질서의 변화는 이들에게 충격적 사실이었을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원나라가 이들에게 과거 속의 추억으로만 남겨져 있던 것일까? 이 글은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다. 특히 원과 명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는 기존연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¹⁾ 이에 따르면 원은 종족 중심의 화이(華夷)개념을 약화시키고 형세와 문화를 중시하는 화이론을 제시하였다. 고려의 지식인은 원이 중국 중원을 차지했고, 천명을 받은 왕조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형세를 기준으로 명을 승인하면서, 점차 종족적 의미에서 이를 이해하였다. 그 결과 지식인들은 고려를 ‘소중화’로 모색하고 중화의 법에 따른 개혁정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대인들의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추구해야 할 논의가 남아 있다. 우선 당시 고려지식인들은

1) 도현철, 2000,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뒤바뀌는 국제질서에 대해 어떤 아쉬움도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들이 국제질서 교체에 대한 의문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시 지식인들은 대개 성리학을 공부했고, 이를 사유의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국제질서가 변화했다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당시 정치상황 등과 결부시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보려 한다. 나아가 이들은 과거 질서의 상징인 원에 대해 어떤 기억을 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지식인들은 변화한 국제질서에 따라 고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려 했을 것이다. 앞서 고려를 ‘소중화’로 인식했던 지식인들은 중화의 내용을 어떻게 보려 했을까? 물론 이 문제는 물론 고려사회의 개혁이나 유교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지식인들은 과거 원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을까? 고려말 원과 명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분명했겠지만, 소중화로서의 위상 확보 역시 동일하지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결국 세계질서의 변화가 당대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2. 원·명의 교체와 인식

(1) 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려와 몽골은 강동성에서 첫 번째 만남 이후 장기간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이후 고려는 몽골의 쿠빌라이와의 만남을 통해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²⁾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후 두 국가는 황제와 제후국으로서 사대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였다. 이 관계는 과거 송, 금의 형식적 사대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고려왕실은 원의 공주를 맞이하였다. 고려왕실은 부마의 위치로서 때로 원나라 정계에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국내적으로 왕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³⁾

고려의 지식인들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가졌던 적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되었다. 또한 일부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원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원의 관료가 되기도 하였다. 원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15명 정도였지만, 고려후기 주목받는 지식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⁴⁾ 이들은 대부분 원을 중화로 인정하는 인식과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그 중에 한

2) 쿠빌라이는 이른바 “고려의 토풍(土風)은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고려의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주, 1996, 『고려·원관계의 구조와 고려후기 정치체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3) 원황실의 지원은 고려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문벌 가문의 정치적 도전을 피할 수 있었다. 다만, 기씨와 같이 원황제의 황후가 되어 보가 큰 권위를 지니거나, 또는 원의 국왕 임명권에 기대어 정치적 모험을 시도할 수는 있었다.

4) 고희령, 2001, 『고려후기 사대부와 성리학 수용』, 일조각, 101쪽. 이 가운데에는 최해·안축 등을

사람인 이곡(李穀 : 1298~1351년)은

위대하구나 성스러운 원나라여 / 한당(漢唐)의 시대를 멀리 뛰어넘었나니
고대 제왕의 법도를 본받은 위에 / 공왕(空王)의 교설을 숭앙하고 신봉했네⁵⁾

원의 위대함은 한족(漢族)의 위대한 국가였던 한과 당을 뛰어넘을 정도였다. 이곡은 성리학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불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았다. 그는 ‘공왕(空王)’ 즉 부처의 뜻을 원이 숭상했음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원은 고대 중국의 법도를 이어받은 ‘중화’라는 개념이 그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다. 이것은 원이 중국지역을 차지했다는 형세론적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의식의 바탕에는 원이 유교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에 따라 이들은 몽골족이 세운 원을 중화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었다.⁶⁾

최해(崔瀼 ; 1287~1340년)의 경우는 원의 과거시험에 합격했던 첫 세대였다. 그는 당(唐) 이래 빈공과에 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원의 경우에는 ‘천하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여,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음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⁷⁾ 아울러 그가

지금 황원(皇元)이 위에 있어 지극한 인(仁)과 풍성한 덕(德)을 베풀어 천하를 기르고 있으며, (고려)왕국은 첫 번째로 귀부하였기 때문에 대대로 혼인의 영광을 입었고 엄격한 법도를 잘 지켜 위와 아래가 서로 즐거워하며 변경에 조그만 경계도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고 있으니, 실로 천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태평시대이다.⁸⁾

라고 하여, 긍정적으로 원의 시대를 인식하고 있음도 우연이 아니었다. 또한 최해는 원과 고려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원의 국제질서에 합류한 고려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이 중국지역을 차지한 정통 국가라는 인식이 내재해 있었다. 이승휴(李承休 : 1224~1300년)는 「정통을 서로 전수한 노래」에서 “오대(五代)와 조송(趙宋)에서 완안씨(完顔氏)의 금(金)을 지나 정통으로 서로 전해 우리 황제(필자주 : 원) 받들었다.”⁹⁾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그의 논리는 이 글의 주석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사람이 “금(金)이 요군(遼軍)을 무너뜨려 나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방전(傍傳)이 아니냐.” 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다.

금(金)은 조씨(趙氏) 송(宋)을 이겨 그 정맥(正脉)을 얻어, 마침내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으니 어찌 방전이라고 하겠는가.¹⁰⁾

위시하여 이곡, 이색 부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성리학 수용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5) 李穀, 『稼亭集』 권6, 大崇恩福元寺第一代師圓公碑, “皇矣聖元 軼漢跨唐 憲章古帝 崇信空王.”

6) 채웅석, 2003, 『원 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106쪽

7) 崔瀼, 『拙藁千百』 권2, 送奉使李中父還朝序

8) 崔瀼, 『拙藁千百』 권1, 海東後耆老會序

9) 李承休, 『帝王韻紀』 권상, 正統相傳訟, “唐五代趙宋完顔金 正統相傳奉我皇.”

10) 李承休, 『帝王韻紀』 권상, “金克趙宋得其正脉 而卒能一統天下 烏可謂之傍傳乎.”

이승휴는 천하를 통일한 주체가 정통성을 얻는다고 보았다. 그의 정통론 주장은 중국 지역의 현실적 지배자를 인정하겠다는 논리이다.¹¹⁾ 이승휴 이전까지 고려인의 시각에서 중국 역사를 정리한 경험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역사 정리는 당대 원과의 국제 관계 속에서 고려의 위상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고려는 원황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군주가 독자성과 함께 제국 지배층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¹²⁾ 고려의 지식인들은 이런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의 정통성과 위상을 강조해야 했다. 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고려왕실에 대한 반역으로 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김찬(金瓚)의 경우에는 당시 대부분 고려인들에게 부정적이었던 공녀(貢女)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사해(四海)가 모두 따라서 한 집이 되니 / 칙명으로 동토(東土)에서 공녀를 바치라 한다
 워낙 규중에 은밀히 감추었던 몸이라 / 관(官)에서 선발할 때 여러 눈 어이 거치라
 시름겨운 두 눈썹은 내리간 채 푸르고 / 억지로 쳐든 얼굴 부끄러워 흥당무
 울며 나무를 하직하는 어리디 어린 피꼬리요 / 날아서 깃 떠나는 젓먹이 제비 새끼들…
 부모 나라 멀어지니 혼이 끊어지누나 / 제왕성이 가까와도 눈물 그냥 흐르리…
 아들 낳아 기러기 중천에 솟 듯하고 / 후비도 되어 봉황의 울음에 화합하리
 하물며 지금은 황녀께서 하가 하니 / 피차에 황손들이라 남이 아니리¹³⁾

김찬은 공녀로 가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 알고 있다. 그는 공녀를 어린 피꼬리와 젓먹이 제비 새끼로 표현하였다. 그들이 부모나라를 떠나 울면서 간다는 인간적 슬픔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김찬은 이들이 원에서 아들을 낳거나 후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의 긍정성은 원황실에서 시집오는 공주와 함께, 사해(四海) 즉 세계가 하나로 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김찬은 양국의 핏줄이 섞여서 하나가 된다는 점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런 시각은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경우였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원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지닌 이곡의 경우에도 공녀 선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¹⁴⁾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고려인들이 이전의 중국왕조와 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11) 이에 관해 최근 형세·문화론적 화이론과 종족론적 화이론으로 구분하고, 원을 전자에 비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도현철, 2000, 앞논문 ; 채웅석, 2003, 앞논문 ; 김순자, 2007, 『한국 중세 한중관계사』, 혜안). 여기에 대해 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화이론과 정통론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런 주장을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이승휴의 정통론은 단지 형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선 정통왕조를 어떤 형태로든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김인호, 1997, 「이승휴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론의 방향」, 『한국사상사학』 9, 24쪽)

12)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대출판부, 124쪽

13) 『東文選』 권18, 七言排律, 童女詩, “四海遑遑枕一家 勅令東土進宮娥 閨居恐未藏身密 官選那堪閱眼多 薄掃愁眉兩斂翠 強擡羞面十分醜 稚鶯欲囀辭深樹 乳燕將飛失舊窠…父母國遙魂正斷 帝王城近淚猶沱…生子若教鴻舉絕 作妃當協鳳鳴和 矧今下嫁周姬在 彼此皇孫正匪他.”

14) 그는 원나라 조정에 공녀를 중지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稼亭集』 권8, 代言官請罷取童女書).

인식의 배경에는 이전의 형식적 책봉 관계에서 실질적 제후국으로서의 편입과 정치적 간섭이 있었다. 원은 고려에 대한 책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고, 이로 인해 고려국왕은 부자간의 왕위를 둘러싼 정쟁이나 국왕 교체를 겪어야 했다. 이는 과거 송왕조 등과 같은 형식적 책봉과는 크게 다른, 실질적인 천자-제후의 책봉관계로 전환된 것이다.

원과 고려와의 관계는 이전의 중국왕조와 분명하게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의 수준은 과거 중국보다 질적이나 양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교류 확대의 증가 부분은 통계적으로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는 원나라 이전보다 많은 물량이었으며, 국가나 개인간의 무역도 증가하였다.¹⁵⁾

나아가 원에 진출한 고려인들은 만주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고려장(高麗莊)을 만들기도 했다. 물론 고려에 진출한 외국인들의 경우도 이전보다 많았다.¹⁶⁾ 이런 가운데, 고려는 원의 경제와 문화권 속에 깊숙하게 편입되어 갔다. 이후의 사회경제적 현상은 당시 대표적 지식인인 이제현의 표현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국가에서 원나라를 섬기고 나서 중외(中外)의 걱정이 없고 여염이 즐비하며 행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백선은 날로 은부(殷富)해지고 들판은 날로 개간되어, 염분이 많은 땅은 논을 만들고 황무지는 화전으로 경작하니, 그 어찌 백성이 많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명전(名田)을 받아 부역을 바치는 자가 100에 2-3이 되지 않아도 호부한 집은 그릇을 금과 옥으로 만들고 장사치의 아내들도 비단옷을 입고 다니니, 어찌 부하다고 하지 않으랴. 그러나 의식(衣食)이 떨어지고 이식(利殖)을 갚느라 헐벗고 굶주린 자가 10에 8-9는 되었다.¹⁷⁾

이 글은 이제현이 과거 시험자들에게 낸 책문(策問)이다. 당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고려는 원제국의 국제질서에 편입된 이후,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농업과 상업의 발전을 이루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는 행인의 끊임없는 왕래에서 확인된다. 인구와 개간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반면 사회적 문제는 계층의 분화가 확대되는 것이었다. 사회계층은 소수의 호부한 집과 상당수의 굶주린 사람들로 나누어 졌다. 특히 이전보다 상업 담당층의 재산축적이 특징적이다. 상인층의 부축적은 원과의 물류와 경제적 교류로 인한 사회적 효과로 여겨진다. 물론 이제현은 경제력 증가로 인한 기존 사회질서의 혼란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그가 원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원과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의 확대로 인해, 고려와의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원은 당시 세계제국이었고, 고려 지식인들은 이를 통해 다른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방상의 이익이었다. 과거 고려왕조는 만주 등의 북방 지역에

15) 장동익, 1994, 『고려후기 외교사연구』, 일조각. 이하 원과의 교류 내용은 이 책을 주로 참고하였다.

16) 원 공주를 따라왔던 측근들 뿐만 아니라, 崔老星과 같은 색목 출신의 상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고려인들과 더불어 생활하였고, 이는 고려인들의 원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7) 李齊賢, 『益齋亂藁』 권9, 下, 策問, “國家服事皇元 中外無虞 閭閻櫛比 行路如織 民日以殷 野日以闢 化斥鹵以水耕 刊薈蔚以火耕 豈非庶矣乎 而受名田供賦役者 百無二三焉 豪勢之家 器列金玉 商賈之婦 衣曳羅縠 豈非富矣乎 而罄衣食償利殖者 十常八九焉.”

등장하는 새로운 정치적 구심체에 항상 긴장해야 했다. 고려왕조 초기부터 만주지역의 동향은 고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거란의 성립과 고려에 대한 침입, 그리고 이후 여진족이 세운 금의 등장 등이 고려의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의 분열은 곧 고려의 안전이었으며, 만약 통합될 경우에는 고려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고려 지식인들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원의 성립과 양국 간의 관계 확립은 비록 정치적 간섭을 받는 것이지만, 고려의 평화적 보존으로 이어졌다. 원의 만주 지역 장악이 고려왕조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려 지식인들이 원 제국 하에 ‘사해’로서 한 집안이 되었음을 칭송하는 것에는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도 내재해 있을 것이다. 원을 중화로 인정하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려는 이유는, 중국과 만주지역의 안정이 고려왕조의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려 지식인들의 원에 대한 인정과 긍정적 태도는 고려가 당면한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2) 원·명의 교체와 정책의 전환

14세기 원은 농민반란으로 인해 국가통제력을 점차 상실하여 갔다. 1342년 황하는 크게 범람하였고, 이로 인해 하남·산둥·화북 지역은 황폐하게 변하였다. 당시 이를 막기 위한 황하 치수공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피폐한 농민들이 동원되었다.¹⁸⁾

농민들의 불만은 터져 나왔고, 하남의 백련교주 한산동은 이를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한산동은 체포되어 죽었지만, 당시 그는 송나라 8세손으로 선전되었다. 그의 사망 이후 점차 원나라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사람들이 결집되었다. 이들은 “호로(胡虜)를 쫓아내고 중화(中華)를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¹⁹⁾ 당시 원은 몽골, 색목, 한인, 남인의 순서로 차별적인 통치를 하였다. 특히 과거시험 입사자는 한인, 남인의 경우 거의 하급 사류(士類)들이 위주였으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었다. 그 결과 몽골이 ‘화(華)’가 되고, 강남인이 ‘이(夷)’로 위치가 바뀌었던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구호는 원이 행한 차별적 대우에 불만을 지닌 한족(漢族)을 규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백련교주 한산동을 추대한 유복통 등의 집단은 붉은 두건을 들렀기에 홍건적(紅巾賊)이라고 불렸다. 기회를 엿보던 다른 세력들도 여러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유복통의 홍건적은 원의 본격적인 토벌로 인해 패퇴하기 시작하였다. 홍건적은 관선생(關先生), 파두반(破頭潘), 이희희(李喜喜) 등의 부장들의 지휘 아래에서 산서·섬서로 도망가고, 이후 감숙에서 내몽골·요양(遼陽)을 거쳐 고려까지 들어갔다.²¹⁾

고려는 1361년 이들에게 수도인 개경까지 내주었다가, 다음 해 1월에 20만명을 동원하여, 개경 탈환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고려군은 이 작전에서 관선생 등을 죽일 수 있었고,

18) 스키야마 마사야키 지음·임대희 외 옮김, 1999,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358쪽

19) 데라다 다카노부 지음·서인범 외 옮김, 2006, 『중국의 역사 대명제국』, 해안, 27쪽

20) 주채혁, 1988, 「원 만권당의 설치와 고려 유자」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222쪽

21) 데라다 다카노부 지음, 2006, 앞 책, 17~18쪽

파두반은 10여만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패퇴하였다.²²⁾

이미 중국 내부의 혼란은 고려 내부의 개혁과 연계되었다. 공민왕은 1354년(공민왕 3) 원의 요청에 따라 양자강 일대의 고우성(高郵城)에서 홍건적 토벌에 고려군을 참전시켰다. 고려군은 원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356년(공민왕 5) 반원개혁을 시행하였다.²³⁾ 그렇지만 고려는 원과의 사대관계를 파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1325년 주원장(朱元璋)은 홍건적의 한 집단인 곽자흥 군단에 참가했다가, 점차 독립하였다. 이후 주원장은 1367년 몽골군 주력과 결전을 시도하였고, 다음 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명(明)의 건국이었다. 주원장은 원래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것을 천명(天命)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논리는 원을 타도하는 것 역시 천명에 기초하여, 원의 황제가 덕을 잃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화이사상(華夷思想)에 의해 이민족 지배를 타도해야 한다는 발상과는 다른 차원이며, 결국 원·명의 교체는 전통적인 역성혁명의 범위에 있다는 의미이다.²⁴⁾ 즉 왕조의 교체는 초기 홍건적이 내건 중화의 회복보다, 역성혁명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주원장은 몽골색의 일소를 위해 몽골 풍속, 습관, 언어를 모두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그는 건국 초에 원의 관계를 계승하고, 문관보다 무관을 중시하는 등 이전 왕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²⁵⁾

중요한 점은 화이론적으로 원나라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고려의 지식인들이 원·명 교체에 대해 화이론적으로만 인식했다는 점에 회의를 갖게 한다. 그리고 천명에 대한 강조는 전통적인 유교 관념의 복귀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사대 명분에 유리했을 것이다.

한편 원의 수도인 대도(大都) 함락 소식은 1368년 9월에 고려에 전달되었다.²⁶⁾ 고려는 명과의 통교를 논의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려는 한 달 뒤에 판중부시사 문천식(文天式)을 원에 보내 황태자의 생신을 축하하려 했기 때문이다.²⁷⁾ 문천식은 요양(遼陽)에서 길이 막혀 다시 돌아왔다. 고려정부는 그를 형장을 쳐서 다시 파견할 정도로, 원 정세 파악에 힘을 기울였다. 이어서 정부는 다음 달 예의판서 장자온(張子溫)을 보내 오왕(吳王)을 예방하였는데,²⁸⁾ 이것 역시 중국 내륙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원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1369년에는 공민왕을 우승상으로 진급시켰다.²⁹⁾ 그렇지만

22)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1년 1월 갑자

23) 김순자, 2007, 앞 책, 26쪽

24) 데라다 다카노부 지음, 2006, 앞 책, 39~40쪽

25) 데라다 다카노부 지음, 2006, 앞 책, 42~43쪽

26)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7년 9월 乙卯. 당시 고려인 金之秀가 원으로 돌아와 알린 것으로, 그 내용은 명나라 수군 만척이 통주에 정박하고 경성에 들어가 원황제와 황후가 上都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27)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7년 10월 癸酉

28)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7년 11월 丁未

고려는 명이 파견한 설사(使斯)를 공민왕이 직접 맞이하고,³⁰⁾ 원의 지정(至正) 연호의 사용 중지하였다.³¹⁾ 곧이어 고려는 명에 표문을 지닌 사신단을 파견하여³²⁾ 공식적으로 원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고려는 표문에서

천명을 받아 제위(帝位)에 올라 중국 황제의 정통을 회복하였으며, 원수로서 바른 길로 통치하니 모든 나라들이 함께 신복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대위(大位)가 정해지니 환호 소리가 드높다.³³⁾

고려는 명이 성립한 지 1년 여만에 사신을 보내오자 곧바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명과의 관계를 이전부터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며, 대륙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으로 가능했다. 고려정부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사대관계를 바꾸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한편 고려는 북쪽으로 쫓겨난 오왕(吳王)이나 회왕(淮王)과의 외교 관계도 단절하지 않았다.³⁴⁾ 공민왕은 실리적으로 외교 관계를 처리하려 했다. 여기에는 사대관계의 변환에 따른 의리 문제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원과의 단절과 명과의 사대관계는 표문에서처럼 분명하게 드러났다.³⁵⁾

고려는 과거 원에 대한 사대관계의 전환에 대해 아쉬움이 없었다. 이것은 공민왕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 입장의 바탕에는 원과 연결된 기씨와 같은 친원(親元) 세력 등에 대한 공민왕의 반감이 내재해 있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왕권을 제약하거나, 또는 원과의 관계를 통해 국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고려정부가 1372년(공민왕 21) 명의 정로위(定遼衛)에 보낸 자문(咨文)에서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이 자문에서는 원의 기황후 형제들이 고려에 대해 복수심을 품고 해를 끼쳤던 것, 그리고 기철의 아들인 기새인첩목아(奇賽因帖木兒)가 요양로(遼陽路)와 동녕부 관리들과 결탁해 국경의 위협이 되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³⁶⁾

아울러 공민왕은 지밀직부사 홍사범을 명에 파견하여 촉(蜀)지역의 평정을 축하하고, 고려의 자제들을 파견하여 입학하는 청원을 하게 된다.³⁷⁾ 이 사실은 고려정부가 중국 내부정세의 정보수집에 계속 유의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제파견에 대한 요청에서, 고려는

29)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3월 癸卯

30)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4월 壬申

31)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5월 辛丑

32)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5월 甲辰

33)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5월 甲辰, “秉籙膺圖 復中國皇王之統體 元居正同 萬邦臣妾之心 景命有歸 權聲旁達.”

34) 『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10월 甲子 ; 乙酉. 공민왕은 시중 김일봉의 딸을 오왕에게 보내고, 회왕의 딸을 맞이해 오려 했었다.

35) 서원군 노원이 원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황주에 오게 되자, 공민왕은 대장군 송광미를 보내 그를 살해했다(『高麗史』 권41, 세가41, 공민왕 18년 11월 辛未).

36) 『高麗史』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 3월 庚戌

37) 『高麗史』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 3월 甲寅

그러므로 우리 동쪽 사람들은 일찍이 한(漢)대부터 자제를 보내 책을 지고 스승을 찾아 입학한 사실은 당송(唐宋) 이래 계속된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중국을 우러러 보는 마음이 있어서 뿐이라. 이는 또한 태평시대를 빛내는 도구로 될 수 있다. …(중략)…신은 마땅히 기자(箕子)의 봉합에 맞게 교화를 받들어 올리며, 중화인의 축하를 충성하여 더욱 바칠 것이다.³⁸⁾

라고 하였다. 이 요청은 고려 스스로 명을 교화의 중심인 ‘중화’로 인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려의 외교정책은 1374년(공민왕 23) 공민왕의 시해와 명의 사신에 대한 살해 사건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과거 명과의 사대관계를 주도한 공민왕의 죽음은 정권을 장악했던 이인임 등에 의한 원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예고하였다.³⁹⁾ 즉 우왕이 즉위하여 곧바로 명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⁴⁰⁾ 당시 북원(北元)은 1375년(우왕 1) 5월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고,⁴¹⁾ 이들의 영접을 둘러싸고 정도전 등의 신진 사대부와 집정자들간의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 당시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 정몽주 등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우리나라가 바다 밖 한쪽에 있어서, 우리 태조가 당(唐) 말기에 일어나면서부터 중국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것은 오직 천하의 의주(義主)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지난번 원씨(元氏)가 자초하여 북으로 파천되고 명나라가 일어나니, 우리 승하하신 왕께서 분명히 천명을 알고 받들어 ‘신하’라 일컬었습니다.⁴²⁾

정몽주는 사대관계의 대상을 ‘천하의 의주’를 따르는 것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기준에서 원나라는 도덕적으로 불의한 존재로 이해하였다. 그의 화이론은 역대 고려의 사대관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형세론으로 보아 왔다.⁴³⁾

그런데 정몽주의 주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가지는 천하의 의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그는 과거 원나라와 현재 명나라를 대비시켰다. 즉 원나라는 ‘원씨’, 그

38) 『高麗史』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 3월 甲寅

39) 이후 원과의 관계에서 중요해지는 요소는 국왕의 책봉 문제였다. 명이 쉽게 책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원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빠르게 책봉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왕의 대외적 정통성 인정과 함께, 그 아래 권력을 장악했던 이인임 등의 세력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원과의 외교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다.

40) 고려는 명 사신 살해사건 이후에 판중부시사 최원을 명에 파견하여 시호를 청하고 왕위 계승을 알렸으며(『高麗史』 권133, 열전46, 신우 원년 정월), 같은 해 3월에도 판사 손천용을 명에 보내 말 100필을 바치기도 하였다.

41) 고려는 원의 사신을 찬성사 황상 등을 보내 위로하고 보내게 하였다. 따라서 이때 원과 바로 수교했던 것은 아니다.

42)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5월

43) 김순자, 2007, 앞 책, 177쪽. 반면에 그의 화이론은 명분론적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형세론적 화이관이 명분론적 화이관으로 전환하면서 두 가지가 혼재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익주, 2013, 앞의 책, 142쪽).

리고 현재 명나라가 ‘의주’가 된다. 그런데 ‘의주’는 명나라뿐만이 아니다. 그의 논리에서는 당나라부터 시작하여, 변화해온 사대의 대상이 모두 ‘의주’가 된다.

이 변화의 근본에는 형세가 있지만, 그에 따른 이념적 포장은 ‘천명(天命)’에 두었다. 성리학을 익힌 정몽주 등은 힘에 의한 형세 변화를, 혁명론에 근거한 ‘천명’의 변화에 기준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논리는 단순히 형세론이나 명분적 화이론과 다른 차원의 논의인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나라가 표방했던 왕조 교체의 논리와 비슷하다.⁴⁴⁾

둘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명나라와의 사대관계를 맺었던 공민왕과의 의리를 내세운 명분이다. 당시 정도전, 김구용, 이송인, 권근 등이 도당(都堂)에 상소할 때, “원의 사신을 맞는다면 온 나라 신민이 모두 난적(亂賊)의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날 무슨 면목으로 현릉(玄陵 ; 공민왕)을 지하에서 보려 하는가.”⁴⁵⁾라고 하였다. 또한 정몽주 등의 상소에서도 ‘승하하신 왕’인 공민왕이 천명을 알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앞서 이인임이 복원의 중서성에 우왕의 왕위 계승 인정에 대한 글을 올리려 했을 때, 임박(林樸) 등은 선왕(공민왕)이 계책을 결정하여 명을 섬겼기에 원을 사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⁴⁶⁾ 이들에게 선왕인 공민왕의 뜻과 정책은 계승해야 할 대상이었다.

선왕의 남겨진 뜻은 신진 사대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비록 공민왕의 유지가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원·명 교체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공민왕의 사대관계 수립은 명분으로 계속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성계 등이 위화도에서 고려 정부에 대한 회군 요청에서도 이 명분을 사용했다.⁴⁷⁾ 결국 공민왕의 유지란 명분은 대외 관계의 정책에서 중요한 근거들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진사대부와 같은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3. 원·명 교체 후의 양국에 대한 인식과 회고

당시 지식인들은 원과 명의 교체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녔는지는 분명치 않다. 공민왕은 성균관을 중흥하였고, 이곳에서는 성리학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를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색이다. 그는 일찍부터 원에 유학하고, 원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런 경험을 했던 이색은 공민왕 아래에서 출세할 수 있었지만, 원·명 교체에 대한 나름의 소회가 많았을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시다.

44) 이에 관해 공민왕과 신진사대부들이 과거 원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기 위해 유교적 천명론과 화이론으로 이를 명분화했음이 이미 지적되었다(김순자, 2007, 앞 책).

45)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5월

46)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4월

47) 『高麗史』 권137, 열전50, 신우 14년 5월 丙戌. 당시 공민왕이 홍무 2년에 명나라에 臣服했으며, 우왕도 공민왕의 뜻을 계승했음이 강조되었다.

A 원나라는 북방으로부터 일어나 / 어렵게 조정을 세우고
 장상(將相)이 서로 마음의 힘을 단결할 땐 / 온 천하가 천자 위령 우러르더니
 태운이 다하고 비운이 찾아오자 / 서로 해쳐 모진 형벌 난무 하네
 이윽고 남풍이 금미(金微)에 불어올 때 / 수목 중엔 동청(冬靑)이 많기도 했었지
 군자가 이에 크게 탄식하노니 / 두 귀밑이 이젠 희끗희끗하구나

B 순 임금은 사총(四聰)을 밝게 하여 / 결연하게 사흉(四兇)을 제거하시니
 어진 마음이 사방에 입혀져서 / 온 천하가 태평을 노래하였네
 구름 한 점이 잠깐 점철했다가 / 일월의 광명이 하늘에 빛나자
 이윽고 하늘이 더욱 맑게 개니 / 궁전에 맑은 바람이 일어났네
 군자가 이에 크게 탄식하노니 / 답답하게 나의 중(中)을 지키려네⁴⁸⁾

이 시의 A는 원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묘사하였고, B에서는 명의 발흥을 말하였다. 원나라는 북방에서 일어나 힘들게 국가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원이 오랑캐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색은 문무관료들의 분열이 원의 쇠퇴 요인으로 암시하고 있다. 물론 시에서는 『주역』에 따른 태운과 비운의 교체를 말한다. 군자의 탄식은 자신의 것을 뜻하는데, 귀밑이 희끗하다는 것은 원의 쇠퇴처럼 자신도 그런 상황에 놓였음을 말한다. 이 시는 1388년(우왕 5)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⁴⁹⁾ 당시는 아직 북원(北元)이 존재하던 시점이었다.

B의 시는 명 태조가 중국 고대의 성인군주인 순 임금으로 비정되고 있다. 순 임금은 네 명의 악인을 추방했는데, 이는 사방의 적들을 평정했음을 뜻한다. 그 결과 온 천하의 광명이 빛나게 되었다. 따라서 명의 중국 차지는 천명에 의한 것이고, 의로운 일이 되었다. 군자의 탄식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색 스스로 ‘중(中)’ 즉 원과 명의 교체에 대해 가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는 주장이다. 결국 그에게 원의 쇠퇴는 아쉬운 일이지만, 명의 발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이색은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과거 자신의 유학시절의 회상에서는 ‘아득했던 연도(燕都)의 국학(國學)에서 공부했던 5백명의 유생(儒生)’들로 인해 당나라와 비견할 정도의 중흥기였음을 피력하지만,⁵⁰⁾ 이것은 과거일 뿐이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개인적 안타까움이 외교정책의 방향과 결부될 수는 없었다. 이에 관해 이색은 외교문서를 맡았던 책임으로, 양 국가에 대해 다음과 말한다.

48) 李穡, 『牧隱詩藁』 권18, 有感, “元興朔雪中 艱苦立朝廷 將相一心力 普天仰皇靈 泰極運中否 相殘刑發腥 南風吹金微 樹木多冬靑 君子有浩歎 兩鬢今星星 大舜明四聰 決然去四兇 仁心所浸淫 天下歌時雍 纖雲乍點綴 日月光大空 俄而愈澄霽 玉宇生清風 君子有浩歎 淡然守吾中.”

49) 시에 관한 연보는 이익주, 2013, 앞 책을 참조하였다. 이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각주를 부기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50) 李穡, 『牧隱詩藁』 권6, 憶燕都, “回首燕都更渺茫 黃金臺上又斜陽 橋門五百青衿子 誰頌中興比大唐.”

북조(北朝)에 보낼 때는 혼후(渾厚)하게 글을 짓고 / 남방(南方)에 보낼 때는 정화(精華)를
몸 받아야지

초고 짓고 잘 꾸며서 다듬어 보낸다면 / 외교 문서 잘못될 걱정 뭐가 있으리오⁵¹⁾

그는 과거 ‘북조’인 원과 ‘남방’에 있는 명에 보내는 고려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색이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의 태도를 위 시에서 설명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는
개인적 감정이 개재될 여지가 없었다.

북원에 보내는 외교 문서는 당연히 원나라에서 고려에게 원하는 문구로 채워졌다. 예컨대
1377년(우왕 3년) 북원과의 외교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왕은 북원에 의해 책봉되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올린 표문에서는,

천하의 형세란 갈라지면 반드시 합치게 되니, 태평의 시기는 지금 바로 도래할 것이다. 나
를 세조의 외손이라 하고 또 우리나라를 태후의 모국이라고 돌보아 줌이 다른 성씨보다 특수
하며 영광을 돌려줌이 상례를 초월하였으니 내가 어찌 감히 두 가지 마음을 꺼리고 제후의 도
를 준수할 것이다.⁵²⁾

라고 하였다. 여기서 고려는 ‘천하의 형세’가 곧 원나라로 다시 통합되어 ‘태평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쓰고 있다. 물론 고려 정부가 실제로 이런 인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고려는 과거 이래 사용해 왔던 원 세조의 권위와 혈연관계임을 이용하여, 양국의 친밀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외교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사대의 대상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고려의 국가이익이었다. 명분에 따른 의리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원이 1388년(우왕 14) 망하고, 명은 중국의 유일한 왕조가 되었다. 이제 고려정
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북원과 명 사이에서 사대 관계를 두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당시 고려는 명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명은 고려에 대해 철령 이북 지역에
대한 영토를 요구하였고, 고려는 여기에 대응하여 요양 지역의 공략에 나서려 했다. 정벌에
나서려는 고려정부는 ‘대원(大元)의 관복(官服)’을 입게 하였는데, 당시 개경에는 몽골의 머
리를 하고 몽골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⁵³⁾

이런 상황은 당시까지도 원의 관습과 복장에 대해 고려인들이 익숙했음을 반증한다. 사실
원의 관복과 몽골식 머리는 공민왕이 반원 개혁 당시인 1356년에 금지시켰던 적이 있다.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몽골식 복장과 습관이 민간에서 유지되었으며, 이는 원나라
를 오랑캐와 같은 이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성리학을 익힌 신진사대부들에게 풍속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우왕

51) 李穡, 『牧隱詩藁』 권32, 有感三首, “北朝模楷渾厚 南方體口精華 草創仍兼脩飾 文移豈患差訛.”

52) 『高麗史』 권133, 열전46, 신우 3년 3월, “天下之勢 離必合 太平之期 適當今 謂孤臣謂世皇之外孫 謂
小邑爲太后之故國 眷顧特殊於他姓 光華復越於常倫 臣敢不益殫不二之心 恪遵侯度.”

53) 『高麗史』 권137, 열전50, 신우 14년 3월 乙亥.

을 축출한 이후 각종 개혁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준(趙浚)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조종의 의관과 예악(禮樂)은 모두 당(唐)의 제도를 따랐는데 원조(元朝)에 와서 당시 왕의 제도에 놀려 중화의 것을 바꾸어 오랑캐의 것을 좇으니, 위와 아래가 분별할 수 없고 백성의 뜻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릉(공민왕)께서 상하의 분별이 없는 것을 통탄하여 오랑캐 제도를 바꾸어 중화를 좇아서(用夏變夷) 조종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호복(胡服)을 개혁하기를 청하였다.⁵⁴⁾

그의 논의를 ‘당시 왕의 제도(時王之制)’라고 하여, 원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중화의 제도가 오랑캐의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려 했던 것이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중화의 문화로 다시 이를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원의 문화=오랑캐, 명의 문화=중화라는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준은 문화적 기준으로 중화인 명과 대비시켜 오랑캐(夷)인 원과 대비시키고 있다. 그의 논리가 의관과 예악 같은 문명에 기준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논리가 나온 것임을 알아볼 수 있다.⁵⁵⁾

그의 논리가 명에 대한 외교 관계를 합리화하려는 신진사대부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제 원은 과거의 왕조일 뿐 아니라, 현재의 ‘오랑캐’로 변화하였다. 특히 ‘중화를 좇아 오랑캐의 제도를 변화시킨다’(用夏變夷)는 것은 2년 전인 1386년(우왕 12) 정몽주가 명에 의관을 요청하는 표문에서⁵⁶⁾ 이미 등장한 표현이었다. 이는 문명의 기준인 중화가 명나라라는 점, 따라서 원나라는 배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적 전환이었다.⁵⁷⁾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조선에도 계승되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예의의 풍속은 기자(箕子)로부터 시작되었다. 왕씨(王氏)의 세대에는 문장·제도를 중화(中華)에서 본받았으나 토속(土俗)에는 오히려 아직 다 변하지 않은 게 있었다. 원나라를 섬긴 뒤로는 호례(胡禮)를 혼용하여 복식제도가 법도를 잃고, 서인(庶人)들이 분수에 넘치게 윗사람과 견주게 되었다. 황명(皇明 : 명나라)이 천하를 차지한 뒤에 조칙을 내리기를, “의제는 본속(本俗)을 따르고, 법은 옛날의, 전장(典章)을 준수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폐습이 역시 갑자기 제거되지 못하였던 것이다.⁵⁸⁾

54) 『高麗史節要』 권33, 신우 14년 8월. “祖宗衣冠禮樂 悉遵唐制 迨至元朝 歷於時王之制 變華從戎 上下不辨 民志不定 我玄陵 憤上下之無等 赫然有志於用夏變夷 追復祖宗之盛 請革胡服.”

55) 조준의 논리가 동아시아의 형세를 강조하는 점에서 원에 대한 사대를 긍정했다고 보기도 한다. 즉 원조의 제도는 부정하였지만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김순자, 2007, 앞 책, 190~191쪽).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준의 상소는 본인의 논리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작성되어 그가 대표자로 상소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6) 『高麗史』 권136, 열전49, 신우 12년 2월.

57) 중화적 논리로 인해 불교는 오랑캐의 종교라는 인식이 생겼으며,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정치 사회제도를 활용해 현실을 개혁하려 했다고 지적되었다(도현철, 2000, 앞 논문, 116~117쪽).

58) 鄭道傳, 『三峰集』 권14, 朝鮮經國典下, 憲典 儀制, “我東方禮儀之風 肇自箕子 而王氏之世 文章制度 取法中華 而其土俗猶有未盡變者 事原以來 雜用胡禮 復飾無度 庶人僭擬 逮夫皇明有天下 詔曰儀從本俗 法守舊章 故其弊習亦未遽除.”

정도전의 논리는 조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문명의 기준을 중화에 두었으며, 역사적으로 기자(箕子) 이후부터 이를 추구해 왔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 추구가 문체가 생긴 것은 왕씨(王氏)의 시대인 고려시대이다. 즉 원의 의례를 채용한 이후, 신분적 질서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주자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주장이다. 그의 대한 회복은 명나라 발흥 이후에 가능해졌다. 따라서 그의 논리는 원나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오랑캐’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정도전은 원의 위상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경제문감 별집」에서 원나라를 중국의 정통왕조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였다.⁵⁹⁾ 그리고 제도의 설명에서 원나라의 것을 다루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재상(宰相)에 관련된 것에서 원나라는 좌우승상(左右丞相)을 두었으며,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⁶⁰⁾ 이처럼 그가 원의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물론 원나라의 통치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고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⁶¹⁾ 그렇지만 그가 지적한 부정적 요인이 제도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정도전의 경우에는 원에 대해 모순적인 인식 태도를 갖고 있었다. 원의 왕조적 정통성과 제도는 인정하면서도, 그의 문명적 위상은 부정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은 ‘중화’로서의 자격을 지니지 못했으며, 유교 도덕적인 ‘세도(世道)’의 전개가 원대(元代)에 끊겼다고 보았다. 그는 1379년(우왕 5) 요동호송장(遼東護送將)으로 고려에 온 임진무(任鎭撫)에게 시를 주면서 쓴 서문에서, 송(宋)이 천명을 받은 이후 세도가 회복되었다가, 이류(異類) 즉 원나라가 100년 동안 옹거하여 세도에 큰 변괴가 있다고 했다. 이후 천심(天心)을 기다려 진짜 주인인 명 태조가 일어나 원나라를 친 후에 중원의 분노를 풀고, 역대 제왕의 수치를 씻었다고 보았다.⁶²⁾ 여기에는 당시 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정도전의 의도가 들어 있다. 그럼에도 정도전의 이중적 의식도 보여 준다. 특히 정도전은 원나라를 ‘이류(異類)’라고 표현하여, 종족적인 차별까지 하고 있다.

정도전이 이중적 의식을 가졌던 이유는 분명치 않다. 그렇지만 그 인식이 다른 고려말에 살았던 지식인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색처럼 원나라에 유학을 가서, 과거에 합격했던 경우와 정도전과 같이 국내에서 성장했던 인물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자가 원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식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으며, 후자는 정도전처럼

59) 김인호, 2005, 「정도전의 역사인식과 군주론의 기반」, 『한국사연구』 131, 269~270쪽. 정도전은 주자와 비슷한 정통론을 가졌으며, 중국사에서 秦과 金을 정통에 넣지 않았다.

60) 鄭道傳, 『三峰集』 권9, 經濟文鑑上, 宰相

61) 鄭道傳, 『三峰集』 권13, 朝鮮經國典上, 賦典 上供. 그는 충렬왕 이해 원을 섬기면서 공주를 맞이하거나, 원나라에 대한 親朝 비용 등으로 德泉庫, 義成庫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군주의 사유재산이 되었음을 문제시하였다.

62) 鄭道傳, 『三峰集』 권3, 贈任鎭撫誠詩序. 권근은 여기에 대해 임진무가 요동호송관으로 고려에 와서 포로와 도망병을 찾으러 왔음을 부기하였다. 실제 명은 그해 1월 요동지휘사 任誠을 보내 고려군이 포로로 데려간 요양지방 官民 남녀 1,000여명과 각 衛 군인으로 도망간 사람을 돌려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高麗史』 권134, 열전47, 신우 5년 1월 乙亥).

‘문명적인 가치’에서 원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원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어려웠다. 100년 가까운 원과의 교류는 고려인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은 조선초기까지 마찬가지였다. 비록 중화문명으로 원의 위상이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남긴 제도적 문화적 유산이 그대로 소멸된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경국대전』의 경우에도 과거시험에 합격해 주로 배치된 승문원(承文院) 관원들의 경우에는 10일마다 책임자가 그들이 읽은 책을 강독하게 했는데, 필수 도서에 원의 법전인 『대원통제(大元通制)』, 『지정조격(至正條格)』 등이 있었다.⁶³⁾

한편 원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회고는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고려말 염홍방과 토지 문제로 다투었던 조반(趙胖)은 12세에 원의 수도에 가서 몽골어와 한어를 익혔다. 그는 누이가 원에 갔을 때 같이 들어갔는데, 누이가 원나라 재상의 부인이 되면서 그 집에서 살았다. 당시 조반은 그 집의 여자종을 매우 사랑했는데, 수도인 연경이 함락되면서 갑자기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때 조반은 주변의 권유로 계집종과 중간에 헤어지게 되자, 계집종이 누각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였다. 그는 이 일로 매우 상심했고, 이후 늙어서도 당시 일을 자주 주변에 얘기했었다.⁶⁴⁾ 그의 회고는 개인적인 슬픈 경험이었고, 이와 같은 회상은 원에 대한 이미지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런 회고가 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후 조선에 들어와 원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굳어져 갔을 것이다.

원(元)이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된 뒤로 고려가 원나라를 섬긴 지가 거의 100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이 망하고 명나라가 일어나자 고려는 외번(外藩)에 처하여 원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절의를 지킬 의리가 없었네. 이 때문에 명을 섬기고서도 중국을 존송하는 예를 잃지 않았던 것이네. 그러나 고려는 원에 대해서 이미 일찍이 조금이나마 군신의 분수가 있었으니, 원이 나라를 잃고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해서 대뜸 스스로 원을 배척하자고 주장해서는 안 될 걸세. 강성할 때는 백년 동안 신하라고 일컫다가 갑자기 망하자 우리가 능히 배척한다고 하면 사리로 볼 때 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 정 문충공(필자주 : 정몽주)의 상소에 “우리 동국이 멀리 해외에 처하여 우리 태조께서 당(唐)나라 말엽에 일어나심으로부터 중국을 예로 섬겼는데, 그 섬길 적에는 천하의 의주(義主)인가를 보았을 뿐이다. 지난날 원이 파천(播遷)을 자초하고 대명(大明)이 일어나자 우리 성상께서 왕위에 오르시어 환히 천명을 알았기 때문에 표문을 받들어 신하라고 자칭한 지가 이제까지 6년이다.” 하였네.⁶⁵⁾

이 얘기는 조선후기에 박세당의 글이다. 이 글은 원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인식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문제로 삼았던 것은 원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고려가 취해야 했던 절의이다. 그는 원에 대한 배척논리가 군신간의 의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천하의 의주’라는

63) 『經國大典』 권3, 禮典 獎勸

64) 成俔, 『慵齋叢話』 권3

65) 朴世堂, 『西溪集』 권7, 書, 答和叔書, “夫元既入主中國 而高麗之事元 垂百年矣 一朝元亡而明興 高麗處外藩 無爲彼守死之義 故事明而不失尊中國之禮 然高麗於元 既嘗粗有君臣之分 不當以其失國北遁 而遽自居於辟攘之義也 當其強也 百年稱臣 及忽而亡日吾能攘 則於事何如哉 故鄭文忠之疏曰 吾東國 僻處海外 自我太祖起於唐季 禮事中國 其事之也 視天下之義主而已 頃者 元氏自取播遷 大明龍興 我上昇王 灼知天命 奉表稱臣 六年于茲.”

것은 천명의 소재로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원에서 명으로의 전환은 천명의 옮겨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고려말 정몽주의 논리와 동일하며, 성리학에 입각한 것이었다. 결국 ‘중화’에 의한 문명론적 차원과 국가의 멸망은 다른 차원의 논리였다. 이 논리 중에 어느 한 방향에서 다른 쪽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 당시 국가 간의 표명과 이익에 따른 문제였다. 즉 명에 표방해야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이익 등과 같은 문제가 어떤 논리를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였던 것이다. 정도전과 같이 양자의 논리가 같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어느 쪽이든 동원될 수 있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4. 맺음말

14세기 후반 원과 명의 교체는 고려 지식인들의 세계 질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원래 고려의 지식인들은 원의 성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것은 과거 몽골과의 긴 전쟁 속의 인식과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고려왕실은 원의 부마국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려인들은 원에 관료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였다. 만주지역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진출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원을 중화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원에 나가는 공녀까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는 과거 중국의 형식적 사대가 실질적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작용하였다. 특히 원의 성립으로 인한 만주지역의 안정은 고려왕조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전과 달리 고려왕조는 만주지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명은 초기 화이사상에 기초하여 출발하였지만, 곧이어 천명에 의한 혁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과거 원에 대한 종족적 부정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왕조 교체를 뜻했다. 고려는 명과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하였다.

고려의 외교정책은 공민왕의 죽음과 함께 변화하게 되었다. 북원과의 외교 교섭은 신진 사대부와 집권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정몽주 등은 명과의 관계수립에 천명의 변화를 내세웠으며, 무엇보다 과거 공민왕의 정책 계승을 강조하였다. 공민왕의 남겨진 뜻은 외교정책의 기본적 틀로 제시되면서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사실 원의 교체와 함께, 고려 지식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원나라 치하 속에서 과거에 합격해 유학했던 인물들은 원의 퇴장에 내심으로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색과 같은 인물은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런 지식인들이 자신의 당혹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생각은 때로는 과거 원나라 시적을 회상하는 시 등으로 드러났지만, 외교 문서의 작성에서는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에 맞추어야 했다. 따라서 이들 지식인의 솔직한 생각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일 뿐이었다.

북원의 멸망과 함께 명은 유일한 사대의 대상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고려의 풍속 등에서는 원의 영향이 강했다. 특히 명은 만주 지역의 경략과 함께, 고려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명=중화, 원=오랑캐라는 인식이 번져갔다. 명에 대한 문화적 우위를 인정하고, 이를 중화로서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 갔다. 그럼에도 원의 존재가 전면적으로 부정된 것도 아니었다. 점차 양국의 변환은 명이 제기했던 ‘의주’의 전환, 즉 천명의 소재가 변화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하지만 국가경영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이익에 따라 명분을 선택하려 했다. 그에 따라 문화적 차원인 ‘중화’와 국가의 멸망은 상호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게 된다. 때로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원과 명의 교체는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겠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 유교적 절의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의 입장에 따라 지식인들은 명분을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려 했을 뿐이다.

김인호, 「고려말 지식인들의 원·명 교체와 자아 인식」 에 대한 토론문

김 난 옥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인호 선생님은 일찍이 高麗後期 士大夫의 經世論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최근에는 이규보·이색·정몽주 등의 자아와 역사인식 등에 대해 좋은 글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명 교체라는 큰 틀 속에서 당대 지식인의 의식구조를 심도 깊게 고찰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사대부의 의식체계에 관한 전문가인 반면, 저는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토론의 내용이 질문보다는 의문점의 제기에도 더 가깝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우선 원나라에 대한 ‘기억’이 고려말 지식인에게 어떻게 굴절되었는지에 대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변형된 ‘기억’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기억’에 대한 개인적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물론 발표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분석의 대상자인 지식인의 범주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원·명 교체기 지식인의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이익’이 우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인식하는 것과 표방하는 것은 괴리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고려말 지식인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닐까요?

3. 발표문을 읽다보면 형세론적인 관점과 명분론적인 관점의 구분이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義主의 대상을 원에서 명으로 바꾸고 華의 대상이 전환된 것은 결국 명분론적인 외피를 입은 형세론적인 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4. 원론적인 질문이라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고려말 지식인의 자아를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본 발표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숙제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개념의 정의만큼 어려운 게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5. 원제국의 성립이 만주지역의 안정을 가져오고, 다시 이것이 고려왕조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소위 ‘원간섭기’에 전쟁이 없었다 하여도 對元關係로 야기된 질곡을 감안한다면, 거란이나 여진족과 대립하던 시기보다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 본문의 끝부분에서 박세당의 글을 인용하면서 절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맺음말에서 “결국 원과 명의 교체는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겠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 유교적 절의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서술하셨습니다. 이러한 ‘절의’가 호란 이후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명분론에 바탕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고려말 지식인의 의식체계와 직결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역사인식에 대한 통시대적인 관점의 부정적 영향은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토론자가 궁금한 점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래 6)번은 오자와 같은 간단한 오류이므로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6-1) 1쪽 아래 동일하지는→동일한지는

6-2) 2쪽 주3) 황후가 되어 보가→황후가 되어 보다

6-3) 4쪽의 인용문 백선은 날로→백성은 날로

6-4) 10쪽의 마지막줄 「인용문 어찌 감히 두 가지 마음을 꺼리고」의 해석

6-5) 12쪽 끝부분 임진무(任鎭撫)→任誠으로 바꾸는 게 좋을 듯함.

6-6) 15쪽 첫 줄 원나라 시적을→원나라 시절을

6-7) 논문 제목 「고려말 지식인들의 원·명 교체와 자아 인식」을 「고려말 원·명 교체와 지식인의 자아인식」으로 단어 배열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지. 마치 지식인들이 원명교체를 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임.